국제개발협력

2006년 제2호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ODA 논단

1.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要約 …… 7

2. 양허성 원조차관 (Aid Loans) 제공의 실질비용과 제약요인 …… 35

Ⅱ. KOICA 업데이트

1. 대외무상원조 사업 평가 보고서 …… 49

2.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방한결과 보고서 …… 75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제기구 …… 81

- 2005 ODA통계 …… 81
- OECD 개발원조 고위급회의 결과 …… 84
- OECD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 결과 …… 89
- MDG+5 정상회의(2005) 결의문 …… 93

2. 공여국 …… 136

- OECD/DAC 주요원조기관의 조직도 …… 136
- Overview of Program-Based Approaches (CIDA) …… 152
- 무역을 위한 원조 회의결과 …… 182

Ⅳ. 현장의 목소리

- 대이라크 개발원조의 성과와 한계 …… 191
- 한민족 복지재단 소개 …… 203

I. ODA 논단

1.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要約

2. 양허성 원조차관(Aid Loans) 제공의 실질비용과 제약요인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要約

전 승 훈 외 4명 / (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1. 개발원조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개발원조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과제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의 과제이다.

2. 개발원조는 1960년대 이래 OECD/DAC의 설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과제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OECD/DAC는 개발원조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발전을 지원토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

■ OECD/DAC가 수립한 ODA의 국제적 기준 중 양적목표는 (i) 원조공여국GNI 1%의 순자금 공여, (ii) 공여국 GNI 0.7%의 ODA 공여, (iii) 저개발국에 대한 GNI 대비 0.15%의 ODA 배정 등이다. 이중 GNI 대비 ODA 비율은 원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 아울러 ODA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목표는 (i) ODA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증여비율)의 제고 (ii) 양허조건을 나타내는 증여율의 86% 수준유지 (iii) 비조건부 원조비율의 제고 등이다.

■ 최근 ODA 추이를 보면, 1990년 530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48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천년개발목표(MDGs)선언 이후 2003년 690억 달러, 2004년은 786억 달러로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04년 현재 최대의 원조액을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순이다. GNI 대비 ODA의 비율을 보면 2004년 현재 국제적 권고사항인 0.7%를 초과한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네델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며 그 이외 국가들은 0.7%에 미달하고 있으며, OECD/DAC 회원국의 평균은 0.26%이다.

3. 2000년대에 들면서 빈곤완화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인식이 있다.

■ 인류사회의 항구적 목표, 즉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갈 자유(UN, 〈보다 확대된 자유: 모두를 위한 개발과 안보 및 인권〉, 2005)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많은 국가들의 빈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류사회의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

■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의 안전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빈곤이 이러한 안전을 위협하는 갈등의 씨앗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빈곤국가의 빈곤완화와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안보적 예방수단이자, 국제 안보체제의 기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4.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00년 UN 주도로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선언하고, 빈곤에 대한 범지구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와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천년개발목표(MDGs)는 8개 목표(Goals)와 18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국제사회의 빈곤완화와 이를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에 있다.

■ 동 목표는 2015년까지 하루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비율 그리고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의 골자로 설정하고 있다.

5.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함께 강구되고 있다. 이는 (1) 개발원조규모의 증대, (2) 전 지구적 파트너십의 강화, (3) 원조의 효과성 제고, 그리고 (4) 거버넌스의 중시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6. (1) 원조규모의 증대와 관련하여, 2005년 제59차 UN총회에서 선진국들은 2015년까지 MDGs 달성에 필요한 GNP 대비0.7%의 원조재원을 동원하는 계획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까지 ODA의 GNP 대비 최소한 0.5%를 달성하고, 동시에 최빈국에 대하여는 GNP대비 0.15%내지 0.2%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7. (2) 범 지구적 파트너십의 강화는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와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를 통하여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상호책임에 기초하여 모든 개도국은 MDGs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2006년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발재원, 무역 및 채무구제에 관한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8. (3) 원조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UN은 MDGs 목표달성을 위하여 선진국들의 원조 시

스템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UN, 〈개발에의 투자: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2005년), 2005년 2월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은 〈몬테레이 컨센서스(2002)〉와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2003)〉 및 〈마라케시 메모랜덤(2004)〉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원조 방식에 있어 대폭적인 개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동 선언은 다음과 같은 원조의 5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의 구체적인 이행 기한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선언3부).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 수원국 개발의제에 맞는 원조일치 (Alignment)
- 공여국가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 원조성과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
- 호혜적 책무(Mutual accountability)

9. 원조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계속적인 과제의 하나가 원조의 비구속성(untying) 이다.

- 1970년대 이래 양자간 원조의 언타이드화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는 DAC회원국의 양자간 원조의 60%가 비구속성 원조였는데, 1990년대에는 이것이 80%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92%(기술협력을 제외한)에 달하고 있다. 비구속성 원조는 2002년부터 DAC회원국이 최빈국에 대한 자금원조는 언타이드화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10. (4) 관리능력(Governance)을 중시하는 입장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지난 50년간 원조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원조와 경제성장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밝히고 있으며, UN을 위시한 국제기구는 수원국의 관리능력(Governance) 제고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세계은행은 수원국의 관리능력(Governance)에 따라 원조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프리카 7개국에 대한 비교연구 및 Lopez의 중남미 3국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동 연구는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난 삼십 년 동안 행정 역량의 체계적인 퇴보 현상이 발생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외부원조가 아프리카 전 지역 GDP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가속화되던 시기에 이러한 퇴보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 UN,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수원국의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향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여국의 원조에 있어서 수원국 정부의 행정역량(Governance) 발전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 이와 관련하여 ODA의 개념에 안보지원 활동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11.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부응하여 선진국 원조국가들도 MDGs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많은 DAC 회원국들이 MDGs 달성을 위한

ODA 노력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구체적인 MDGs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원조규모를 증대시키고 있는 바, 2004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786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고, EU는 2006년까지 ODA/GNI 비율을 0.39%까지 확대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미국은 새천년 개발계정(MCA)로 3년간 매년 50억 달러씩 추가 공여키로 하였다.
-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DAC 회원국 중 최소 9개국 이상이 ODA 조직 개편을 포함한 관리체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12. 이상과 같이 개발원조의 국제적 환경은 역사적으로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국제사회의 빈곤완화와 이를 위한 개발원조의 확대 및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된다.

13. 한국의 중장기 무상원조사업의 정책을 연구하는 두 번째의 과제는 한국의 개발원조를 무상원조사업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14. 첫째, 한국의 개발원조를 평가해 보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5. (1) 원조의 규모에 있어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국민소득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004년 ODA총액은 4.2억 달러로서 이의 GNI 비중은 0.06%이다. 후자의 경우, DAC 회원국 평균의 1/4수준이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0.74%), 스페인(0.26%)의 1/4-1/12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수준을 유사한 포르투갈(0.63%), 뉴질랜드(0.23%)와도 1/4-1/10 수준이다. 1인당 ODA 분담액은 8달러로서 노르웨이(281 달러)와 DAC평균(69 달러) 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6. (2) 원조의 질에 있어서도 증여율(grant element), 증여 비율(grant share), 원조의 구속성 등의 기준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뒤떨어져 있다.

- 증여율을 보면, 2004년 기준 86.7%로서 DAC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 증여 비율도 39.83%로서 DAC평균(89.7%)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원조의 언타이드율은 19.4%로서 ODA 전액을 언타이드로 제공하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등은 물론이고, DAC 평균(92%)에도 크게 뒤져 있다.

17. (3) 국제적 조화와 일치의 측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미흡하다. 한국은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의 개

발원조를 보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과는 조화와 일치를 기하고 있지 못하다.

- 원조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즉 (1) 수원국의 주체성(Ownership), (2) 원조의 일치(Alignment), (3) 원조 조화(Harmonization), (4) 결과를 위한 관리(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그리고 (5) 호혜적 책무(Mutual accountability)의 기준에서 볼 때에도 국별 원조계획이 미흡한 체 영세한 규모로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18. 둘째, 한국의 무상원조사업을(1) 지원규모와 대상, (2) 사업의 컨텐츠, (3) 사업관리 시스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19. (1) 지원 대상에 있어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백화점식 영세한 사업수행하고 있어서 그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 2004년도 KOICA의 협력대상국은 약 138개국이며 이라크, 아프간을 제외한 협력사업비는 약 1억 달러 수준이다. 1개국당 평균지원액은 74만 달러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요지원 대상지역인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73개국에 대하여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인 셈이다.
- 원조 선진국의 경우 이와는 판이하게 달라서, 영국은 우리의 20배의 원조규모에 대상 국가는 43개국, 네덜란드는 11배 원조규모에 36개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원조대상 국가를 1998년 100개 국가에서 2004년에는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계속 줄이고 있다.

20. (2) 무상원조사업의 내용 면에서 볼 때, 원조사업의 기본 목표인 빈곤완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국별 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이 없는 여건에서 빈곤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컨텐츠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국별 원조계획(Program)이 미흡한 채, 일반적인 사업(Project)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한국제도의 해설 또는 물자제공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적으로 독특한 한국의 빈곤극복 및 경제발전의 노하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일례로 빈곤국가에서 목말라하는 한국 새마을 운동에 대한 충실한 교본도 없는 실정이다.

21. (3)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일련의 사업관리 체계가 지켜져야 하는데, 실제의 원조사업 관리에 있어서 사업의 기획, 실시, 감독, 평가 등의 일련의 사업관리 체계가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다.

- 기획은 사업전체의 목표, 수단, 가용재원, 책임소재, 사업지속가능성 및 단계별 평가기준

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사업기획은 사업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관리자의 기획력은 사업관리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는 기획력도 부족하고 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 주체의 적정성과 시행관리의 융통성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은 원조기관의 몫이고, 시행은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우리는 평가 및 환류 과정이 특히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생성된 주요한 정보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의 기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환류장치 및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불충분하다.

22. 셋째,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을 각론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업형태별로 분석한다.

⑴ 인력협력사업
⑵ 개발협력사업
⑶ 민간 국제협력사업
⑷ 개발협력사업 인프라

23. ⑴ 인력협력 사업으로서 연수생 초청 사업은 한국 개발협력 사업 중에서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도상국가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 연수 프로그램이 국가별 원조계획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 연수 내용이 단순히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한국의 경험을 살려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급할 수 있는 연수의 맞춤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연수를 본업으로 하지 않는 출연기관 위주의 연수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상품화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컨설팅 기업 또는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우선 전문가 수요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별 원조계획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개별 인사의 단기 파견에 치중되어 있어서, 그 효과성이 낮다.
- 봉사단파견사업에 대해서는 파견인력의 증대에 대응하여 개발협력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봉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24. ⑵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개발협력 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개발조사사업과 프로젝트가 있다.

- 우선 개발협력 사업이 앞의 인력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별 원조계획과 연계가 미흡하여 그 성과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모든 개발원조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수원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개발조사사업은 국별 원조계획 하에서 정책 프로그램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업형태이다.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아직 한국적 발전경험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컨텐츠가 제대로 개발 되어 있지 못하여 주로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25. (3) 개발원조에 있어서 시민사회, NGO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개발원조기관은 이들 민간 기구를 개발원조의 동반자로서 모든 사업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 과감하게 시장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6. (4) 개발원조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개발원조의 산업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협력 컨설팅 산업이다.

-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요가 높은 정책경험과 같은 메뉴와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있지만, 개발컨설팅산업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우리의 개발원조 자체의 역사가 일천한 점과 아울러 우리의 개발원조 사업수행 방식이 아직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03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실적을 보면,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개도국들도 상당한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7. 이상과 같이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로부터 몇 가지 특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 한국은 개발원조의 부담 수준과 원조의 질적 지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 한국의 무상원조 수행방식도 역사가 일천하여 선진국의 기준에서 볼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 앞으로 개발원조에 있어서 국제적 조화와 일치가 강조되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개발원조는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한국이 생존기반을 해외에 두고 있으며, 해외와의 협력관계가 한국인의 생존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개발원조의 지속은 국익의 차원에서 슬기롭지 못한 것이다.

28. 따라서 본 연구의 주 과제는 이상과 같이 개발원조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의 무상원조사업을 위주로 한 개발원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무상원조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것이다.

29.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연구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는 한국적 여건에서 개발원조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틀(Framework)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책의 틀에서 담을 구체적인 내용(Contents)일 것이다.
- 전자는 제도,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컨텐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0. 전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선 한국의 개발원조의 여건 하에서 개발원조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가를 검토한다.

31. 한국의 개발원조는 두 가지의 환경적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발원조는 국제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적 동향이 하나의 환경이 된다.
- 다른 하나는 재정적 제약성이다. 개발원조는 주로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므로 재원은 전적으로 재정상 제약을 받게 된다.

32. 먼저 국제적 원조환경에 있어서는, 지금 지구촌에서는 빈곤 완화가 최대의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원조 규모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원조 방식을 개편하면서 국제적 조화와 일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개발원조도 이러한 환경 하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3. 다음으로 한국의 재정 여건을 보면, 개발원조 예산을 크게 늘려나가기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 우선 경제가 고도성장의 단계를 벗어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그 만큼 경제의 활력은 둔화되는 대신에 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 이러한 재정상의 제약성에 더욱 어려움을 주는 것은 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다.

34. 한국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책무와 재정적 제약성의 괴리 하에서 개발 원조를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자를 따르자면 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하나 후자의 제약으로 그럴 형편이 못되고 그러다가는 국제적 책무를 소홀이 하는 것이 되고 만다.

35.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대안으로서는 (1) 재정적 제약성 아래에서 현재의 개발원조의 규모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2) 재정상 제약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6. (1)안은 한국의 여건에서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못된다.

- 먼저 한국인의 삶의 기반인 땅은 무엇보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며, 거기다가 식량인 곡물도 7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 이러한 좁은 땅에 가진 자원이 없이 많은 인구가 살아야 하는 한국으로서 그 생존 기반은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무역이 한국인의 생명선(Life-line)이다.
- 이러한 삶의 조건에서 한국인이 지속적으로 생존을 확보하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하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나가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생존기반이 되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7. 그런데 이 양대 축의 달성은 개발원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전자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출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기초적 조건은 (1)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으로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 (2)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후자의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한국의 브랜드는 어떻게 창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의 그 책무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발원조는 후자의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다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일의 핵심적 수단이다.
- 개발원조는 전자의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서로간의 원만한 국제적 관계로 한국이 에너지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출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제관계에서 좋은 인적 및 지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총 249억 달러 무역흑자 중 개발도상국가로부터 무역흑자 334억 달러(2004)를 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욱 그러하다.
- 뿐만 아니라, 개발원조 자체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국제적 원조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시장에서 후술하는 이유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결론적으로, 위의 (1)안이 아니라 (2)안으로 한국은 개발원조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생존에 긴요하다. 재정적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발원조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개발원조의 가치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39. 그 방법은 제한된 재원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최대로 살려서 국제사회의 핵심과제요 개발원조의 목표인 국제사회의 빈곤 극복에의 기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렇게 될 경우 개발원조와 경제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원조에 대한 국민적 기반도 강화되면서 개발원조의 재정상 제약도 극복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위상과 한국 경제발전에의 기여도 그만큼 가능하게 될 것이다.

40. 한국이 개발원조에 있어서 그 효과성과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이는 길은 원조사업에 있어서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잘 살려서 원조의 목적인 국제사회의 빈곤 완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41. 한국은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선진국의 입장과는 달리, 아주 적절한 입장에 있다.

■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래 지속적인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옴으로써, 현재의 개발도상국가와 같은 상황을 일찍이 경험한 바가 없다. 그들은 전혀 다른 시장 여건에서 발전하여왔다. 그래서 그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빈곤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입장이다.

■ 또한 개발도상국가로서는 그들에게 지배와 착취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그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도 하다.

■ 그런데 한국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 후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화에 성공한 공화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와 같은 환경에서 식민지 지배, 전쟁, 극단적 빈곤 등 개발도상국가의 보편적 고통유형 모두 경험한 바이다. 여기에 같은 식민지 지배국가로서 선진국처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역사적 부채가 없는 입장에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실천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42. 한국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 한국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저개발국가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국가였다.

■ 그러나 한국은 지난 반세기의 과정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근대적 산업국가로 변모하였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서 세계적인 제조기지가 되었으며,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 OECD 회원국이 되었다.

■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탄생하였지만, 한국처럼 국민소득으로 중진국 이상으로 도약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국가로서 성공한 것은 역사상 그 유례가 드문 것이다.

■ 한국의 이러한 발전의 과정 자체가 빈곤 극복을 지향하는 개발도상국가들로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43. 이러한 입장의 한국으로서 개발협력의 전략적 목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하나는 한국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빈곤극복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빈곤 퇴치국(Poverty eliminator)으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발원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44.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실천하는 개발원조 사업 운용은 역시 두 가지로 특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는 개발원조 사업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추진하는 것,

■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빈곤 완화에 개발원조의 초점을 맞추되, 한국적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린 한국적 개발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다.

■ 그럴 경우 한국 브랜드의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발전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45. 이렇게 개발원조가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생존과 국가적 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상원조 사업도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6. 세 번째 연구과제의 주된 요소인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의 틀(Framework)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개발원조의 법적 장치.

■ 개발원조 재원의 동원과 배분

■ 사업관리 시스템

■ 현행의 무상원조 사업별 개선과제

47. 첫째, 개발원조가 국가전략의 핵심적 요소라고 한다면, ODA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 ODA의 이념 및 정책방향 및 추진 절차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의 제정

■ ODA 분산 실시에 따른 연계성 확보 문제

■ 중장기 ODA/MDGs 추진 전략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자격

48. (1) 개발원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안한다.

■ 현재의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이원적인 사업법 체계 하에서 유 · 무상원조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ODA 비전과 철학, 기본 목표 및 효율적 수행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원조의 철학과 이념 및 기본원칙이 불분명하고 정책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 (가칭)국제개발협력법의 운용을 통하여 통합적 원조정책을 구현하면서, 대외원조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9. (2) 한국의 개발원조는 몇 갈래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하나는 유 · 무상원조가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외교통상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원조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부처간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50. 먼저, 전자의 유 · 무상원조의 비연계성은 앞으로 원조 규모의 증대와 국별 원조계획 하에서의 개발원조로 전환된 경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한 국가가 단순한 지원자금의 금융조건의 차이 때문에 개발협력 사업을 아무런 연계성 없이 각각 추진할 경우 상당한 낭비와 비효율성이 수반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최근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개발원조가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구 설치와 아울러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 기왕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 조정 및 다양한 전문적 자문기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꾸준히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체제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51. 다음으로, 후자의 무상원조사업 각 정부기관의 분산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비효율성이 수반되고 있다.

■ 2005년 현재, 외교부와 KOICA를 통하지 않고 있는 무상 ODA 사업은 1,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0개 부처와 8개 청, 1개

위원회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 원조 사업이 서로 연계성 없이 추진되어 중복, 낭비의 우려가 있고 제한된 재원을 분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효과성도 낮다.
- 각 기관은 개발원조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2. 그런데 이러한 분산 추진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한다.

- 무엇보다 외교통상부 감독 하의 KOICA를 통한 무상협력사업이 정부 각 기능별로 다양한 개발협력 수요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개발원조는 기관이기주의에 의하여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각 부처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한국의 개발협력 수요가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 각 부처 및 기관으로서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스스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53. 이상과 같은 분산적 무상원조사업 운영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상원조사업 운영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 당장 무상원조사업을 무상원조사업 전담실시기관인 KOICA로 통합하는 것은, 현재의 KOICA 운영조직이 정부 각 기능의 개발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에는 미흡함으로, 무리라고 판단된다.
- 우선적으로 KOICA는 각 부처가 가진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여 개발도상국 및 각 부처로부터 제기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나 각 부처의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무상원조사업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추려서 무상원조 전담실시 기관인 KOICA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처별 무상원조 사업은 전체적인 원조계획의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야 할 협력사업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예산은 KOICA의 무상원조 예산에 편성하거나 통합적인 국제협력 관련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54. (3) ODA/MDGs 추진전략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빈곤 극복에 독자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MDGs 실천계획에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 한국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가칭) 『중기(2006-2015) ODA 및 MDGs 추진전략계획』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공표할 필요가 있

다. 이 작업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하에 MDGs 실천 기본방향과 전략, 단계별, 분야별, 지역과 국별 주요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55. ⑷ 한국으로서 개발원조가 핵심적인 국가전략이라면, OECD/DAC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 OECD/DAC에 가입 시기는, 우선 그 가입 조건의 충족과 회원국 가입 후, 개발원조 수행 시스템 하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되, 가능한한 빠른 것이 바람직하다.

■ 전자의 경우, 개발원조의 규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개발원조의 GNI 비중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관행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원조의 질적 기준에도 크게 미흡하다. 무상원조의 비중, 증여율을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시켜야 하고, 원조의 언타이드화도 국제적 수준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원조의 수행방식이 국제적 관행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서두르더라도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이다.

■ 후자의 경우 국내 원조시장의 개방 하에서 우리가 충분한 수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가입이 경제적 부담만 초래하고 이득은 선진국 기업들의 몫이 되고 만다. 이 역시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 이 두 가지 조건을 더 이상 늦기 전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56. 둘째, 개발원조의 재원의 동원과 배분의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⑴ 개발원조 재원의 확대와 유 · 무상원조에의 배분

⑵ 재원활용의 선택과 집중

⑶ 재원기반 확충 및 원조사업의 중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관리제도

57. ⑴ 개발원조 재원의 확대와 유 · 무상원조에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개발원조 재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는 중기재정운영계획으로 2009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1%까지 확대하여, 총 ODA 규모를 9.1억 달러로 잡고 있으며, 특히 양자 원조 중에서 유상원조가 54.6%, 무상원조가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먼저, ODA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009년 GNI 대비 0.1%는 한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MDGs 달성을 위한 원조공여국들의 ODA 재원 확대 계획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

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그 배분에 있어서 ODA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ODA를 현 DAC 평균 수준인 0.26%(2004년도 추정치)로 확대할 경우 2010년까지는 최소0.16% 수준까지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개발원조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와 비교해서는 그 규모가 크게 늘 수 밖에 없는데, 사실은 원조의 규모의 증대와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쓸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긴요해 지고 있다.

58. 다음으로, 개발원조의 규모 안에서 양자간 원조의 유 · 무상 재원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중기재정계획상 양자간 원조의 유 · 무상구조를 보면 유상원조 비중이 무상원조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 유상원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무상원조가 수원국의 도덕적 해이와 자립의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한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역사적 부채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 반면, 무상원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국제적 기준이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공여하고 있으며, 증여율과 증여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가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이 문제는 어느 원조가 반드시 옳고 다른 방식은 그르다는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상원조의 논리도 무상원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원조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59.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현재와 같은 높은 유상비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개발원조의 국제적인 경향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높은 유상원조 비중과 낮은 증여율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며, 유상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 호주 등도 최근 유상원조의 비중을 더욱 줄이고 있다.
- 우리나라의 ODA 질을 향상시켜서 우량의 공여국으로 평가 받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바, 중장기 ODA 확대전략에서 유 · 무상원조의 구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무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유 · 무상원조 사이의 재원배분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원조재원의 효과성을 살리는 노력이다. 개발원조의 재원을 늘리고 금융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협력의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60. ⑵ 제한된 ODA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개발협력 대상국을 대폭 줄이고, 소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개발원조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사업이 정책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야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으로 다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 선진국 원조의 경우 최소한 우리보다 10-20배 이상의 원조 규모를 가지고 30개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2-3개 소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은 오랜 원조의 역사를 통하여 얻어진 원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하우이다.

61.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비추어 한국의 무상원조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 요구된다.

■ 중장기 국별 원조 프로그램(CP)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발협력의 빈곤 극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국의 선정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 국별 원조계획에 의한 협력대상국은 최대한 15개국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⑶ 한국의 재정상 제약성과 개발원조사업을 국별 원조계획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개발원조 재원기반의 확충 방안을 검토하며, 예산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ODA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3-5년간의 집중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별 프로그램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제도 운영의 다년도화와 신축성 확대가 필요하다.

■ 전략적인 다년간 예산지원 제도 운영을 통해 ODA 재원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ODA 재원에 대한 성과 측정과 성과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하고, 원조효과도 배가되어 원조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 아울러, 소액 다국 분산방식의 개발원조를 지양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가칭) 신속개발협력기금(Rapid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 RaDAS)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63. 셋째, 사업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⑴ 프로그램의 기획, ⑵ 사업의 시행, ⑶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feed back)의 관리체계의 기본적 사업관리 절차와 아울러 ⑷ 정보관리와 ⑸ KOICA의 조직체계를 검토한다.

64. ⑴ 프로그램의 기획은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첫 걸음이다. 그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아니

한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 아무리 재원을 많이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사가 되고 만다.

- 프로그램의 기획은 연구조사 기능이다. 따라서 원조기관은 연구조사를 통하여 국별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조사가 원조기관의 핵심적인 역량이 되어야 한다.
- 특히 한국으로서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빈곤극복과 경제개발의 지식과 노하우를 개발원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원조기관이 이러한 기획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기존의 사업시행, 평가 등 업무를 과감하게 시장에 위탁하고 원조기관은 기획 능력의 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65. (2) 사업의 시행은 현재 KOICA, 정부 출연기관, 시장에서의 선정 등 혼합적 방식으로부터 보다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NGO, NPO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 (3) 대외원조 사업은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평가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점이 우리의 사업관리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 평가는 통합적인 원조계획의 일부이다. 이는 원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DAC 가입을 위하여서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ODA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별도의 ODA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ODA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를 통해 보고하며,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원조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평가 보고서는 공개되고 인터넷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67. (4) ODA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개발원조 사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개도국에 대한 종합적 지식-정보-인력네트워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정보를 제대로 생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면 정보의 생산과 그 수요의 양면에 걸쳐서 대책이 필요하다.
- 먼저 정보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현장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파견인력이 현장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력 정보를 분야와 등급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의 생산이 수요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그 정보의 생산은 막대한 비용만 초래하고 결국 사장되어 재생산이 되지 못한다. 개발원조 사업의 추진 방식이 시장에서 용역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개발원조 전문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그들에 의해서 정보가 값지게 가공 활용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ODA 종합 네트워크(가칭 'KorAID Net')를 구축할 경우, 원조사업의 계획과 사업, 사업 시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정보와 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경제적 협력관계의 심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8. (5) KOICA가 이상과 같이 무상원조사업 관리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본의 JICA를 벤치마킹하여 1991년에 창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2천만 달러 정도의 소규모 예산을 120여 국가에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인력사업과 기술협력, 소규모 개발사업을 주된 원조사업으로 하는 기능형 사업조직이었다. KOICA는 발족부터 사업형태별 수행 조직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으며, 재원의 규모, 조직의 운영체계와 기능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사업별 개발원조 편제를 지속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 KOICA는 무상원조 전문 책임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경영을 실천하고 지역관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획기적인 변모가 필요하다. 그 형태는 선진국 원조기관의 일반적 원칙인 혼합형 조직구조가 바람직하다.

■ 원조기관의 일반적인 조직 형태는 정책과 기획, 원조조정, 평가, 관리 등을 총괄하는 정책관리국, 국별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지역국 그리고 주요 이슈와 분야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능국이 함께 공존하는 체계이다. 선진화된 원조사업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혼합적 형태가 바람직하다.

69. 넷째, 무상원조사업을 다시 현행의 개별 사업별로 고찰하여, 이상의 중장기 정책 프로그램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현행의 연수, 개발조사 등의 사업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관심이 될 수 있으나, 재원배분의 기준은 개발협력사업, 연수사업, 물자공여 등의 사업단위별이 아니라 국가별 정책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그 재원소요에 따라 먼저 정책 프로그램별로 재원이 배분이 되고, 그 다음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요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70. (1) 인력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가의 정책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빈곤 극복과 경제개발을 촉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유용한 사업이다. 그런데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요망된다.

- 무엇보다 연수계획이 국별 정책 프로그램 체계 하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연수의 내용이 단순히 한국의 발전경험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맞춤형 연수는 이를 본업으로 하지 않는 출연기관에 부수적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가능한 한 시장에서 연수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 그런데 연수 프로그램이 단기 연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학에서의 정규 교육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드시 타당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

- 선진국 원조에서 대학에의 정규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 한국은 대학의 정규 교육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실용적인 개발경험을 아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의 전달은 정규 교육기관의 학위 과정으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

72.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은 특히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 전문가 파견은 반드시 수원국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특정 정책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초청 연수 등의 여러 사업이 함께 수행될 것이다.
- 전문가 파견의 목적이 특정의 정책 프로그램의 달성에 있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단기적 파견이 아니라 복수의 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의료진 파견도 단순한 질병 치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원국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 ⑵ 개발협력 사업은 그 성격상 국별 원조계획을 실현하는 직접적 사업수단이 되는 바, 새로운 사업관리 체계 하에서 수행방식과 내용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 앞의 인력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별 원조정책을 기초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이,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물자나 하드웨어 제공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지식 위주의 개발협력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 국별 개발정책 프로그램은 선진국이 제공하기 어려운 한국의 개발경험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개발원조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산업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74. (3) 한국해외봉사단(KOV)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견인력의 대폭적 증대 구상의 타당성과 파견인원의 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75. 파견인력의 증대 자체가 개발원조의 이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문제는 파견인력의 증대로 개발원조의 이념이 퇴색될 정도의 질적 수준 저하 및 관리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76. 파견인력을 국가적 수요에 따라 증대하는 동시에 개발원조의 이념에 충실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봉사단 파견 사업의 운영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 봉사단의 수요를 적극 개발하고 동시에 공급면에서 철저히 대비하여 무작정 파견 인원수의 증대에서 오는 봉사의 질적 저하와 개발협력의 취지 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봉사단의 임무를 조정하여, 봉사단을 국별 원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청년인력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봉사단의 신규 수요국가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가로서 비 개발원조대상 국가를 개척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다.

■ 공급면에서 파견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철저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소년위주의 봉사단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비용을 줄이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자의 파견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 봉사단 관리 시스템은, 1단계에서 KOICA의 봉사단 파견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중장기 파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주력도록 하며, 파견인력 교육 훈련은 외주에 맡겨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그 실시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봉사단 파견을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7. (4) NGO 등 민간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비중을 늘려나가되, 사업의 수탁뿐만 아니라 개발원조의 전 과정에서 이들 민간기구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직 역사가 일천한 개발 NGO의 맹아적 수준을 감안 할 때, NGO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무상원조 중에서 NGO 사업에 대한 지

원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개발 NGO의 특성화 전략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NGO를 포괄하는 범국가적 가칭 「긴급구호위원회(Humanitarian Relief and Assistance Committee)」를 운영하여 국제적 지역분쟁과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78. 본 연구의 넷째 과제는 이상과 같이 논의한 무상원조의 정책 틀 안에서 담아야 할 컨텐츠, 즉 한국이 가진 빈곤극복 및 경제 개발의 노하우를 녹인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이란 개발원조의 기본목적인 국제사회의 빈곤완화를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필요성만 주장되어오던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79. 한국적 개발협력모델이 국제사회의 빈곤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개발도상국가의 여건에서 빈곤의 환경적 및 대내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80.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이를 구별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국민 의식적 측면에서 빈곤 국가들의 국민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선진국의 그것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역사적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 또는 사회주의 경험에 그 의식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에서 자립의지의 결여, 열등의식, 의타성, 근로의욕의 미흡 등의 의식적 특성이 선진국 국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 (2) 거버넌스(Governance)의 부재이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대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에서 부패와 비효율성이 만연하고 있다. 대게 이는 지배권력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 (3) 제도(Institution)와 현실의 괴리이다. 많은 국가에서 선진 민주주의 및 시장제도가 이식되어 있으나, 이들 제도와 문화적 토양의 불일치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역기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한 가지 예가 부가가치세제이다. 산업이 아주 유치한 단계에서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조세징수 과정에서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산업의 태생을 제약하는 구조적 토양을 만들고 있다.

■ (4) 글로벌 국제환경에서 기업 성장의 어려움

이다. 무역 및 자본 자유화의 WTO체제 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의 기업에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여건에서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신생 토종 기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거대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기지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개발도상국가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조하고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협소하게 되었다.

81. 특히 발전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Institution)의 정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의 실패로 끝나고 있다. 오히려 강제적으로 수용된 선진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수반하여 사회적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

- 제도(Institution)의 공급 및 수요 측면을 수용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 전자의 공급 측면에서 제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F. Fukuyama).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필요한 시간은 길기 마련이고, 단기적 변화는 단지 개별 조직이나 학교, 마을 등과 같은 매주 작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 후자의 제도의 수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특히 수요가 미약하다. 어떠한 제도 개혁에도 이해가 상충되나 기득권층이 특권 상실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역량의 공급의 비 이전성과 그 수요의 불충분성의 여건에서 선진국은 자신의 제도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

82. 국제사회의 빈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 첫째, 빈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 셋째, 수원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
- 넷째, 정책 프로그램의 제작
- 다섯째, 산업적 인프라의 정비

83. 첫째, 한국형 개발협력모델로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극복 및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Korea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IID)"를 제안한다.

84. KIID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빈곤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이다.

- 개발도상국가들이 발전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중요한 경제적 및 사회적 제반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신생국으로서 절대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빈곤의 단계를 벗어나는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극복하여야 할 핵심적 정책과제이어야 한다.
- 그들이 그러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빈곤 극복의 핵심적 요소인 기업의 육성, 발전역량의 정비 및 국민의식을 효과적으로 발전지향적인 것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85. 이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12개의 정책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 P1. 국가건설(State Building) 및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경영/전략(총론)
- P2. 개발정책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for Development Initiative)
- P3. 식량자급과 농촌 개발(Food Subsistence and Rural Development)
- P4. 새마을 운동 및 국민정신 함양
- P5. 가족계획, 국민보건 및 의료
- P6.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
- P7. 공기업의 관리(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
- P8. 국가 기간산업의 건설(Development of Key Industrial Plants)
- P9. 수출 진흥과 중소기업의 육성(Export Promotion and SMEs)
- P10. ICT 산업의 육성
- P11. 거버넌스(Governance)와 공공 서비스
- P12. 글로벌화와 대외적 경제안정 (Globalization and Economic Security)

86. 이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기준 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 본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한 개발도상국가의 현상
- 그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이 당면하는 발전 제약 요소
- 이러한 과제에 있어서 한국의 정책과 그 성과
- 한국적 경험의 개발도상국가에의 적용성 및 실현 방안

87. 둘째,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할 대상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선별하는 것이다.

- 개발협력의 대상을 지금과 같은 다수 국가에 대한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협력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하여 국가를 국별원조계획(CP:Country Programming)을 적용할 대상 국가를 선별하여 이들은 우리의 원조규모에 비추어 10-15개 국가로 한다.

88. 이를 위하여 모든 개발원조 대상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그 중에 앞의

둘은 국별 원조계획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 핵심협력국(Core Cooperation Country, CCC); 3-4개 국가.
- 전략적협력국(Strategic Cooperation Country, SCC): 7-12개 국가.
- 일반협력국(General Cooperation Country, GCC): 그 이외 현재 협력대상으로서 CP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

89. 핵심협력국(CCC)은 실패국가(Failing states), 절대빈곤 국가, 체제전환국가 중에서 대륙별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중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1개국
 - 아프리카 대륙 1개국
 - 중남미 대륙 1개국

90. 이들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의 요소이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 국가 지도자의 발전 의지와 도덕성
 - 국민의 다수가 절대적인 빈곤 상태
 - 체제 전환 또는 독립에 따른 정치 사회적 불안
 - 한국적 개발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태도

91. 전략적협력국(SCC)은 인도적 및 외교적 차원에서 협력이 긴요한 선별된 국가로서 그 범위가 핵심협력국 보다 다소 넓은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발전 단계와 수원국의 정책 수요에 맞추어 KIID Program 중에서 국별로 2-3개를 선별 지원될 것이다.

92. 일반협력국(GCC)은 통상의 외교적 차원에서 연수 물자공여 등의 일반적 지원대상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당장 원조를 줄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당분간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93. 셋째,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 요령으로서 내부적으로 발전역량 및 제도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소수의 정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적용하여 정책 프로그램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빈곤 극복의 가시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우선, 위와 같이 선정된 소수의 중점 목표국가들에게 소수의 해당 정책 프로그램을 지속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환류토록 하여 기간에 뚜렷한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위의 12개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 요령에 있어서 수원국의 발전 단계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창출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94. KIID 12개 정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발

전 단계에 따라 연결고리로서 얽혀 있다. 이러한 단계에 맞추어 해당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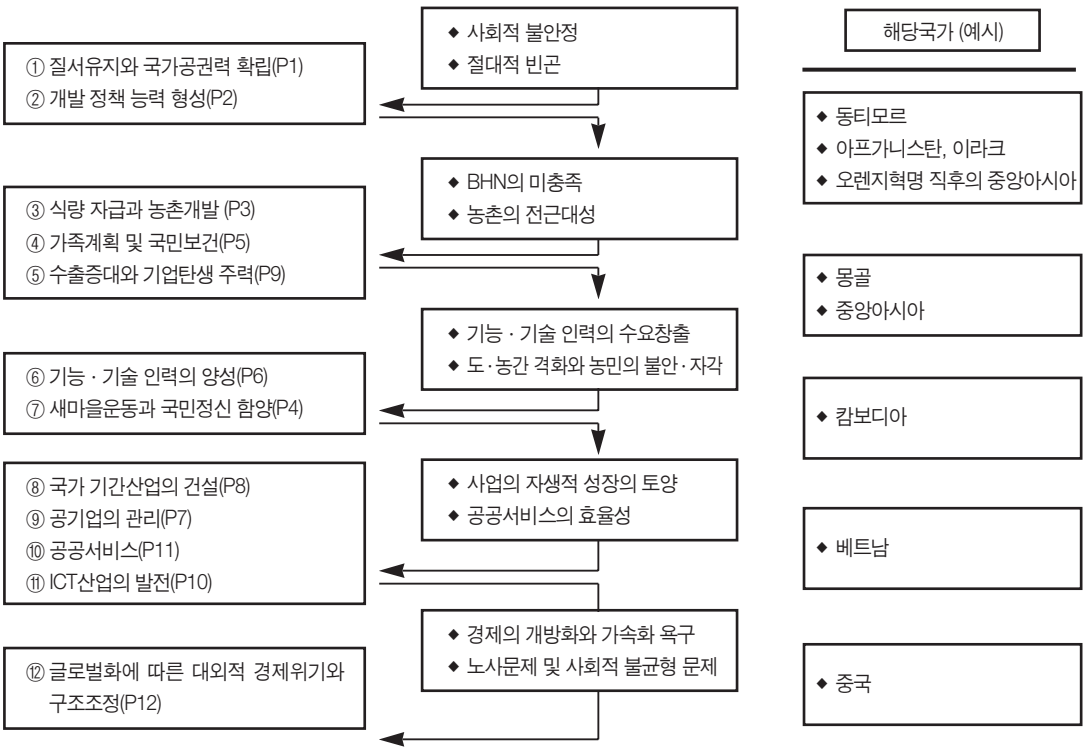
■ 1단계:

개발초기에 사회적 불안정과 절대적 빈곤의 여건 하에서 첫 단계로 요구되는 것이 국가적 질서유지와 국가 공권력의 확립(P1)과 개발정책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P2)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전근대성이다.

■ 2단계:

국민의 식생활과 기본적인 보건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식량자급과 농촌개발(P3), 가족계획과 국민보건(P5)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그 수단을 창출하는 수출 증대와 기업탄생에 주력(P9)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수출과 기업의 탄생이 이루어지면서 두 가지의 과제가 생긴다. 하나는 기능 및 기술 인력 수요이요, 다른 하나는 도 · 농간 격차와 농민의 불만 또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

〈 해외재난 긴급구호종합관리 체계 〉



한다는 점이다.

■ 3단계:

기능 · 기술인력 수요와 도 · 농간격차 및 농민의 자각 기운에 대응하여 기능 · 기술인력 양성(P6) 프로그램과 아울러 새마을운동과 국민정신함양(P4) 프로그램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라 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산업 및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제기된다.

■ 4단계: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가기간산업의 건설(P8)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 관리(P7),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P11)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해지고, 산업 발전의 진전이 ICT 산업 발전(P10)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업발전이 지속되면서 경제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노사문제 등이 불거진다.

■ 5단계:

산업 발전의 지속에 따라 경제의 안정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위기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P12)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95. 특히, 핵심협력국(CCC)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 지도자의 국가경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어야 할 것이 KIID P1이다. 동 자료에 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지도자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진단과 국별원조계획(CP)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12개 KIID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96. 이상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개발도상국가에 고질적 문제인 발전역량의 불비 및 제도의 비수용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식이 발전 지향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질적인 국제사회의 빈곤극복의 효과성을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97. 넷째,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기 위한 유형의 지적상품을 제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하나는 동영상 DVD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녹인 생생한 시청각 자료로서, 빈곤국가 및 그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일깨우고 스스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이다.

■ 다른 하나의 방법은 연구책자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바탕을 가진 분석보고서로서 정책담당자들의 정책 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98. 한국 개발협력 정책 프로그램 동영상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정책 분야에 대하여 한국적 경험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발전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 당시의 빈곤 및 경제개발에 대한 주역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하여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빈곤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99. 동 DVD에 담을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포함하면서, 당시 한국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개발정책의 주역, 근로자, 새마을 지도자, 농민, 기능공 등의 증언을 포함하도록 한다.

- 본 정책 과제의 측면에서 본 개발도상국의 여건
- 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문제점
- 한국의 초기 여건과 발전 전략
- 한국의 전략 및 경험의 개발도상국에의 적용성과 개발도상국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

100.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VD는 각 프로그램 별로 각각 1시간짜리로 제작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중요한 자료로서 그리고 국별 원조계획의 수립, 프로젝트 개발, 연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01. 다섯째, 이상과 같이 KIID를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서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한 개발협력 컨설팅 기업들의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서는 전문적 컨설팅 팀이 구성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3-5년의 시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년 성과의 평가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2. 개발협력 컨설팅 산업이 발전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근거는 개발협력 컨설팅 산업 자체가 세계 개발원조의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서 한국이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 세계 개발원조 시장의 규모는 현재로서도 선진국 국민소득의 0.26%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그 시장이 더욱 언타이드화 될 것이고, 한국은 그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개발원조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니 국제 시장에서의 그 엄청난 기회를 한국인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03. 이들 산업을 육성하여 그 과실을 거둘 수 있기 위하여서는 지식 컨설팅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내 개발원조 시장에서 실적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104. 이를 위한 개발원조 사업의 운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하나는 앞 절에서 서술한 사업추진 체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개발원조 사업이 개별 소규모 사업 공여 위주에서 정책 프로그램 위주로 바뀌고, 사업의 시행, 평가 등의 용역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원조사업 전문 컨설팅 기업들이 생성되게 될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사업 예산 단가 및 회계 관리제도의 전반적 개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용역을 시장에서 조달함에 있어서 그 사업 자체만으로 충분히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와 이윤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원조사업의 예산 단가 및 회계 관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개발원조 컨설팅은 지식상품을 파는 것이므로 지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국제적 기준의 용역예산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경쟁력의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 향후 5년 동안 개발원조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가까운 시기에 선진국의 컨설팅 기업들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5. 이상과 같은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은 지금까지의 선진국의 원조 프로그램과는 다른 독특한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고질적인 국제사회의 빈곤에 대하여 직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독특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가에 맞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이를 소수의 선택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그 성과가 여타 빈곤 국가에 파급되어 다른 나라들도 빈곤극복과 경제발전의 의지가 점화되도록 하고, 그에 맞추어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의 보급을 확산해 나간다.
- 그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의 기여에 따라 국제사회의 보다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체제에서 지속적인 국가발전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양허성 원조차관(Aid Loans) 제공의 실질비용과 제약요인

정 우 용 / KOICA 이집트 사무소장

Ⅰ. 머리말

적어도 1996년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채택한 "21세기의 구상: 개발협력의 공헌"과 2000년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 설정 이후 개발협력의 이념은 변하고 있다. DAC와 유엔의 이같은 새로운 원조패러다임 설정은 더 이상 원조공여국들이 자국의 경제 · 정치적 이익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원조를 적극 활용하는 시대로부터 이제는 개도국의 개발 지원이라는 원조 본래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개발협력파트너로서의 원조를 수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제 원조공여국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국의 원조정책과 방향을 대세적 흐름에 부합되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제법 원조규모가 커지게 된 우리나라로서도 DAC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2009년까지 중기원조확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원조의 효율적인 사용과 원조를 통한 국익증대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대외원조 논의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원조수행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워낙 원조자체의 이념이 크게 변하고 있고 대외원조에 관한 국제적 연대가 과거보다 더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우리식의 원조방법과 규범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기업과 물품의 해외진출이라는 목적으로도 긴요하게 활용되어 온 원조형태의 하나인 타이드 론 (Tied loans)의 향후 위상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무상보다는 큰 자금 규모의 유상의 형태로 원조를 받을수록 부족한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국제수지상 상환부담은 커질 수 있고,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차관을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차관의 실질비용[1]을 재산

1) 타이드원조 공여로 인한 직 · 간접적인 수출효과는 유 · 무상 모두 비슷하다고 가정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정해 보면 당초 기대했던 명목비용보다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이해를 떠나서 OECD 타이드 원조규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타이드 론 활용이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공여국의 관점에서 본 타이드 원조차관의 장단점 등에 대한 논점을 점검해보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원조로서의 양허성 차관제공의 타당성

차관(Loans)과 증여(Grants)의 차이는 차입금의 상환의무 발생여부이다. 원조(aid)란 무상의 형태만이 아니다. DAC 정의에서 보듯 일정한 양허성 (Concessionality)을 가진 차관도 원조의 범주에 속한다. 개발원조의 한축으로서의 양허성 차관은 그간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에 경제 · 사회발전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증여보다 차관의 사용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를 공여국의 관점에서 보면 원리금을 상환 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이 명백히 감소된다는 것과,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증여보다 차관으로 차입한 자금을 보다 주의깊게 사용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반면 원조로서의 양허성 차관의 사용을 회피하는 주장은 우선 개도국의 부채가 이미 과도한 수준이고 채무이행을 관리할 개도국의 제한된 제도적 역량을 들고 있다. 또한 양허성 차관이 민간자본의 역할을 저해하고 경쟁적 위치를 왜곡시키고 희소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이자율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허성을 가진 차관 공여가 수원국의 입장에서 재정통화적 시스템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양허성 차관 제공의 타당성 근거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본의 부족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수입하여 국내 투자수요를 보충한다. 투갭(Two Gap) 모델이 설명하듯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의 흐름이 저축과 외환 부족분을 충당해줘야 하며 따라서 외국원조의 역할은 저축과 투자, 그리고 수입과 수출의 두개의 갭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어느 정도 상업차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나 민간자금시장은 국제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원조자금 공급이라는 대체기능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예컨대 설사 민간자본시장이 중고소득 개도국에 신용자금을 공급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의 개도국은 그 특수한 경제적 조건 및 위치 때문에[2] 그 시장에의 접근에 제약이 많다. 개도국으로서는 높은 투자수익율을 가져다주는 경제 ·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자본이 필요하나 최종 산출물은 대개 초기에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보통 장기간(예: 30-40년)이 지나서 실현된다.

2) 예를 들면 개도국은 국가위험도(Risk)를 가지고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부족할 때가 많다.

따라서 민간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장기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양허성 조건의 장기차관이 최소한 개발초기 동안에는 민간자본시장에서의 자본흐름에 보충하여 필요하게 된다.

2. 채무완화

개도국의 과도한 채무 때문에 개발원조는 더욱 양허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채무증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양허적인 조건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 획득하는 외환고를 넘어서는 채무증가가 차관의 거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연성화(Softening)의 중요 논거이지만 사실 개도국의 부채 문제는 연성의 원조차관의 공여 때문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조건의 차관의 과다 차입 때문이다.[3] 개도국이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국내자본을 증대하여 외환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인프라 투자에 많은 재정적 소요가 필요한 개도국으로서는 수출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마이크셀(Mikesell, 1968)이 주장하듯이 양허성 차관은 지속적인 개발과정에 필요한 조건들을 얻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구조적 변화를 유인하고 촉진하는데 필수적이라 한다. 따라서 양허성 자금은 시장조건의 자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외채 상환과 외환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개도국들이 필요한 투자를 위해 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게 된다.

3. 자원의 합리적 사용

차관 사용의 또 하나의 타당성은 차관이 무상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차관은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원국은 지출에 있어 보다 신중해지고 검약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금의 보다 합리적인 사용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수원국의 자조노력(Self-help efforts)을 강조하는 일본의 엔차관 제공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타인버그(Steinberg, 1985)는 한국은 원조 효과성 측면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모델 수원국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조 효과성을 자금의 지출과 관련지어 볼 때 한국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신중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투자수익율이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높기 때문에 양허성 원조는 자원사용에 있어 수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높은 수익율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자본의 상이한 수익율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할인율(Discount rate)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할인율은 보통 자본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데 차관제공의 타당성의 근거 중의 하나는 개도국의 투자자본의 기회비용이 선진국의 그것보다 높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차관이 무상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자금 공여국의 할인율이 차입국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예를 들면, 1980년 초 멕시코의 외채 디폴트 선언 전인 1979년까지 개도국 외채의 77% 이상이 상업적 조건의 차관이었다. (kambhampati, 2004 : 122)

즉 그러한 자금의 이전으로 수원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 체로서도 자본을 더 높은 수익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사회 전체로서도 이익을 보게 된다.

Ⅲ. 원조로서의 차관 제공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관이 개도국의 경제 · 사회개발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여러 논거들에 불구하고 차관 제공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차관의 효과성의 위축, 차관의 실질비용을 감안할 때 무상원조 못지 않는 재정부담의 증가의 예상, 그리고 OECD의 타이드 원조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차관운용에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1. 경제 · 사회적 효과성의 위축

원조로서의 차관의 단점으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관이 중장기적으로 수원국이 상환하여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Martens, 2001). 설령 이자율과 상환조건이 시장조건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금은 단지 일시적인 원조일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여국이 당초 원조에 의해 지불했던 것보다 종국에는 더 많은 자금이 공여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차관을 많이 공여받을수록 수원국의 외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DAC회원국중 최대의 ODA 차관 공여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2002년말 기준 개도국은 970억불(최빈국의 80억불 포함)의 부채를 지고 있고 이는 두번째로 큰 차관 공여국인 독일(220억불)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공여국의 차관제공에 따른 수원국의 외채증가에 따라 선진국들은 부채감면 내지 탕감이라는 문제에 불가불 직면하게 된다. 보통 최빈국에게는 ODA 부채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지는데 1978년 UNCTAD에서 결의한 "소급조건조정" (Retroactive Terms Adjustment)에 따라서 DAC 회원국들은 과거 기 제공 ODA 차관의 조건을 재조정하여 ODA의 재무적 조건을 개선시켰다. 이 조정으로 약 60억불의 자금이 최빈국을 포함한 45개국 이상의 개도국에 혜택을 가져다 주었고 외채의 30억불 이상이 소멸된 바 있다 (OECD, 1985 :70). 1996년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를 창설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등의 빈곤국에 부채를 탕감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보다 최근 2005년 7월에 개최된 스코틀랜드 G8정상회의에서는 외채가 많은 18개국에 대해서 세계은행과 IMF에 지고 있는 400억불의 빚을 탕감키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진 빚만 탕감되는 것이고 민간 부채는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차관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차관' 이 경제적으로만 투자된다면 부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개도국이 차입된 자금을 상환

하려면 그것이 생산적으로 투자되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 개도국의 저축과 투자의 갭을 보충함은 물론 성장률을 증대시킬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차관을 상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차관이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않거나 투자보다는 소비증대를 위해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원국은 소비나 비생산재 구입을 위한 차관의 사용을 억제하고 수익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투자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둘째, 차관이 수출증대를 위해 사용될 때이다. 즉 수원국은 채무를 외환으로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해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수출 소득으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외환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발차관이 투자의 회임기간 (gestation)이 비교적 길고 낮은 수익율을 산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중 원리금의 상환액이 상승하게 되면 차관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부채가 외채일 때 상환은 외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증대시켜 국제수지(BOP)를 흑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원국은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프로젝트가 수원국의 국제수지를 충분히 개선시켜서 차관의 이자 지불 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의 2차적인 효과(예: 원자재, 1차 산품, 부품등의 수입증가)도 고려하여 국내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그러한 2차 수입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개발에 있어서의 차관과의 양립성 판단에 필요할지는 모르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필요한 외환을 획득할 수 있는 고수익 투자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 때문에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그 프로젝트가 타당할지라도 외국차관은 추가로 외환을 획득할 필요를 증가시켜 국제무역과 국제 자본 시장에서 장기적 의존을 더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충분한 수익율 또는 외환확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개발프로젝트가 결국 문제가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차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수출 지향적이지 않는 농업생산 지원을 위한 차관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상기 논거들은 ODA가 무상의 형태로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타이드원조 차관의 실질비용의 증가

원조비용은 수원국의 이익과 공여국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허성이 높을수록 상환액이 감소하게 되어 수원국에게는 유리하게 되지만 공여국에게는 그만큼 비용이 더 소요된다. 공여국의 원조비용은 수원국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닌 공여국의 부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이드 원조로 인한 양허성 감소효과는 수원국의 관점에서 본 원조비용 측정이라고 볼 수 있다. DAC의 양허성 산출방법은 그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우선적으로 각국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괄적인 고정할인율 10% 적용의 문제점과 기타, 차관상환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물가상승이나 환율변동을 감안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차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기준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면 양허성이 증가하게 되어 공여국의 비용이 증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타이드 론인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차관)의 경우는 원화를 대출하여 수원국으로부터 원화로 상환받게 될 때 그 가치가 국내 물가 상승이나 원화의 평가절하 같은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수원국이 부담 하여야 할 양허성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10%의 고정 할인율은 DAC가 정한 자의적인 수치이나 이자율과 함께 양허성 산출에 매우 크고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공여국 각국의 할인율이 사용된다면 보다 정확한 양허성을 산출해 낼 수 있고 따라서 적용 할인율에 따라 공여국의 비용이 달리 측정될 수 있으나 적정 할인율 측정은 명확한 산정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주관적 선택의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OECD는 타이드 원조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증여율과 유사개념인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을 사용 하는데 보통 상업참고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CIRR)를 각국의 할인율로 표시하여 산출하고있다. 우리나라의 EDCF차관의 경우 상환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마진(margin)을 포함하여 2001년까지는 10% 이상의 CIRR을 적용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10% 이하로 하락되고 있다. 즉 2001년까지는 CIRR 기준으로 볼때 명목 양허성 및 공여비용이 저평가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차입한 자금의 경제적 가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비(Harvey, 1983)가 일컬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지는 소위 '차입자의 이익' 이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양허성 측정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출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양허성이 인플레이션을 무시함으로써 저평가되어온 것이다. 차관의 상환흐름을 명목기준에서 실질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고 상환액을 인플레이션율로 디플레이트해야 한다. 또한 차관의 상환은 환율변동, 특히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로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한 차관은 장기간 대출되므로 미래의 예측 못할 통화 불안정에 취약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환율의 변동은 외화 차입자에게 흔히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나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화폐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된다. 따라서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환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공여국으로서는 대출한 자금의 양허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EDCF차관의 경우 수원국은 원화가 평가절하되면 상환해야 할 외환 (예: 미달러화)으로 표시된 원화상환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원국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원화가치가 인플레이션이나 평가절하로 인해 차관공여후 동일한 원화라도 그 가치가 하락하므로 상환액의 가치는 당초 기대보다 하락하게 된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물론 어렵고 설사 예측이 가능하더라고 먼 미래로 더 나아갈수록 신뢰성은 하락하게 된다. 자금공여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수

년간 경험하였던 비율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이 진전될수록 인프레이션율이 예외적으로 하락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플러스의 추세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환율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지난 수년간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향후의 추세를 예측하여 가정하여 볼 수가 있다. 우선 10%의 명목 할인율과 인플레이션율을 가지고 양허성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2004년도 EDCF 명목양허율은 평균 70.1%로서 지난 15년간 (1990-2005)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4.5%를 적용하여 재계산하면 실질 양허율(P)이 82.2%로 크게 상승한다(표 참조). 실질 상환분의 현재가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4] 또한 마찬가지로 1990-2005년간의 대미 원화환율의 연평균 변동율(-2.3%)이 차관의 상환기간중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실질 양허율(e)은 인플레이션 효과에 추가하여 85.8%로 증가하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율과 환율변동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증여율이 15.7% 상승하게되어 당초 명목양허성을 기준으로 한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국민경제에 미치게 된다. 대안으로서 양허성 수준(CL) 산출시 적용되는 CIRR을 기준으로 실질 양허성을 측정해 볼 수 있다. 2004년도에 적용되는 1.15의 마진을 포함한 7.04%의 할인율[5]을 적용하면 10%의 명목 할인율 적용시 보다 낮은 수준인 56.3%의 양허성이 산출된다. 마찬가지로 상기의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율을 적용하면 실질증여율은 각각 75.7%, 81.3%로 증가한다. 따라서 10%의 증여율을 기준으로 한 명목 양허성은 CIRR 적용 및 물가상승율, 그리고 환율변동율을 감안하면 실질 증여율이 11.2% (81.3% - 70.1%) 상승하게 된다. 만일 매우 큰 폭의 인플레이션율과 환율하락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증여율은 100% 이상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때는 유상이 무상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가져다 주는 사례가 된다.

〈 EDCF차관의 양허성 증가 효과 〉

적용 할인율	10%	7.04%
명목증여율1)	70.1%	56.3%
연평균 물가상승율 (1990-2005)2)	4.5%	
실질증여율(p)	82.2%	75.7%
연평균 평가절하율 (1990-2005)2)	-2.3%	
실질증여율(e)	85.8%	81.3%

주1) 2004년도 승인된 EDCF 13개 프로젝트의 평균 이자율(1.7%), 상환기간(30년), 거치기간(1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출입은행(2004: 12-13))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만 지급되는 연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An Equal Annual Repayment Method)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연간 상환회수는 DAC의 관행대로 1회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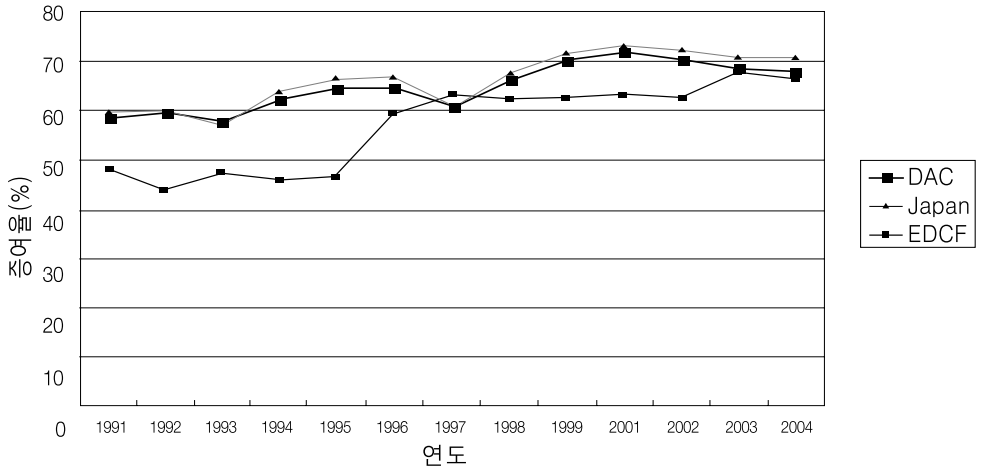
주2) 통계청(// kosis.nso.go.kr)의 1990-200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와 대미환율을 기초로 산출

또한 〈그림1〉에서 보듯 일본과 함께 DAC회원국들의 양자간 차관의 증여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70%를 상회하고 있는바, EDCF 자체 명목양허율도 DAC의 양허성 제고권고에 따라 계속적으로 상승 될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실질증여율도 더욱 더 높아져 무상원조의 비용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재정부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명목 상환액이 물가상승 지수(Inflation factor)에 의해 디플레이트되기 때문이다.

5) '04. 1.15~'05.1.14간 적용되는 CIRR은 5.79%이며, 2004년도 EDCF 차관의 평균 상환기간은 30년으로서 마진은 1.25%가 추가 적용하게 되어 적용할 인율은 7.04%가 된다.

〈그림1〉. 양자간 원조차관의 증여율 추이 (승인기준)



자료: 1. DAC보고서 (1992~2004)
2. 한국수출입은행(2004)

3. 타이드론 활용의 제약

원조차관-특히 타이드원조차관-은 OECD의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간 타이드 원조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DA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개발목적에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무역 왜곡은 더욱 심화되었다. 개도국의 근본적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나 문제는 그 제공 수단인 타이드 원조로 인한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의 경쟁적 도모에 있다. 1991년의 OECD 각료회의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원조자금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음이 보고되었다. 낮은 양허성 수준의 원조자금 사용이 증가하였고 최빈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에 원조자금이 집중되었다. 타이드원조는 사실상 공여국 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인 성격 탓이다. 결국 OECD는 1992년 3월부터 일명 헬싱키패키지라고 명명되는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의 효력을 발효하여, 타이드된 양허성 신용으로 개도국이 재정적(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Financially/Commercially viable) 프로젝트[6]를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무역 왜곡을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동 협약에 따라 중소득국과 저소득 최빈국만이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을 수있게 되었으며, 적격국에 타이드 원조를 제공하려는 공여국은 사전에 당해 프로젝트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저소득국의 경우 양허성 수준(CL)이 80% 이상이거

6) 정적(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시장조건의 지원으로는 프로젝트 운영비와 차관상환에 충분한 자금흐름을 발생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나 2백만 SDR(약 2.8백만불)이하인 사업은 타이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 협약 시행후 에너지와 제조업 프로젝트는 특히 급격히 감소한 반면 사회분야의 프로젝트가 주요 수혜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Lammersen and Owen, 2001).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은 분야의 일반적 특성은 주된 산출물이 공공재(예: 도로, 급수, 하수처리등), 단위당 생산비가 높은 자본 집약적 프로젝트, 그리고 보통 가계의 소비자들인 수혜자 집단이 적정 시장가격으로 산출물을 구입할 수 없는 분야 (예: 공공교통시스템) 등이 해당되며 향후 동 협정의 기본정신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4. 원조의 질 저하

이밖에 다른 요인으로 무상원조와 달리 차관 제공은 공여국의 원조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여국간 원조 부담에 관한 순위(Ranking)가 낮게 된다. 즉 차관의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양허성은 낮아지게 되어 원조의 질에 관한 한 DAC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공여국으로서 이미지가 각인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Ⅳ. 우리나라 EDCF에의 영향

양허성 차관 제공의 득실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수원 경험을 보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발차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원경험을 기초로 공여국의 입장에서 양허성 개발차관의 유용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한다는 점과 OECD의 타이드 론 규제는 실질적으로 차관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양허성 차관제공의 찬반에 대한 논거에 관계없이 전액 타이드론인 EDCF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적수출신용 협약에 적용을 받아 고중소득국 (UMIC) 이상의 고소득국에 대한 타이드원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저소득국 (LMIC)과 기타 저소득국(LIC)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타이드 론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차관상환능력이 있는 중저소득국 이상의 국가들에 대한 EDCF지원은 사실상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LMIC 및 LIC 국가군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없는 사업을 발굴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이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최빈국을 대상으로한 사업을 발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양허성 수준 (CL)이 80% 이상인 경우 타이드가 가능하지만 EDCF의 CIRR이 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10% 이하로 하락하고 있어서[7] CL을 80% 이상으로 제고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EDCF는 중국,

7) 2005년 적용 CIRR 기준치는 4.8%에 불과하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중저소득국 이상의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등 산업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OECD 가입 이후로는 타이드원조 제약으로 인해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과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저소득국중에서 상업성이 없는 사업을 발굴하다보니 그간 전통적인 무상원조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의료 · 보건 및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이[8] 1996년부터 증가하게 되어 유 · 무상간 차별성이 없는 국별 중복지원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증가추세는 당초 차관의 산업인프라건설 지원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불 제약을 받게됨에 따라 사회개발 목표 달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 지원의 대외적 명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차관지원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차관상환능력유무가 가장 취약한 최빈국에도 1996년이후 지원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최빈국 지원이 1개국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4개국 지원으로 급증하였고 2000년 이후로는 매년 2~3개국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V. 결 론

원조의 한 형태로서의 차관(Loans)제공에 대해 그동안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개도국의 경제 · 사회발전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타이드 원조차관은 개도국의 채무누적과 상환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는 비판과 함께 빈곤한 개도국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개도국의 빈곤한 세금납세자들이 부유한 선진국의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는 모순도 제기되고 있어 타이드 원조차관이 개발원조라는 명목하에 누가 혜택을 보는가에 관한 의문을 일으킨다. 또한 차관 사용의 타당성은 예컨대 '차관' 이 대출비용을 초과하는 국민소득이나 외환을 추가로 증대시키거나 상환기간 내 추가 소득을 발생시킨다던가 할 때이나 외채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를 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인프레이션과 환율 변동등의 요인을 반영한 실질비용을 감안하면 차관의 재정적 부담이 무상 못지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DAC에서 가정하고 있는 고정할인율인 10%를 적용하고 물가상승과 환율 하락율을 감안하면 실질 증여율은 70.1%에서 85.5%로 15.4% 더 상승하게 된다. 양허성 수준 (CL) 산출시 적용되는 할인율 7.04%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증여율은 11.2% 더 증가된 81.3%에 달한다. 향후 EDCF의 명목 증여율은 차관지원 조건의 개선에 따라 더욱 증가가 예상되고 설령 환율 변동분은 감안치 않더라도 최소한 물가상승분 만큼은 추가로 상승하게 되어 무상

8) 1987년~2004년간 승인기준으로 EDCF 분야별 지원비중은 교통(26.4%), 통신(19.35%), 에너지(12.1%), 보건(11.6%), 교육(10.2%), 상하수도 (8.0%), 환경(6.6%), 농림수산(2.7%), 제조업(1.2%) 순이다. 특히 보건분야는 1996년부터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원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원조의 부담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보조금 성격의 타이드 원조가 공여국의 무역이익을 증진하는데 사용되었으나 국제무역에서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인지한 결과, OECD는 헬싱키 패키지를 통해 기본적으로 상업적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만 타이드 원조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드 론에 대한 OECD의 규제의 심화, 원조의 질 제고와 관련한 DAC의 무상원조 중심의 추세 및 차관의 높은 양허율 추세등을 감안하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지원의 명분과 공여국에는 상환이라는 이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수단으로서의 차관의 비중이 점차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원조차관인 EDCF의 경우에도 타이드 론 사용에 제약이 불가피하여 지원국 및 분야 선정 등 효율적인 지출 전략 마련이 더 긴요해 질 전망이다. 특히 적어도 중기적으로 기금출연이 감축될 전망은 없어 보이므로 양허성 차관에 무상을 결합하는 혼합신용(Mixed Credit)등 다양한 형태의 타이드 론 활용방안이 모색되리라고 본다. 아울러 무상원조의 경우 타이드 규제가 DAC가입전은 물론 가입 후에도 최빈국지원 부분만을 제외하면 현재로선 적용이 예외가 되므로 일반 기업들도 점차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무상원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Harvey, C. (1983) Analysis of Project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Hampshire: Gower.

■ Kambhampati, U. (2004) Development and the Developing World, Cambridge: Polity.

■ Lammenersen, F. and A. Owen (2001) 'The Helsinki Arrangement: Its Impact on the Provision of Tied Aid',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6: 69–70.

■ Martens, J. (2001) 'Rethinking ODA: Toward a renew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 Discussion Paper for the United Nations Financing for Development Process, Global Policy Forum.

■ Mikesell,R. (1968) The Economics of Foreign Aid, London: Weidenfield and Nicolson.

■ OECD (1985)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 Singer, H. (2001)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w York: Palgrave.

■ Steinberg, D. (1985) Foreign Aid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ffectiveness of Concessional Assistance, Washington, D.C.: AID.

• 한국국수출입은행(2004)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Ⅱ. KOICA 업데이트

1. 대외무상원조사업 평가 보고서

2.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방한결과 보고서

대외무상원조사업 평가보고서

Ⅰ. 평가목적 및 방향

Ⅱ. 2005년도 사업추진현황.

1. 사업추진여건 ····· 50
2. 사업추진 ····· 51
3. 사업추진실적 ····· 52
4. 사업결과분석 ····· 55

Ⅲ. 평가 및 문제점

1. 종합평가 ····· 57
2. 문제점 ····· 57

Ⅳ. 개선조치사항

1. 기조치사항중 정책부분 ····· 62
2. 기조치사항중 사업부분 ····· 65
3. 향후 추진과제 ····· 68

〈첨부〉 2005년도 OECD/DAC 회원국 ODA 지원현황(잠정)

Ⅰ. 평가목적 및 방향

■ 2005년도를 중심으로 그간의 KOICA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존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UN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기여도 등 KOICA 원조의 국제적 수준 진단

※대부분의 선진공여국들은 MDGs 채택 이후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스템을 MDGs 달성을 위한 체제로 개편중

■ 평가를 통해 노정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나아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원조방향 정립

-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원조전략수립
- 지속발전 가능한 원조방향 및 원조기법 모색
-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하되 우리만의 독특한 경쟁력도 제고
- 내부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발전방안 도출

■ 개발원조 내용과 형식을 선진원조형태로 발전

- 세계원조동향, KOICA 무상원조규모 증가, 추후 OECD/DAC (개발원조위원회)가입 등을 고려,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원조체제로 개편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ODA의 확대 · 조직개편 및 전략수정 등 일련의 개혁 실시중

- 선진원조모델과 우리의 비교우위를 적절히 접목한 원조형태로 전환

Ⅱ. 2005년도 사업추진현황

1. 사업추진여건

■ ODA 규모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중

- '05. 9월, 제60차 UN정상회의에서 '06년부터 MDGs를 포함한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별전략의 채택 및 실행을 결의

※2005년도 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 잠정치는 1,065억불로 GNI대비 0.33%
→ 2000년 0.22% 대비 0.11%P 증가

-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ODA 확충에 대한 구체 일정표에 합의

※2015년 ODA/GNI 0.7% 달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추가로 500억불 지원 및 ODA/GNI 0.5% 달성, 최빈국 지원 GNI 대비 0.2%까지 확대

- 우리정부는 '05.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에서 MDGs 달성연도인 2015년을 목표로 ODA규모를 GNI대비 0.25% 수준까지 확대 검토방침 명시

■ ODA의 질적개선 요구

- ODA 양적확대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점진적 · 단계적 언타이드화, 최빈국 지원강화, MDGs 달성 등 국제화 요구
- OECD는 2005년 2월 파리 고위급 포럼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채택,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도출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원조공여국간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화,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조율, 원조의 성과지향, 상호공동책임 등

– 우리정부는 2010년을 전후로 OECD/DAC 가입을 추진 중이므로,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내용으로 개선 필요

■ 잦은 국제적 재난피해 발생

– 남아시아 지진해일, 파키스탄 지진, 중미 허리케인 등 대형재난 발생

– 재난구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사업수행체계 확립 필요

■ 정부,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 수립 ('05. 11)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립 ('06. 1)

–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수립

■ 국민의 ODA 관심증대

– 해외봉사단파견 확대, 이라크 재건지원, 국제재난구호 등으로 KOICA사업 인지도 증가

– 국민의 관심증대는 사업구성과 내용이 국민과 함께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을 요구

2. 사업추진

가. 사업목표

■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해 수원국의 자립능력 강화 집중지원

■ 국제사회와 함께 MDGs 달성 등 세계적 이슈 해결 적극동참

■ 우리나라 위상제고 및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나. 중점추진방향

■ 개도국 Needs에 부합하고, 우리 개발경험 공유 가능 사업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 및 정부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중점지원

– 선진국 · 개도국간 지식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분야 지원강화

– 해외봉사단파견, NGO 지원, 홍보 등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의 확대

■ MDGs 등 국제사회 공동목표 지원강화

– 빈곤완화, 기초보건, 초등교육 등 BHN 분야 지원강화

– 여성, 환경 등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원강화

– 최빈개도국 지원강화를 통한 세계빈곤해소 노력 동참

■ 국제적 재난복구 및 재건지원 강화

– 이라크 · 아프간 정부의 조기안정 중점지원

– 남아시아지진해일 등 복구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긴급구호봉사단 파견

다. 국별 · 지역별 추진방향

■ 국별 · 지역별 최적배분 모색

– 국별특성, 양국관계, 협력효과 등을 감안, 중점지원국가를 선정하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규모에서 적절배분

– ASEAN, APEC, SICA 등 지역 협의체 회원국과의 협력강화

■ 아시아지역 중점협력기조 유지

–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 지리적 · 문화적 관계 고려

– 특히 아세안 및 아세안 후발개도국인 CLMV ※ 지원 강화

※ CLMA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기타지역은 그 특성에 맞도록 지원

– 아프리카 지역은 사하라 이남을 중심으로 BHN 충족 및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 중남미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 등 중점협력대상국은 보건, 교육 위주의 시설 및 인력양성을 중점지원하고 기타 국가들은 HRD 위주지원

– 중앙아시아 지역은 시장경제 전환노력 중점지원

■ 최빈국 지원비율 확대

– 빈곤감소 등 MDGs 달성을 목표로 인도적 지원 확대

–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적극 동참

※ 우리나라의 GNI 대비 최빈국 지원비율은 0.01%로 DAC 회원국의 1/8 수준

3. 사업추진실적

가. 총괄

구 분		실 적	집행액 (백만원)
연수생초청		132과정 2,005명	11,360
전문인력파견		42국 1기구 79명	4,026
해외봉사단파견		29국 1,674명 (신규 723명)	33,597
물자지원		79국 8기구	9,928
프로젝트		28국 2기구 46개 사업	21,679
개발조사		11국 13개 사업	5,109
NGO 지원		14국 24개 사업	1,231
특별협력사업	아프간지원	프로젝트사후관리 1건, 연수 77명, 전문가 2명	563
	이라크지원	프로젝트 4건, 개발조사 1건, 연수 488명, 전문가 10명	57,322
	남아시아지원	프로젝트 4건, 국제기구지원 9건	26,027
	파키스탄지원	프로젝트 1건, 국제기구지원 6건, 구호단 파견 39명	3,656
협력사업지원		ODA연구조사, 홍보, 정보화 등	7,147
계			181,646

※예산집행실적은 2005년도 결산서 기준

나. 사업별 세부실적

1) 연수생초청

(단위 : 명)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과정/인원	133과정 2,180명	132과정 2,005명	92.0.%	인원기준

- 117개국 2,005명을 초청, 2004년도 1,923명 대비 4.3% 증가
- 한국형원전기술, 과학기술정책, 아세안 개도국 채권시장 육성, 국제통상 및 WTO 과정 등 총 132과정 실시

2) 해외봉사단파견

(단위 : 명)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계	32국 1,661명 (신규 720)	29국 1,674명 (신규 28국 723)	100.8%	활동인원1,234명, 귀국 단원 440명 (연말기준)
일반단원	31국 1,363	29국 1,373	102.7%	(NGO, 행정원 포함)
협력요원	23국 264	24국 265	100.4%	
협력의사	10국 34	9국 36	100.9%	

- 28국 723명의 신규 단원을 파견, 목표대비 101% 파견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등 긴급재난구호 봉사단 199명 활동
- ICT, 농림수산, 보건의료 분야 등 파견

※이집트(컴퓨터), 인도네시아(미곡생산), 파라과이(수산양식), 탄자니아(간호) 등

3) 프로젝트 · 개발조사

■ 프로젝트

(단위 : 건)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건 수	28국 2기구 46건	28국 2기구 46건	100%	

- 인적자원개발(29.9%), ICT(11.7%) 등 우리나라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과테말라 섬유기술훈련센터 건립, 미얀마 IT개발 마스터플랜 등

- 보건의료(29.4%), 환경(11.2%) 등 범세계적 관심분야 지원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현대화 등

■ 개발조사

(단위 : 건)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건 수	13건 11국	13건 11국	100%	

- 산업에너지 분야 집중지원 (44.3%)

※베트남 나짱-호치민간 철도복선화 실시설계, 인도네시아 카리얀 다목적댐 건설 타당성조사, 미얀마 송전망 건설 타당성조사 등

- 보건의료, ICT 분야 등 지원

※페루 식수개발 및 상수도설치, 몽골 정보통신기술분야 개발 마스터플랜 등

4) 전문인력파견

(단위 : 건)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전문가	인원/국	40명 / 21국 1기구	40명 / 21국 1기구	100%	계속: 1명 신규:39명
의 사	인원/국	18명 / 18국	19명 / 18국	105.6%	계속:18명
태권도 사 범	인원/국	20명 / 20국	20명 / 20국	100%	계속:20명

– 인도네시아 증권인프라 구축, 캄보디아 직업훈련, 에콰도르 중소기업육성, 우크라이나 에너지관리 분야 전문가 등
– 몽골 한의사, 피지 산부인과, 우간다 내과의사 등
– 네팔,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수단, 남아공 등 태권도협회 파견

5) NGO 지원

(단위 : 건)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건 수	14국 24건	14국 24건 12.3억원	100%	

– 전년대비 17.7%의 예산증가로 총 14국 24건 지원
※필리핀 결핵퇴치,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 방글라데시 공중보건사업 등
– 개도국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grass-roots 지원

6) 전후재건복구지원

① 이라크재건지원

(단위 : 건, 명, 백만원)

사업명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계	57,500	57,322	99.7%	
물자지원	27,227	27,209	99.9%	
개발조사	1건	1건	100%	
프로젝트	4건	4건	100%	
연수생초청	47과정 460명	48과정 488명	106%	
전문가파견	2분야 10명	2분야 10명	100%	

– 이라크 정부능력강화를 위한 물자지원 집중지원
– 현지 치안불안, 수원태세 및 행정체계 불안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 아르빌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2건 대비 4건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
※아르빌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사업 등
– 연수생초청 및 물자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완료

② 아프간재건지원

– 전후재건 지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 등 사후관리 집중지원 (50만불)
– 기지원 프로젝트의 사후관리를 현지 활동중인 아국 NGO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사업간 연계 및 사업효과 지속성 제고 도모

7) 긴급재난복구지원

① 남아시아지원

– 스리랑카 마하나마 교량개보수, 인니 아체 친선병원건립 등 2개국 4개 프로젝트 지원
※스리랑카 마하나마 교량개보수('05-'07/7,000천불) : 기간시설 복구지원을 통한 경제회생 및 생계기반 강화
※인니 아체지역 친선병원 건립('05-'07/3,700천불) : 지진해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등
– 재난발생 직후, 피해현장에 긴급구조대 급파, 봉사단 파견, 구호물품 전달 등 신속한

긴급구호 실시

② 파키스탄지원

- 텐트, 모포 등 대피시설 및 응급의약품 지원, 구호인력(39명) 파견
- WFP, UNICEF,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현금지원(457천불)
- 지진발생 직후, 1일만에 구조팀 및 의료팀을 구성하여 선발대 우선 파견
- 활동지역 확정 및 피해지역 수요파악 후 본대를 파견하는 등 긴급재난에 대해 신속·체계적으로 지원

③ 기 타

- 태풍, 가뭄, 홍수, 기근 등 재난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과테말라 허리케인(305천불), 수단 가뭄(100천불), 루마니아 홍수(80천불), 부룬디 기근(50천불) 등

4. 사업결과분석

가. 중동 및 아시아 중점지원

■ 2005년도 KOICA 무상원조는 2.1억불로 전년도 1.8억불 대비 19.4%/0.3억불 증가 (이하 잠정실적)

■ 지역별 지원비중은 중동 39.3%, 아시아 32.5%, 중남미 5.7%, 아프리카 5.3%, 동구·CIS 4.4% 순으로 지원

- 중동지역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이라크 특별지원에 기인

※이라크 제외시 아시아 50.1%, 중남미 8.6%, 아프리카 8.0%, 동구 6.7%, 중동 6.4% 순

- 아시아 지원총액 중 CLMV 4개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30.1% 차지
- 중남미 지원비중은 전년대비 소폭(0.8%) 증가했으나, 아프리카 지원비중은 소폭(0.8%) 감소

〈 표1. 2005년도 지역별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지역	계	아시아	중남미	동구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국제기구
지원액	215,120	69,985	12,296	9,552	84,569	11,409	811	18,190	8,310
비중	100.0	32.5	5.7	4.4	39.3	5.3	0.4	8.5	3.9

〈 표2. 2005년도 분야별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분야	계	교육 훈련	보건 의료	공공 행정	ICT	산업 인프라	무역 금융	농림 수산	기 타			
									그외	행정성 경비	긴급구호 /재건지원	NGO 지원
지원액	215,120	36,913	44,609	28,551	17,228	19,424	937	8,541	8,549	15,766	32,590	2,011
비중	100.0	17.2	20.7	13.3	8.0	9.0	0.4	4.0	4.0	7.3	15.1	0.9

나. 보건 및 교육분야 집중지원

■ 2005년도 분야별 지원 비중은 보건의료 20.7%, 교육 17.2%, 행정제도 13.3%, 산업에너지 9%, ICT 8%, 농업 4% 순

■ MDGs 달성을 위한 BHN 분야 및 HRD에 대한 중점지원

– 개도국의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및 기초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에 동참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 지원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9.1%, 5.5% 증가

다. 이라크·아프간 등 성실한 재건복구 이행

■ 열악한 사업환경에도 불구, 차질없이 사업수행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브랜드가치 제고

– 파병지역인 아르빌을 중심으로 전후재건복구사업 실시

– 우리군의 안정적인 활동 및 아국 인식제고에 기여

– 치안사정으로 인해 지연됐던 바그다드지역은 "원격관리에 의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중동지역 특별지원

– 이라크 파병에 대한 중동지역 우호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지원

– 중동지역 17개국에 대하여 '04~'05년간 3,600만불 지원

■ 아프간 재건사업 사후관리 강화

– 2005년도 신규예산의 축소에도 불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아프간 특별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라.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전개

■ 남아시아 및 파키스탄 재난 발생시, KOICA 구호대 급파

– 현지 활동 봉사단원 및 귀국 봉사단원, 119 구조대 등

■ 재건사업 후속지원

– 남아시아 재난복구 특별사업으로 분류하여 피해지역 재건지원

마.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 일반국민 참여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실천

– 최근 5년간 해외봉사단은 6.4배, NGO지원은 3.6배 증가

■ 특히, 해외봉사단 파견규모는 '91-'04년간 연간활동인원이 평균 200명이었으나 '05년도에는 1,600여명으로 대폭확대

– 2005년도 한국의 해외봉사단 파견규모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에 이어 세계 6위

※미국(Peace Corps) 7,800여명, 일본(JOCV) 3,600여명, 이탈리아 3,400여명, 노르웨이 1,600여명, 영국(VSO) 1,400여명 ('05년 연간활동인원 기준)

바. 고객만족도 제고

■ 정부출연기관 중 최상위 평가

- 연수생 및 수원국 원조총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수원국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및 시행 노력

※설문조사결과 고객만족도 평균 86.9점

Ⅲ. 평가 및 문제점

1. 종합평가

■ 2005년도 KOICA 대외무상원조사업은 대 · 내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국제적 재난에 대한 재건복구 지원 노력 등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지원대상 국가 수의 과다 및 국별 중점지원 분야 미선정 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중심의 사업수행에는 한계가 있었음.

■ 사업수단별 투입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인해 성과중심적 사업체계가 미비함으로 국가개발계획의 조화 등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원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006-2009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국별 · 분야별 집행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무상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맞음.

- ODA 규모 증가로 인해 Sector별 Approach 등 원조체제 개선 필요
- 중점협력국 대상 Country Program 수립 및 프로그램형 사업수행체제 개편 필요

2. 문제점

가. 정책사항

■ 대외원조규모 미흡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ODA 규모로 확대 필요 (2005년도 OECD/DAC 회원국 ODA/GNI 평균 0.33% - 우리나라 0.09%)
- 2005년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총액 기준 전년대비 75%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IDB 가입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기인 ('04년 0.06%)

■ 무상원조 비중 저조

- OECD/DAC 회원국 평균 무상비율은 90%를 상회
-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공여국들은 100% 무상원조 실시
-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 우리나라의 무상비중 상향조정 필요

※우리나라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상정된 2009년도 무상비율은 45% 수준

■ 투입위주의 원조사업 수행

- 사업수단별 투입위주의 사업으로 성과위주의 사업수행에 한계
- 중장기전략 부재로 전략적인 원조목표 수립

과 수원국 맞춤형 사업수행 미흡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 미흡

■ 국별원조정책 미비

– 사업중심 원조로 수원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원조계획 수립불가

– 지원분야 분산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지원성과 미흡

– 국별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업수단간 연계미흡

■ 소액 다국가 지원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저하

– 2005년도 지원 국가 수는 138개국으로 한정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한계

– 2005년도 지원 상위 10개국 비중은 전체사업비의 70% 차지, 이를 제외한 30%의 재원을 128개국에 분산 지원

〈 표3. 2005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

(단위 : 백만원, %)

순위	국명	지원액	점유율
1	이 라 크	75,624	40.1
2	스 리 랑 카	12,576	6.7
3	인도네시아	9,531	5.1
4	베 트 남	9,515	5.0
5	캄 보 디 아	5,954	3.2
6	필 리 핀	5,182	2.8
7	이 집 트	4,162	2.2
8	미 얀 마	3,490	1.9
9	아프가니스탄	3,393	1.8
10	우크라이나	3,235	1.7
계		132,664	70.3

* 비율은 행정비용과 다자간지원 총액을 제외한 양자간지원 총액 대비 비율

■ 본부위주의 업무체제로 현지실정 반영 미흡

– 일괄적인 수요조사 실시에 따라 수원국의 개발수요 반영 미흡

– 사업수행 현장에 있는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역할강화 필요

– 수원국의 Ownership제고 및 현지실정에 맞는 사업발굴 미흡

– 공급자의 일방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국과 협의체제 강화 필요

■ 무상원조사업 수행주체 분산으로 사업효율성 저하

– 정부의 무상협력사업 정책적 일관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저하 우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중 타부처 비중은 약 17%를 차지

– 사업수행주체의 분산은 수원국에서 우리나라 원조정책 혼란 야기

– KOICA는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을 위해 설립

나. 사업부문

1) 연수생초청

■ 개발경험 소개 위주의 연수로 편중

– 개발경험 소개만으로는 개도국 근본문제 해결에 한계

– 개도국 수요가 많은 Governance 부분은 대부분 정책소개에 국한

– 정책소개위주에서 정책개발위주의 맞춤형 연수로 개선 필요

※ 정책·기술소개형 연수 65%, 기술습득형 연수 26%, 시찰형 연수 6% 차지, 정책개발형 연수는 부족

■ 공급자 위주의 단순 연수형태 지양 필요

– 연수형태가 초청연수로 일원화되어 있어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

– 타 공여국과 같이 연수형태의 다양화 필요

※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태국 등은 지역성을 고려한 현지 연수 요청

☞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연수효과 제고를 위해, 현지연수, 제3국연수 필요

■ 사업계획수립절차 복잡

– 개도국 수요조사, 국내부처 수요조사, 연수기관 모집제안서 공모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계획수립에 애로

– 연수기관과의 단년계약으로 업무예측성이 낮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도 미흡

– 매년 국별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이 결정되므로, 중장기전략 부재

■ 연수기획 · 평가 능력 미흡

– 수원국 실정에 적합한 연수과정 개발 부족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행정, 회계, 행사, 산업시찰 업무에 집중

– KOICA 인력사정상 매년 증가되는 연수인원에 대한 지원에 한계

– 맞춤형 국별과정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용충실도는 다소 미흡

■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연수사업은 국내사업으로 민간 참여기회는 많은 편이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제한적

※Home Visiting은 연수기관 위주로 운영되어 민박 프로그램 활성화 미흡

■ 연수기관의 주인의식 및 참여의지 결여

– 단순한 연수위탁 관계에서는 주인의식, 참여의지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한계

– 최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관심증대

– 유사 프로그램을 타 관련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증가

※교육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과기부, 환경부, 여성부 등

2) 해외봉사단파견

■ 적격자원 확보 애로

– 농림수산, 이공계 등 전문분야는 적격자원이 부족하고, 중도포기자도 다수발생

– 2005년 지원자는 4,134명으로 모집공고 인원 946명 대비 4.4배가 지원하였으나, 지원자중 실제 응시자수는 지원자의 24.3%에 불과

– 최종 합격인원은 492명이었으나, 합격자의 21.5%가 중도포기

– 개도국 수요가 가장 많은 농업분야는 모집인원의 29% 수준인 47명지원

〈 표4. 2005년도 해외봉사단 모집.선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모집공고 (A)	지원인원 (B)	서류합격 (C)	응시인원 (D)	합격인원 (E)	출국인원 (F)
인원(명)	946	4,134	2,128	1,005	492	386
비율(%)	-	436.9	51.5	24.3	11.9	9.3
	-	B/A	C/B	D/B	E/B	F/B

※국제협력요원, 국제협력의사, NGO, 산 · 학협력대학 파견 등 제외

〈 표5. 2005년도 해외봉사단 분야별 모집 · 응시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육훈련			농림수산			산업인프라			의료보건			정보통신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계	110	946	1,005	29	246	351	29	162	47	30	161	126	15	157	218	7	220	263
초과	25	493	822	9	100	281				4	33	66	7	143	213	5	217	262
동수	14	64	64	5	51	51	5	5	5	3	5	5	1	3	3			
미달	32	311	119	6	77	19	12	131	42	11	96	55	2	5	2	1	2	1
없음	39	78	0	9	18	0	12	26	0	12	27	0	5	6	0	1	1	0

■ 양적확대에 따른 업무시스템화 미흡

– 파견형태의 다양화, 민간부문과의 연계 등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미흡

– 파견규모 확대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 · 체계화 미흡

■ 안전사고 및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연간 활동인원인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파견단원에 대한 안전 및 의료사고 발생 증가

※파견인원이 급증한 2004년 이후 사고 및 후송 건수는 200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사전예방 및 사고신속대응체제 정비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필요

3) 프로젝트 · 개발조사

■ 국내 개도국 개발 컨설팅 기관 부족

– 국제적 수준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나 기관이 부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

– 국내에는 선진공여국과 달리, 개도국 개발 컨설팅에 경험이 있는 전문그룹이 절대 부족하여 사업수행기관 확보에 애로

■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화 미흡

– 건축, 기자재가 투입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요소 빈발

– 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를 염두에 둔 중장기적 개발사업 지원전략 및 사후관리의 제도개선 필요

■ 개도국 개발과제의 종합적인 지원체제 미흡

–「분야별 종합지원방식 (Sector-Wide Approaches)」의 도입 필요

–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원과 기술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

■ 사업추진절차 개선필요

– 신규사업 선정후 사업개시 당해연도에 사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선정의 충실도 저해 우려

– 협의의사록 체결후 구상서 교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4) 전문인력파견

■ 전문가 참여인력 부족

–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관기관의 현직자에 의존

– 제한된 가용인원으로 파견전문가의 역량 부족 현상 발생

– 전문가 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자원의 활용실적 저조

※ 2005년도의 경우 40명 파견 중 3명이 Pool 등록자원

■ 전문가 활동성과 활용 미진

– 활동성과 및 결과물이 내부자료로 활용되는데 그치는 등 활동성과의 대외활용도 미진

5) NGO 지원

■ 지원규모 영세

– 특별협력사업 제외시 NGO 예산은 매년 소폭 증액

※ 최근 5년간 연 평균 9.8% 증

– 1개사업 지원규모는 평균 5천만원 내외로, 성과달성에 미흡

※ 지원총액 대비 지원사업수를 고려, 불가피하게 1개사업당 지원상한액 설정

■ 단년도 지원으로 사업의 연속성 부족

– 통상 NGO들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KOICA는 1년 단위로 사업을 선정 · 지원하고 있어 사업연속성 결여

■ NGO 등록제도 활용성과 미흡

– 기존 등록제도는 우수단체 검증 실효성이 낮은 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력 소요과다 등 문제점 발생

– 미등록 NGO단체들의 불만제기 가능성 내재

6) 전후재건복구지원 (이라크 · 아프간)

■ 종합적 사후관리 계획의 부재

– 사업종료후 수원국 능력부족 등으로 효과의 지속성 확보 애로 예상

– 기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 필요

■ 치안사정 악화

– 파견인력 및 지원물자 테러대상 가능

※ 이라크내 치안부재를 악용한 바그다드대학 및 18개 국립대 IT인프라 구축사업의 기자재 탈취사건 발생('05.9)

– 치안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 발생

7) 긴급재난복구지원

■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미흡

–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체결 등 제도마련에도 불구, 타 공여국에 비해 긴급재난 예산 및 인력부족 등 해결과제 산재

■ 신속한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부족

– 해외긴급재난구호에 관한 법률 미제정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전 구호물자 확보 및 관계기관간 합동훈련 등 제도적 장치 미흡

8) 다자협력

다자지원의 효과성 및 KOICA 역할정립 미흡

- 2005년도 다자지원액은 KOICA 사업비의 4%를 차지, '91-'05년간 평균 지원비중 3.11%보다 높은 수준이나 이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액의 급증에 기인
- 현행 KOICA의 다자지원은 대부분 외교부의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단순 집행, 단순 Funding 으로 인식

■ 국제동향 파악 미흡
- 선진공여국에 비해 다자지원에 대한 중장기 framework나 전략 부재
- MDGs 및 빈곤감소 등 국제적 이슈와 연계 미흡

■ 평가 및 사후관리 부재
- 대부분 국제기구에 대한 현금 및 물자공여 지원으로 사업이 종결되어, 지원 성과측정에 한계

9) 홍 보

■ ODA의 국민적 인지도 미흡
- 대외원조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 우리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사실에 대한 인지도 37% ('05.8월,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 대국민 홍보수단 다양성 부족
- 계층별, 대상별 홍보수단의 차별화 및 다양화 미흡
-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뉴스성 홍보로 KOICA 기관인식 부족

■ ODA 홍보 네트워크 구축 미흡
- ODA 관련 부처 및 기관간 연계강화
- 타 공여국과 같이 현장-본국간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 필요

Ⅳ. 개선조치사항

1. 기조치사항중 정책부분

가.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수립 ('05.12)

1) 수립배경

■ 국내외 ODA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세계적인 ODA 정책방향 변화추세, 우리정부의 ODA 확대방침, 국내민간부분의 ODA 관심증대 등
- 정부의 '05.11월 ODA 개선종합대책 관련, 무상원조 실천전략 수립

2) 전략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 중기무상원조정책 및 국가별원조정책 수립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대상국 선정
■ 한국형 원조모델발전
■ 국민참여형 원조추진
■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체제 구축
■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해외긴급재난구호 체제 구축

3) 소액다국가 지원방식 개선

■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실현

- 2006년도 협력대상국을 '127개국에서 58국' 으로 대폭 축소

4) 사업집행전략 수립

■ 지역별 · 국별, 분야별 · 사업별 상세 사업수행 전략 수립

나. 무상원조사업 수행체계 개선

1) 중점 및 일반협력국에 전략적 집중지원

■ 개발원조 성과제고와 재원배분 효율성을 고려, 선별 지원

-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구분

※ 협력대상국 선정 고려요인

: ① 수원국 빈곤상황, ② 수원국 통치상황(Governance), ③ 우리나라와의 외교적관계, ④ 경제개발잠재력, ⑤ 우리나라의 경협관계 등

2) 국별원조정책 (Country Program/ CP) 수립

■ 전략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개발원조 실현을 위해 국별계획 수립

- 수원국 빈곤감소전략 (PRSP), 천년개발목표 (MDGs)와 원조방향을 일치시켜 수원국 경제개발계획상의 고리와 연계성 강화

■ 사업중심에서 국가중심으로 전환

- 국별전략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 (Regional Strategy)도 수립

3) 지원분야 집중

■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
- KOICA 중점지원 분야 결정 ('06. 5)

① 교육(Education), ② 보건의료(Health), ③ 행정제도(Governance), ④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⑤ 정보통신(ICT), ⑥ 산업에너지(Industry & Energy), ⑦ 환경 및 기타(Environmental & others), ⑧ 재난구호(Disaster Relief & Reconstruction)

4) 정책대화 강화

■ 국별 원조정책과 수원국의 개발계획과의 조화를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 공관과 수원국간의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정책대화를 활성화
- 수원국과의 원조조율 및 정책일관성 유지
- 정확한 개발수요 및 실천방안 협의

다. 사업수행방식의 대 전환

1) 프로그램 체제로 전환 (우리나라 ODA의 新모델)

■ 국제원조 패턴을 고려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원조 기법 개발

- 지원규모가 적고, Sector별 Approach 기반이 미조성되었던 과거와 달리, 무상원조규모가 증가하므로 미래지향적 체제로 체질개선 필요

– 한 차원 높은 개발원조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수행체제로 개편

※ 성과위주로 지원하되, 그 목표를 보다 소프트웨어화

■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는 현 원조시스템」을 「국별개발과제를 종합지원하는 프로그램식으로 전환」하여 하기 현안문제 해소

– 개도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원조계획수립이 어렵고,

– 지속발전 가능한 원조방향 설정에도 한계

– 사업별 목표가 뚜렷치 않아 정확한 평가에 애로, 평가결과 Feedback도 미미

– 한국형 원조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 · 발전시키는데 한계

■ 목표중심적, 종합개발형 원조체제 구축

– 국별원조정책과 정책대화를 강화하여 원조의 질적제고 달성

※ 각 국별지원전략 범위 내에서 개발목표 설정 후, 목표에 합당한 중점지원분야를 선별해서, 세부적인 이슈를 정하고, 동 개발이슈에 필요한 각종 사업수단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 달성

■ 개발원조와 개도국 국가개발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 개도국 빈곤감소전략, 천년개발목표 등 국가개발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여 개도국과 함께 이를 달성하는 체제로 전환

※ 예) 과거에는 병원건립이 사업목표였으나, 앞으로는 유아사망율감소, AIDS 예방등이 사업목표가 되고 병원건립은 수단의 일부가 됨.

2) KOICA 조직의 선진화

– "프로그램 방식 원조체제" 및 "우리 경제개발경험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하도록 조직정비

– 국가와 분야집중을 강조한 전략적인 사업수행체제 구축

■ 지역정책기능 강화

– 현 지역정책팀을 지역정책부로 확대 개편 (3개팀 신설)

※ 중장기 원조정책 수립, 협력대상국 선정 및 지원분야 선정, 국별 원조전략(CP)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 기능 수행

–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 및 원조정책수립

■ 중점지원분야에 입각한 사업수행 편제

– 국제협력단의 중점지원 8개 분야 반영

※ 교육훈련팀, 행정제도팀, 보건의료팀, 글로벌이슈팀, 정보통신팀, 산업에너지팀, 농촌개발팀, 재난복구팀

■ 「전략수립, 사업수행, 평가」의 유기적인 삼각균형 유지

– 지역부서, 사업부서, 평가부서간의 효과적인 조율을 위해 임원의 관장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 평가업무의 강화차원에서 사업평가팀을 '사업평가실'로 격상

■ 행정 및 지원부서 슬림화

– 원조기획 및 사업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부 · 기획부를 '기획관리부'로 통합

라. 해외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1) 선진형 재난구호체계로 전환

■ 현금지원에서 구호활동으로 지원체계 개선

– 과거 현금지원 위주의 재난구호에서 긴급구호대파견, 긴급물자 수송 등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선진원조형태로 전환

–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구호활동을 위해 법적, 예산적 장치 마련중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 상정 · 심의중

※ '07년부터 해외재난 긴급구호예산을 현 300만불 규모에서 1,000만불규모로 증액 검토중

2) KOICA 긴급구호대 결성

■ 항시 파견체계 구축 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재난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 범국가적 협력체제 구축

– 파견절차 및 행동요령 등 필요한 매뉴얼 작성

– 구호대 모의훈련 등 실시

〈 긴급구호대 구성 〉

※ 긴급구조반 : 소방방재청, 119 구급대, 한국구조연합회

※ 의료지원반 :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긴급구호 봉사단 : 민간단체

☞ '06. 5월 인니 족자카르타 지진발생후 22시간만에 KOICA 구호대 및 의약품을 현장에 파견 (해외구호대로서는 최단시간내 지원한 국가 중 하나)

3) 긴급구호후 재건복구사업 후속지원

■ 필요시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원

– 사회기능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재건 및 역량강화 중점지원

– 지원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2. 기조치사항중 사업부분

가. 연수생초청

■ 연수과정의 차별화 및 전문화

– 연수과정을 연수목적 및 내용에 따라 4개 과정으로 大분류

① 기본과정(개발정책, 기능 · 기술) ② 특별과정(외교적 수요) ③ 국별과정(3년 중기) ④공동연수

■ 연수기간 적정운영 및 장기연수과정 개선

– 과정의 목적에 따라 기간을 점차 확대 · 운영

※ 기본과정은 2주미만 단기연수 폐지

– '05.11월, 장기연수 기본방향을 정립

※ 2006년도에는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3-4개 장기과정을 특화, 연수기관은 공모

■ 절차간소화 및 전산화 (Out-sourcing 확대)

– 과정운영은 연수기관, 연수지원은 위탁업체에 대폭이관

※ 사업담당자의 사업기획 · 평가 능력배양

☞ Project Design Matrix,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등 사업기획 및 관리 교육 실시

■ 새로운 연수형태 개발 (현지연수)

– 현지연수 타당성검토를 위한 연수기관 및

수원기관 자문

-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연수 가능 확인, 구체일정 등 준비

※ 2006년도 새마을운동, IT교육 등 3개 과정 시범실시

■ 연수과정 종료평가 개선

- 객관적이고 성과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종료평가 양식 개선
- 통합평가 체제로 전환키 위해 연수생 설문지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중

■ 연수과정 심의 강화

- 상반기 종료 37개 과정의 타당성, 향후 과정 지속 여부 등 검토
- 존속과정, 프로그램화 필요과정, 대체 또는 폐지과정 등 심의

나. 해외봉사단 파견

■ 시니어봉사단 제도 도입

- 중장년층 퇴직인력 및 은퇴인력의 경험과 기술 적극활용
- 연령제한 철폐

※ 40세 이상 관련분야 기술, 지식 및 5년이상 경험, 전문가급

■ 단원 안전관리 강화

- 안전 및 의료관리 체계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중점

※ 해외안전관리(KOV Security Manual) 교육 등

- KOICA 해외봉사단 종합상황실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긴급후송시스템(SOS Medical Service) 운영 등

■ 봉사단원 진로 및 취업지원

- UNV 파견을 통해 귀국단원 진로개척 및 전문가로의 인재양성 도모 (KOICA-UNV 기관간 협정 체결)
- 인터넷 취업전문업체와 계약, 별도의 취업정보 KOICA 웹사이트 구축
- 경력관리시스템(Career Path System) 도입

■ 해외봉사단 자격인증제 개선

- 선발 단원중 국내훈련 이수자에게만 '봉사단 자격인증' 부여
- 봉사단 자격인증 요건강화로 우수자원 파견 도모

■ 기술훈련 인턴쉽 제도 도입

- 팀제봉사단 파견전 농축산, 임업 등 관련분야 직무교육후 파견
- 국내관련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봉사단 실무능력 배양

■ 해외봉사단 파견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 파견인력의 모집, 교육, 파견, 사후관리까지 One-stop 시스템 구축

다. 프로젝트 · 개발조사

■ 관련규정 제 · 개정

-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의 일원화, 용역계약 세부내용 보완
- 현지조사 경비지급기준 명확화

– 사업선정위 운영기준 신설 등 효율적 사업 수행기반 마련

■ 분야별 사업추진 체제 구축

– 직제개편을 통하여 사업수행분야를 5개로 대분류

※ 공공행정 · 제도, 교육훈련, 산업환경, 정보통신, 의료보건

– 특정 개발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

※ 개발조사, 프로젝트, 전문가파견을 분야별로 통합

– 선진국 사례조사와 우리사업 특성을 고려, 분야별 사업 추진방향 연구 실시

※ 「개발사업 분야별 추진방향」 발간('05.5)

☞ 행정제도, 농림수산,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교육훈련, 의료보건 등 7개분야

■ 종료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종료사업의 각종 사업수행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 정보접근 용이성 및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DB 구축

※ '06년 2월부터 용역 착수

■ 유관기관과 업무개선 협의체제 구축

– 사업발굴, 계약, 용역수행 등 업무관련 유관업체와 대화 실시

– 유관기관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규정개정, 업무 절차개선 등 검토

라. 전문인력파견

■ 전문가 경비지급기준 개선

– 전문가 경비지급기준 현실화를 통해 우수 적격전문가 선발 도모

– 전문가 국내수당 신설, 전문가 현지활동 지원강화 등

■ 전문가 활동결과 활용 강화방안 마련

– 성과사례 발굴, 파견국의 활동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 홈페이지 게시, 단내외 해당분야 정기간행물 게재 등 우수자료 공유체계 강화

■ 파견전 사전조사 강화

– 수원국과 전문가 파견 활동계획서 및 체크리스트 사전협의 실시

– 6개월 이상 장기파견은 전문가 파견전 활동기관 및 직무 현지조사

마. NGO 지원

■ 한국 NGO 해외봉사단 신설

– 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위탁용역계약 형태로 지원

–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13억 지원, 77명 파견)

■ NGO 등록제도 개선

– 국민참여형 사업확대 차원에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NGO Pool" 운영

– 역량있는 NGO와 우수사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심사기준 등 개선

■ NGO 업무역량강화

- 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개발 NGO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워크샵, 현장방문 등 NGO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추진
 ※ KOICA, 국제기구 및 타국 NGO 사업현장 방문교육 실시(9개단체 참가)

바. 전후재건지원 (이라크 · 아프간)

■ 치안불안을 극복하는 특별 사업관리기법 발굴 · 시행
- 협력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신변안전지침 수립
- 사업별로 사업수행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
-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생생한 현지실정을 반영
 ※ KOICA는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종료 직후 신속하게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아국 공관 개설 및 타공여국 사무소 설치보다 앞서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
 (아프간 2001.12.22 종전, 사무소설치는 2002.3.7 /이라크 2003.5.1 종전, 사무소설치는 2003.5.9)

■ 성공적인 재건복구 이행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 열악한 현지실정에도 국제사회와 약속한 재건복구사업을 성실히 수행
- 파병지역인 아르빌 지역을 중심으로 전후재건복구사업 실시
- 치안사정으로 인해 지연됐던 바그다드지역은 "원격관리에 의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 대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본격착수
- 2004년까지 단기효과 (Quick Impact) 사업 위주로 진행
- 2005년부터 장기적인 재건효과를 위한 프로젝트사업 본격 착수
- 어려운 현지여건에도 불구, 차질없이 사업 수행 중

3. 향후 추진과제

가. 주요 정책과제

1) ODA 규모 확대

■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해 대외원조규모 미흡
- 2005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7.4억불로 GNI 대비 0.09%, 전년 대비 75.7% 증가
- 이는 IDB 가입 등에 따른 국제기구 출자 · 출연에 기인 (2억불)
 ※ 동 출연금 제외시 ODA/GNI 비율은 0.07% 수준으로 2005년도 OECD/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평균 0.33%의 1/4 수준에 불과

■ 국가정책차원에서 ODA 확대목표 연도 및 규모 조정필요
- '05년 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정부의 당초 목표의 의미 퇴색 (2009년 0.1%/2015년 0.25%)
 ☞ OECD/DAC 회원국의 ODA 증액추세를 고려,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 달성목표 재검토 필요

2) 무상원조 비중 확대

■ OECD회원국은 무상원조 중심으로 ODA 실시
- 유상원조는 일본, 스페인 등 일부국가만 실시
- OECD/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구조 필요
- 무상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0% 수준으로 조정 필요

※ DAC 권고사항 : ODA 양허율 86%, 언타이드화, 최빈국에는 무상원조 제공

3) 정부 무상원조사업 통합

■ 여러부처가 중복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KOICA 일원화
- 「작은정부, 국고의 효율적 집행」에 배치
 - 정통부 : '정보통신격차해소에 관한 법률('03.1월)'을 제정, 인터넷봉사단 파견, IT연수생초청사업 실시
 - 복지부 : '03.12월 설립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법제화를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재단법' 제정('05.12월), 보건의료지원사업 실시
 - 문광부 : 문화봉사단파견사업 실시

■ OECD 회원국 같이 무상원조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미국 USAID, 일본 JICA, 캐나다 CIDA, 스페인 AECI 등
- ODA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부처간 교류가 아니고, 개발원조라는 국제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각 국가들은 공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 수행

나. 평가시스템 강화

1) 평가범위의 확대

■ 성과관리 자율평가 정착
-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중간, 종료평가 실시

■ 사후평가 범위확대
- 국별, 주제별, 이슈별 평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 수행
- 무상원조사업 전반에 대한 공동평가 실시

2) 평가품질의 향상

■ 평가체제 재구축 및 피드백 강화
- 평가규정 제정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피드백 강화
- 평가결과와 조직 성과관리와의 연계
- 평가 가이드라인 재조정

■ 평가방법의 개발 및 직원평가역량 강화
- 평가지침 및 평가매뉴얼 개정
- 직원대상 평가교육 실시 및 평가전문인력 양성

3) 평가의 신뢰성 확보

■ 제3자 평가 확대
- 평가위원회 및 평가수행시 NGO 등 민간참여 강화
- 성과평가결과 검토 및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자문단 설치
- 타 공여국 및 수원국과의 공동평가 실시

■ 평가결과의 공개 확대

–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결과 적시공개

– 평가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한 평가결과 체계화

– 영문보고서를 통해 수원국에 평가결과 통보

–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

다. 한국형 원조모델 발전

1) 우리만의 특화된 모델개발 및 발전

■ OECD 공여국 중 유일한 빈곤극복국가 장점 활용

– 빈곤퇴치국 (Poverty Cutter)의 국제적 명성을 유용하게 활용

– 대다수 개도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 받기를 희망

– 개도국은 개발원조 파트너로서 선진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기대감 표명

■ 구체적인 개발과제와 기법 발굴

–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된 원조기법 연구

–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분야별 원조상품개발)

–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발전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

– 한국형 정책 프로그램 제시

※ 우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가족계획, 중소기업육성, 수출촉진, ICT발전, 기술인력양성, 공기업발전 등

2) 모델개발 연구강화

■ 우리나라 개발경험 연구 및 자료화

– 우리나라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국내연구미흡

– 대개도국 전수를 위해서는 한국 개발경험 자료화 필요

–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기법연구

※ 타 공여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행정경험 및 경제발전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한 · 산하기관 설치운영 (일본 JICA 국제협력종합연수소 등)

라. 사업별 개선과제

1) 연수생초청

■ 정책개발 역량강화 중점지원

– 국가별 개발과제를 고려한 국별과정 확대

–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속발전 가능토록 지원

– 사전조사, 정책협의, 워크샵 등 기초조사 강화

※ 2004년 이후 수원국 맞춤형 국별연수 점차 확대 중
: 12.3% ('04) → 12.6% ('05) → 26.8% ('06)

■ 연수과정의 표준화 및 정례화

– 효과적인 기본과정 운영방향 수립

– 기본과정을 일정기간 지속운영
(3년 또는 5년)

– 기관간 약정을 통해 안정적 사업운영

■ 현지연수, 제3국 연수 점진적 확대

– 직업훈련 등 실습형 교육은 현지연수를 통해 수혜인원 확대 및 기술전수효과 제고

※ 미국, 호주, 일본 등은 현지연수를 적극 운영중 (50%이상)

– 대륙별 거점국가를 선택, 제3국연수 확대 실시

※ KOICA-싱가폴 공동연수 과정 중 일부를 싱가폴의 CLMV 연수센터를 활용한 현지연수로 운영('04~)

■ 기획 및 평가 기능강화

- 국제기구 공동사업 확대를 통한 사업기획의 선진화 및 선진원조기구의 Management Tool 도입추진
-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확대를 통한 기획능력 강화

■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주니어 코디네이터제도 활성화, 초중생 연수센터방문 정례화」등 민간참여 프로그램 지속 개발
- 다양한 민간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협력사업 홍보 및 개발인식제고

※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제협력연수센터 개방, 주말 민박제도 운영, 연수생들과의 만남,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 Foster Family 제도 등

☞ 학생 코디네이터 : 고등학생들을 시내견학 시 코디네이터로 활용 ('06~)

■ 전문기관과 파트너쉽 강화

- 전문기관과 공동연수과정 개설 적극모색
- 타부처 및 민간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원자력기술, 선거관리 등 국내 Co-funding을 통한 2개 분야 사업추진 ('06)

2) 해외봉사단파견

■ 국별·분야별 봉사단 프로그램화 추진

- 파견형태를 다양화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도 강화
 - 시니어봉사단 : 2005년 파견인원은 21명으로 신규파견 인원의 3%
 - 긴급재난구호봉사단 : 남아시아 지진해일 지원 등 총 199명 활동
 - 산학협력 대학봉사단 : 2005년말 현재 6개 대학과 협정체결, 총 87명 파견
 - KOICA-NGO 봉사단 : 2004년 이후 11개 NGO단체 9개국 73명 지원

☞ 2006년부터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 NGO단체에서 직접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

■ 타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

-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형 사업수행에 봉사단 투입

※ 프로그램사업에 인적요소로 해외봉사단을 연계

■ 우수자원 확보방안 강구

- 전문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해외봉사 참여기회 확대
- 개도국 수요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부응

※ '05년 기준, 시니어 비중은 전체인원의 3%로 향후 10% 수준까지 확대 추진

- 농림수산, 이공계 등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요원 확대

■ 업무의 전문화·체계화 추진

- 단원 국내훈련 등 단순 반복업무는 외부기관 업무위탁 확대
- 직원은 기획 및 평가 업무에 주력
- 수요발굴, 모집·선발 업무의 체계화
- 단원관리 및 활동지원 업무의 전문화

■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 좀 더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홍보전략 개발

※ 주요 일간지, 지방지, 대학신문 등의 인쇄매체 및 인터넷 광고

– TV등 주요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 전달

– 귀국봉사단을 통한 홍보활동 및 홍보채널 다양화

3) 프로젝트 · 개발조사

■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점차 전환

– 제도구축, 지식전달형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부분 확대

– 선진원조국의 경우 컨설팅 비중이 높은 점과 개도국 지속발전 등을 고려, 소프트웨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다만, 사업의 결과가 무형적이기 때문에 수원국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므로 신중하게 추진

■ 개발 컨설턴트 적극 활용

– 분야별로 전문화된 민간 컨설팅 그룹 발굴 · 육성 필요

– 분야별 사업시행단체 및 기업의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 육성

– ODA 설명회 등을 통해 협력사업 참여 주체의 다변화 노력

■ 개발사업 추진절차 신속화

– 사업추진 지연요소 개선을 통해 사업집행의 신속성 제고

– 사업개시 전년도에 사전조사를 종료하여 사업추진기간 단축

– 정부간 협의절차 신속화

※ 협의의사록체결 후 신속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취하고 사무소 및 공관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상서 교환

■ 사후관리 내실화

– 사업수행업체 계약시 기자재 사후관리 조항 강화

– 프로젝트 운영지원, 기술자문, 부품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

4) 전문인력파견

■ 사업간 연계 강화

– 국별 원조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조사, 협의(선진국 일반적 형태)

– 수원국의 관련분야 정책수립 자문 및 제도구축 지원업무 수행

– 일반전문가, 팀제 전문가, 프로그램 전문가 등

■ 전문가 Pool 시스템 개선

– 전문가 Pool 시스템 개선을 통한 우수전문가 상시 확보체제 구축

– 검증된 전문가와 자격요건만 갖춘 잠재적 전문가로 구분 · 운영

– 기 파견자의 활동성과 및 보고서 관리 체제 구축

■ 태권도사범파견사업 외부 위탁용역 검토

- 관리 및 운영업무 아웃소싱 검토
- 태권도협회 또는 국기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 태권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개선

■ 의사파견사업 개선방안 검토
- 수원국 의료서비스 제도 및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방식으로 전환

5) NGO 지원

■ NGO 지원예산 확대
- 국별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NGO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국별지원사업외 NGO 역량강화 지원예산 규모도 확대

※ 1개 사업당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달성 및 우량사업 발굴

■ 다년간 지원 제도 도입
- 중기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사업추진
- 민간단체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KOICA는 체계적 사업관리 및 평가 가능

※ 신청단체 및 사업관련 자격요건, 심사기준 등 상세내용은 추후 확정하여 2007년도부터 도입 예정

■ NGO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Study Tour 프로그램 확대, KOICA 주관 워크샵 개최, 해원협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NGO 관련 강의과정 개설, 사업현장 탐방 프로젝트 공모제 등 실시

■ NGO 중점지원국가 선정
- KOICA 국별전략 수립후, NGO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제시
- NGO들이 동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

※ 예시 : 아프리카 지역은 식수공급, HIV/AIDS 관련사업 우선지원, 최빈국 지원우대 등

6) 다자협력

■ 다자협력체제 재정립
- 단순 현금공여는 지양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발굴
- 무상협력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다자협력의 국제동향 파악 강화
- 단내외 세미나, 연구용역, 국제회의 참가 등 정보수집 활동 강화
- 선진공여국 및 DAC에 대한 최신 정책동향 파악 강화

※ KOICA내 ODA 연구기능 강화, OECD 회의참석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각종 논의 적극참여 필요

■ 다자협력 평가시스템 마련
- World Bank, UNDP 등 핵심 다자기관과의 평가네트워크 구축필요
- 다자간 지원성과에 대한 정보 및 관련자료 교환 등

7) 홍 보

■ ODA 대국민 인지도 향상 노력 강화

–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확대 개발

– 국제협력 특강 및 글짓기 공모전 등 활성화

※ 2005년 초중고교생 대상 국제협력 특강이 237개교에 실시하여 전년대비 570% 증

※ KOICA 글짓기 공모전 시상확대 및 해외현장 방문을 통해 393개 학교가 참여, 전년대비 60% 증

■ 홍보수단의 다양화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TV, 일간지 등 파급효과가 큰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 강화

※ 합동취재 3회, 대언론홍보 총 1,133회(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광고홍보 12회, 유관기관 연계홍보 3회 등

• 다양한 채널을 활용 "KOICA 알리기" 주력

– 그간은 사업내용 홍보에 주력, 앞으로는 KOICA 기관홍보도 강화

– 기획 홍보, 계기 홍보, 온라인 홍보, 이벤트 홍보, 간담회 및 연찬회, 국제협력 연수, 여론 주도층 홍보 등

– 언론사 해외현장 취재 지원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을 통하여 협력사업 및 KOICA 소개 등

※ KBS 다큐멘터리(2편, '05.10, 12), 중앙일보 UN 창설60주년 기획기사(6회, '05.10 – 11)

※ KOICA–연합뉴스간 업무협조 약정 체결 ('05.2), 'KOICA 리포트' 등 게재

■ 정부의 국가이미지 제고노력에 적극참여

– 정부의 국가이미지 제고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KOICA 사업홍보와 해외홍보 협조 네트워크 구축

※ 국정홍보처, 정부부처 등과의 국제개발협력 공동홍보 노력 등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의장 방한결과 보고서

1. 지난 5.24-25간 방한한 Richard Manning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의장은 방한 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

■ 본인은 2003년 11월에도 DAC의장 자격으로 방한했으며, 한국의 개발원조의 기본골격은 그 때와 변함이 없음. 즉,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은 외교부 산하 KOICA가 시행하고, 유상원조는 재경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EDCF 담당부서가 시행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원조는 별도의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ODA로 산정치 않고 있음.

■ 한국의 ODA 규모는 2005년도에 7억불을 훨씬 상회하였고, 2009년까지 GNI의 0.1%,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각각 10억불 및 32.5억불의 규모가 될 전망임.

■ 한국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ODA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최근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3배로 증액(1억불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ODA는 여러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NGO들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국무총리가 최근에 ODA전략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지난 3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함.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고 15개 부처 대표 외에도 NGO, 학계 및 실무급 대표회의 및 금년 하반기에 제2차 총리주재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로부터 동 위원회가 다룰 정책이슈 리스트를 받아 보았음. 한국의 ODA의 정책목표는 여타 선진국의 ODA와는 구별되면서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의 빈곤탈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ODA를 집중시키며,

민주주의 및 민간안보를 병행 추진

- 각 대륙별로 핵심협력대상국을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전략 채택 (과거에는 남북한간 외교경쟁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을 널리 시행)
- 무상기술협력사업과 유상원조를 연계시키며, 점진적으로 Sector-Wide Approach 시행

■ 국무조정실은 종합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바, 새로운 ODA법 제정, 다양한 원조사업의 조화, 점진적 비구속성화 추진, 긴급원조체제 정비, 인적자원 개발, 한국의 개발연구능력 강화(ODA 연구센터 설립, 개도국에 대한 지역연구), NGO의 참여 강화(현재의 matching finance 및 block grant 체제 검토) 및 2010년까지 DAC 가입 추진 등임.

■ 이러한 사업은 시간이 걸리고 국무조정실 및 핵심사업부서의 기관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임. 그러나 한국 정부가 여러 면에서 국가적으로 이를 확고히 추진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이번에 만나보았던 사람들의 강한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 젊은 세대로부터는 국제적인 모습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KOICA 직원과의 대화시간에 더욱 그러하였음.

■ 물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ODA 규모 확대 결정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원고와 유상원조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음. 외교부와 재경부는 각각 별도로 사업 확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예산프로세스에서 top-down 결정이 필요한 것임. 이는 별도 부처인 예산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방문에서 면담을 하지 못하였음. 이 문제는 총리주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사항이 될 것이며, 한국정부의 사업우선순위 및 수원국간 균형측면에서도 임팩트가 클 것으로 보임.

■ 현재 대다수 사업은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KOICA의 사업내용은 다양한 소규모 기관 프로젝트로서 '한국의 우의' 라는 인상이 강함. 이러한 사업경향은 원조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이 특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여국이 되면서 변화하게 될 것임. 이는 외교부의 고위관계자도 인정하는 것이긴 하나 시간이 소요될 것임.

■ DAC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저소득국가이며, 북한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인 바, 국민들의 지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내년중 고위급 세미나 개최 예정도 이러한 목적때문임.

■ DAC 가입은 한국의 ODA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적절할 것임. 한국의 ODA는 규모면에서 가입요건을 쉽게 충족할 것이고, 통계 측면에서 그간의 협조실적이 탁월하며, DAC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해 배울뿐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DAC의 경험은 성과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이미 KOICA 및 EDCF는 어느정도 평가능력을 갖추

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내 이루어진 컨센서스는 향후 4~5년안에 DAC 가입추진이지만 일부 부처는 좀더 빨리 가입절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정식 DAC 가입 이전에 파리선언을 비롯하여 원조정책 및 원조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측이 제의한 바 있는 외교부 직원의 DAC 사무국 파견(secondment)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반면에 한국의 ODA 검토(Peer Review light)에 대하여 한국측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며, 실제로 일각에서는 early commitment 및 peer pressure에 조기 노출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감지됨. Untying 문제도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Soft Loan의 경우 그러하였음.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의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2004년도에 각각 15백만불 내지 2천만불의 지출이 이루어졌음. 한국정부는 DAC 가입시 취해야될 조치를 잘 알고 있으며, 정확한 가입시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속도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보임.

2. DAC의장은 주요 회원국 방문후에 통상 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내부관계자 및 DAC 상주대표에게 회람하고 있으며, 상기 한국방문결과 보고서 초안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ODA 추진상황과 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제기구

- 2005 ODA통계
- OECD 개발원조 고위급회의 결과
- OECD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 결과
- MDG+5 정상회의(2005) 결의문

2. 공여국

- OECD/DAC 주요원조기관의 조직도
- Overview of Program-Based Approaches (CIDA)
- 무역을 위한 원조 회의결과

2005년도 ODA 통계

1. OECD 사무국이 잠정집계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DAC 회원국의 ODA는 1,060억불로서 DAC 회원국 GNI 총액의 0.33%이며 2004년의 795억불(0.26%)보다 크게 증가된 바, 이는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에 대한 채무탕감(190억불)에 기인하며, 채무탕감을 제외할 경우 66억불(실질가치로 8.7%)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ODA 확대 주요요인 및 전망

- 파리클럽 채권단은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에 대해 대규모 채무탕감조치에 합의, 2005년에 이라크 140억불 및 나이지리아 50억불의 채무를 탕감하고, 나이지리아에 대해 2006년 추가 채무탕감, 이라크에 대해 향후 3년간 추가적 탕감조치가 있을 예정임.
-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 피해 지원을 위해 22억불의 ODA 제공
- ODA는 2006년 및 2007년에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ODA 확대공약에 따라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 공여규모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순이며, 유엔목표치 0.7%를 초과하는 국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에 불과함.

■ 미국의 ODA 규모는 270억불로서 채무탕감액을 제외해도 실질가치로 16.2%가 늘어났으며, ODA/GNI 비율은 0.17%에서 0.22%로 증가하여 198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주요 증가원인은 이라크 채무탕감(39억불), 이라크 재건지원(35억불), 아프간 재건 및 마약통제(15억불)임.

■ 일본은 130억불(GNI 비율 0.28%)로서 실질가치로 12.1% 증가한 바, 이라크 지원(32억불), 쓰나미 피해 국가에 대한 지원(5.4억불)이 주요 요인임.

■ EU 15개국은 560억불(GNI 비율 0.44%)로서 채무탕감 제외시 3.8% 실질적으로 증가함. EU 국가들은 2006년까지 0.39%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아직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

호주와 독일은 부채탕감 때문에 2005년도 목표를 초과함.

3. non-DAC 공여국 중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2005년도 잠정통계를 제출하였으며, 모두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는 총 744백만 불(0.09%)로서 '04년 423백만 불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양자원조 증가 및 국제기구 출자금 증가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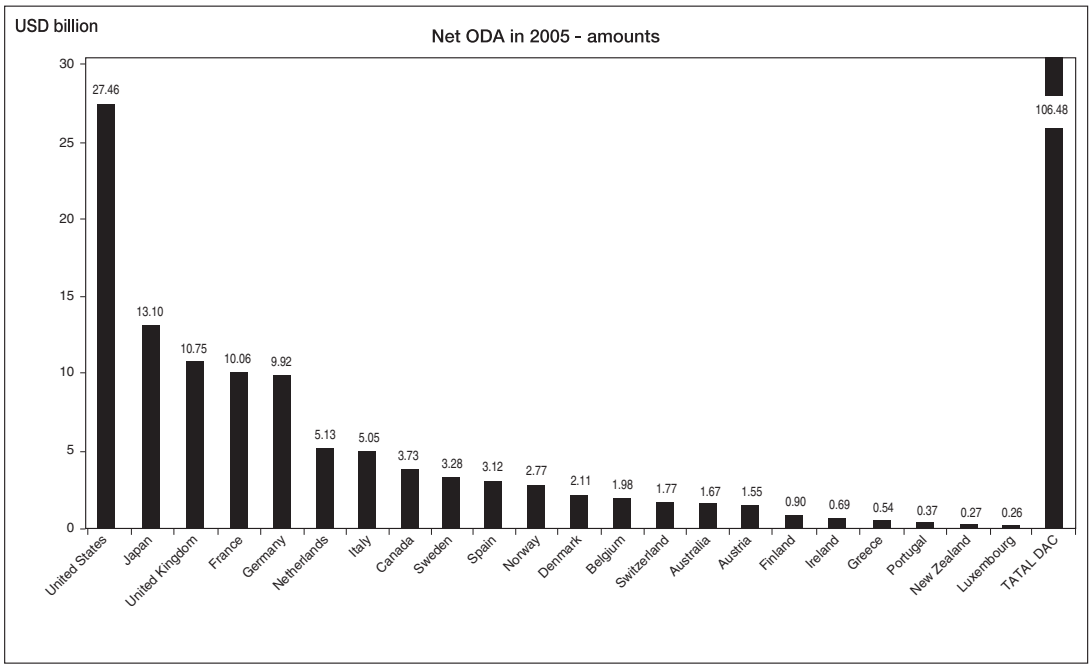
■ 체코는 131백만 불(0.11%), 폴란드는 283백만 불(0.09%)을 기록하고, 슬로바키아는 56백만 불(0.12%)로 전년에 비해 거의 배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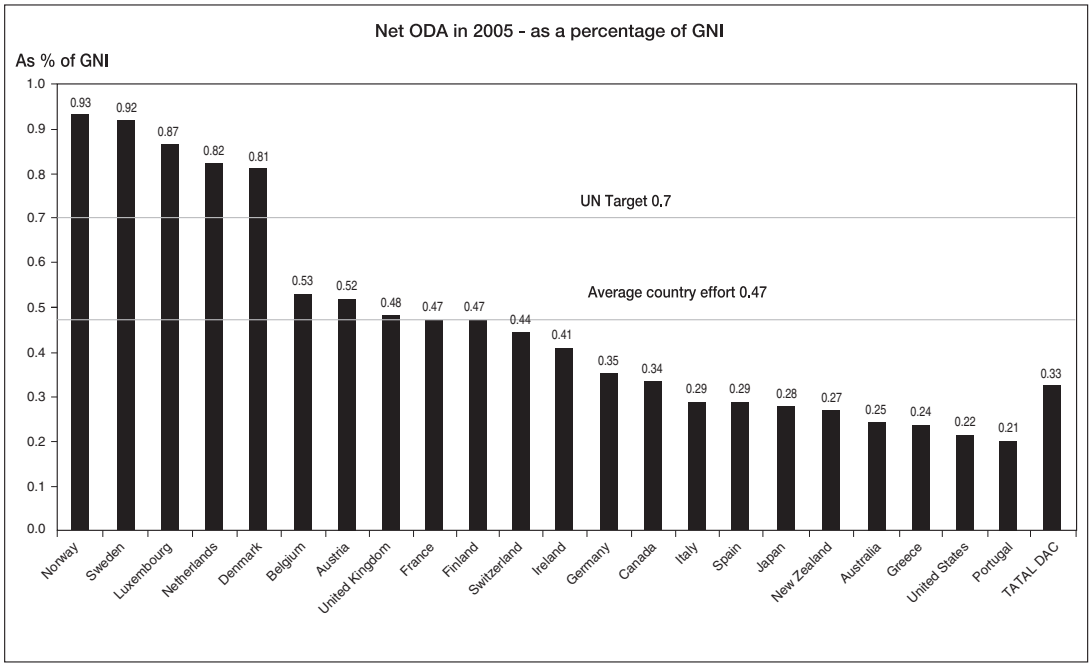
TABLE 1 :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5
Preliminary data

	2005		2004		Excluding debt reliefgrants	
	ODA USD million current	ODA/GNI %	ODA USD million current	ODA/GNI %	Change in USD million 2004 to 2005(1) At 2004 prices and exchange rates	Percent change 2004 to 2005(1) At 2004 prices and exchange rates
Australia	1,666	0.25	1,460	0.25	88	6.1
Ausria	1,552	0.52	678	0.23	53	9.0
Belgium	1,975	0.53	1,463	0.41	216	17.2
Canada	3,731	0.34	2,599	0.27	449	17.8
Denmark	2,107	0.81	2,037	0.85	17	0.8
Finland	897	0.47	680	0.37	76	11.6
France	10,059	0.47	8,473	0.41	-3	0.0
Germany	9,915	0.35	7,534	0.28	-684	-9.8
Greece	535	0.24	465	0.23	53	11.4
Ireland	692	0.41	607	0.39	69	11.4
Italy	5,053	0.29	2,462	0.15	939	40.0
Japan	13,101	0.28	8,922	0.19	1,064	12.1
Luxembourg	264	0.87	236	0.83	20	8.4
Netherlands	5,131	0.82	4,204	0.73	660	16.6
New Zealand	274	0.27	212	0.23	40	18.7
Norway	2,775	0.93	2,199	0.87	276	12.6
Portugal	367	0.21	1,031	0.63	-668	-65.1
Spain	3,123	0.29	2,437	0.24	305	13.7
Sweden	3,280	0.92	2,722	0.78	546	20.3
Switzerland	1,771	0.44	1,545	0.41	2	0.1
United Kingdom	10,754	0.48	7,883	0.36	-123	-1.7
United States	27,457	0.22	19,705	0.17	3,172	16.2
TOTAL DAC	106,477	0.33	79,553	0.26	6,567	8.7
Average Country Effort		0.47		0.42		
Memo Items included in the above:						
EC	9,629		8,704		755	8.7
DAC EU countries combined	55,704	0.44	42,910	0.35	1,477	3.8
G7 countries	80,068	0.29	57,578	0.22	4,814	8.9
Non-G7 countries	26,409	0.50	21,976	0.45	1,753	8.3
Non-DAC Countries						
Czech Republic	131	0.11	108	0.11	15	15.8
Korea	744	0.09	423	0.06	242	57.1
Poland	283	0.09	118	0.05	119	101.0
Slovak Republic	56	0.12	28	0.07	25	87.7

(1) Taking account of both inflation and exchange rate movements
Note: The data for 2005 are preliminary pending detailed final data to be published in December 2006. The data are standardised on a calendar year basis for all donors, and so may differ from fiscal year data available in countries' budget documents
Source: OECD, 27 March 2006.

Chart 1: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5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 개발원조 고위급회의 결과

Ⅰ. 제44차 OECD DAC 개발원조 고위급회의가 2006.4.4-5 OECD 사무국에서 개최되어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 원조규모 확대, 취약국가 문제, 빈곤층을 위한 성장문제, 인도주의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바, 주요결과를 아래 보고함. (우리측은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 박석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등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관계자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

1. 핵심 내용

■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발표한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의 주요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DAC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 DAC 회원국 대표들은 현재 DAC에 미가입한 OECD 회원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DAC 가입을 유도해 나갈 예정임을 밝힌 바,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적절한 시점에 DAC 가입 추진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 일본 등 다수 DAC 회원국들이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개발원조정책이 ODA 관련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된 개발원조 제공은 시장왜곡 및 수원국의 거버넌스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2. 관찰 및 평가

■ 금번 OECD DAC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정부가 적절한 시점에서 DAC 가입추진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언급한 바, Schieck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이 이미 DAC 회원국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DAC 가입 추진이 가시화되는 경우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 등이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ODA 제공에 대한 비판이 증대됨에 따라 DAC 가입이전에도 우리의 ODA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원조 고위급회의 등 정례적 DAC 회의에 우리 고위급 대표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DAC 회원국 대표들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우리 ODA 정책 선진화 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회의 상세결과

가.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을 주제로한 수석대표 만찬 (4.4)

1)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내용

■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신흥공여국들이 DAC의 ODA관련 가이드라인을 착실하게 준수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함.

■ 한국의 경우 ODA 규모는 일부 DAC 회원국보다 더 크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으나, ODA 정책, 평가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바, 향후 적절한 시기에 DAC에 가입추진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ODA 정책을 선진화시키고 DAC내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DAC는 한국 등 Non-DAC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outreach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DAC 회원국들의 경험을 bench-marking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한국정부는 국무총리주재하에 ODA 정책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를 비롯, 재정경제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ODA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설명함.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인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관련 우리정부는 대통령께서 지난 3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대아프리카 개발원조를 2008년까지 3배로 확대하고 연수생 초청 등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고 밝힘.

■ 신흥공여국들은 각자의 경험에 기반한 ODA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후발 개도국들에게 기존 선진공여국들보다 더욱 생생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바, 한국의 경우 인적자원개발(HRD)에 집중한 ODA 정책이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함.

2) 각국 발언내용

■ Van Ardenne-Van Der Hoven 네덜란드 외교부 개발협력장관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로 인해 ODA 분야에서도 중요한 player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OECD가 인도,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ODA분야에서 outreach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Sato 일본 외교부 경제협력국장은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ODA 제공이 기존 선진공여국의 ODA 정책과 달리 다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DAC는 신흥공여국과 ODA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
- Roeskau OECD 개발협력국(DCD) 국장은 신흥공여국들이 DAC 회원국들이 범한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non-DAC 공여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공여국들이 참여하는 비엔나회의와 4.6~7 러시아 정부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신흥공여국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Wisniewski 폴란드 외교부 정무차관은 폴란드의 ODA/GNI 비율이 2005년 0.09%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0.17%를 달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수치면에서는 기존 DAC 회원국보다 작지만 폴란드 고유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OD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 Akasaka OECD 사무차장과 Roeskau OECD 국장은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ODA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바, DAC의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Schieck USAID 처장대리는 신흥공여국들과 동류의식(likeminded)이 점증하고 있으며, 여러 현황과 ODA 내용을 검토할 때 한국의 경우 이미 선진공여국 그룹내에 포함(In the club)되어 있다고 평가함.
- Roeskau OECD 국장은 NGO 등 다양한 개발 원조분야 행위자들을 포함한 OECD 개발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개발에 관한 ECOSOC 포럼 등 개발관련 국제적인 포럼이 금년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나. 제1세션 : 원조규모 확대 (4.5)

1)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내용

- 제2차관은 우리정부가 2005년 11월 종합적인 ODA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ODA/GNI를 2009년까지 0.1% 및 2015년까지 0.25% 규모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의 ODA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선진공여국 및 다자개발기구 등과 공동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DAC 가입 추진을 조속한 시기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Manning DAC 의장은 우리나라와 ODA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2) 각국 발언내용

- Manning OECD/DAC 의장은 원조규모의 확대에 따라 공여국간 원조규모 확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를 6월중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함.
- Leipziger World Bank 부총재는 UNDP와 원

조규모 확대 공동 T/F를 구성하여 수원국 중에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발정책을 수행하는 모범케이스를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함.

- Schieck USAID 처장대리는 각국의 예산절차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원조규모를 밝히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함. 또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위해서 수원국의 performance를 고려하여 ODA를 제공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Millenium Challenge Account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함.
- Plant IMF 수석자문은 대규모 원조의 제공이 인플레이션 유발 등 수원국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 덴마크는 개발원조 자금이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어 aid orphan 국가 및 aid darling 국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이 미래 ODA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영국은 수원국의 거버넌스 악화에 대해서 공여국이 미래 제공될 원조의 감축, 원조제공을 basic need 충족을 위한 용도로 변경, 현재 원조 감축 등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 벨기에는 장기적으로 LDCs 국가의 MDGs 달성을 위해서는 ODA 수원국 리스트에서 중저소득국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수원국의 ODA 적격성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장관급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내년도 장관급 회담 개최방안을 지지함.

다. 제2세션 : 취약국가 이슈를 주제로 한 실무오찬 (4.5)

- 네덜란드는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외교, 국방, 개발 등 3자간 공동 협력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아프간 및 이라크 지원, 쓰나미 지원, UN Peace Building Commission 등이 외교 및 국방분야간 공동 지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DAC은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지원 이후 ODA 제공을 통해 취약국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라. 제3세션 : 인도주의적 지원 (4.5)

- 각국은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모범사례” (DCD/DAC(2006)13REV2)를 채택하고 쓰나미 사태 등 대형재난이 있을 경우 각국 원조기관, NGOs, 다자개발기구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UNOCHA는 UN 주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조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GHD 채택을 환영함. 특히 CERF에 대한 우리 정부의 5백만불 지원 등 각국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마. 제4세션 : 빈곤층을 위한 성장 (4.5)

1) 우리측 발언내용

■ 박석범 국제경제국장은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을 위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보조금 축소, 무역관련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이를 통해서 개도국의 무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개도국내에서 무역을 통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역량강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함.

2) 각국 발언내용

■ 각국은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위한 Policy Statement"(DCD/DAC(2006)12/ REV3)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공여국들의 지원을 약속함.

■ 빈곤층의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참여,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방안 등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됨.

Ⅱ. 제2차관은 표제회의 참석계기 Melkert UNDP 부총재와 4.4(화)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 ODA정책의 다각화를 위해 UNDP 등 다자개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UNDP 협력협정을 체결코자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4.24-25 ECOSOC 회의 참석차 방미계기 서명(또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계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이에 대해 UNDP 부총재는 우리의 공동협력 제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동 협정에 대한 문안검토를 조속 마무리하여 4.25 UNDP에서 협정의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 결과

2006.4.4(화)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는 개발과 환경간의 관계, 개발과 환경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국제환경협약 이행 지원문제 등을 토의하고, 공동행동계획, 기후변화 적응관련 선언문을 채택한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 OECD 30개 회원국의 장관, 차관, 원조기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 박석범 국제경제국장, 고재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및 외교부, 환경부 실무자가 참석

1. 주요 결과

■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OECD 회원국 정부, 개발협력기관과 환경기관, OECD 사무국이 추진해야 할 개발과 환경의 통합에 관한 "공동행동계획"(Framework for Common Action)을 채택함.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OECD 회원국에 개발협력시 기후변화 적응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OECD에서 관련 정책지침, 경제적 분석 등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선언문"을 채택함.

■ 금번 논의를 통해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이 필수적이며, 환경이 악화될 경우 사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개발과 환경관련 국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등 국제환경협약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됨.

2. 우리 대표 활동

■ 이규형 차관은 개발과 환경간의 통합에 관한 세션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토대로서의 환경(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해 정치적 리더쉽과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며, 특히 정치적 리더쉽은

입법, 재원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함.

- 또한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ESCAP 환경장관회의에서 금번 논의와 맥을 같이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음을 소개함.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예로 중국의 황사를 지적하면서, 황사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조림사업을 지원하였음을 소개함.

■ 고재영 실장은 국제환경협약 이행 지원문제 세션에서 개도국이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이행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교육, 훈련 등 능력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지적함.

- 또한 개도국에서 개발과 환경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쉽 형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를 통한 간접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함.

3. 관찰 및 평가

■ 경제 및 사회발전의 토대로서 환경이 중요하며,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측면을 주류화(mainstream) 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개발과 환경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됨.

- 기후변화에의 적응문제는 개발과 환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됨.

■ 개발과 환경이 상호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생태관광, 보건, 수자원, 위생, 청정생산, 산림, 재난대비, 농업 등이 지적된 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향후 ODA 지원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ECD 회원국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ODA 제공은 갈수록 커질 전망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경분야에 대한 ODA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이 분야의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는 GNP의 0.7% 원조제공 이외에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0.1% 추가제공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ODA의 40%가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함.

■ ODA만으로는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안(항공권 연대기금 등), 무역, 민간의 잠재력 활용방안 등이 지적됨. 우리나라도 ODA와 민간의 재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쉽 사업 개발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정부, NGO, 기업(스타벅스, 코카콜라)이 협력한 사례를 발표함.

4. 세션별 논의동향

가. 세션 1 : 빈곤감소, 환경, MDGs

■ 주로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건강한 환경이 MDG 달성과 개발 아젠다의 필

수적 요소임을 확인함

- 특히 환경문제의 악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 악화 간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개발과 환경이 연계되어 상호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이슈로서 수자원, 위생, 보건, 산림, 재난 대비, 농업, 지속가능한 관광 등이 제시됨

-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개발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됨

■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EIA), 전략환경평가(SEA), ODA, 민간투자 방법 등이 제시됨.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환경과 개발 이슈를 대처함에 있어 효과적인 빈곤감소전략의 중요한 부문을 이룸

■ 빈곤해소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 지역사회의 강화, 공공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됨

■ 우리 대표(이규형 차관)는 경제 및 사회발전의 토대로서 환경의 가치에 대해 강조함.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예로 중국의 황사를 지적함. 공공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함.

■ 각 대표들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환경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국가 및 지역 파트너쉽 구축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행동에 기인한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함

■ OECD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 제고를 위해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원조 제공국에 대한 모니터링, 우수 사례의 공유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나. 세션 2 : 개발과 환경의 국제 거버넌스

■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거버넌스와 관련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국제, 국내 수준에서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일관성이 요구됨

■ 국제 거버넌스의 장점과 단점 평가는 유엔 체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system-wide한 일관성을 촉진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었음

-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유엔이 규범적 권위가 있기는 하나 통일성이 결여되고 중복된 임무 부여로 비효율적이며 실제 운영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UNDP, 세계은행 국가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함

■ 이와 관련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환경기구(UNEO)가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었으나 EU 국가들과 미국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였음

■ OECD는 우수사례 전파, 국가적 및 부문별 환경통합, 일관성 유지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맡아야 함이 지적됨

다. 세션 3 :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위한 시너지 조성

■ OECD 회원국은 이미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위해 개도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협력이 개도국의 국가전략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었음

■ 네덜란드, 세계은행 등은 지구환경금융(GEF)이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국제환경협약간 일관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GEF에 대한 재원 보충(제4차)의 중요성을 역설함

■ 환경과 개발 기관간 공동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슈(사막화 방지, 청정에너지 확산 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함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 청정개발체제(CDM)가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 회원국간 의견을 같이 함

■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민간 분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민간 파트너쉽과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이 많은 회원국 참석자들로부터 강조됨

■ 구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미이행의 비용 평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대책과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에 관한 우수 사례 발굴 등과 관련하여 OECD의 역할 필요성이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됨

■ 우리 대표는(고재영 환경정책실장) 개도국이 주요 국제환경협약 이행수단인 재정과 기술지원, 환경영향평가, 청정개발체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교육, 능력배양 등을 지원하여야 함을 강조함

※ 실무회의를 거쳐 합의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선언문』을 채택함

라. 세션 4 : 종합

■ 스웨덴 대표는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를 3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차기 회의 2009년 개최) 또한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경제성 검토(EDRC) 경우처럼 Peer Review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네덜란드는 동 계획의 이행과정에 개도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도국의 개발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함

■ UNEP와 세계은행은 개도국과의 대화채널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심층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기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MDG+5 정상회의(2005) 결의문

2005 세계 정상회의 결과(WORLD SUMMIT OUTCOME)

고위급 본회의, 2005. 9. 14~16

세계 정상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지구적 과제(global challenges)들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을 합의함.

1. 개 발

- 2015년까지 천년개발계획(MDGs)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여국(donor countries)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모든 정부들의 강력하고 확실한 참여.
- 빈곤 퇴치를 위해 2010년까지 년간 500억불씩 추가 지원.
- 2006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들을 채택하기 위한 모든 개도국들의 참여.
- 말라리아 방지, 교육과 보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빠른 효과 구상'(quick impact initiatives)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 개발 프로젝트들(특히, 보건 부문)의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재정기금 (IFF)과 다른 구상들(initiatives)을 실행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을 포함하여,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혁신적인 자원(innovative sources)에 출자.
- 외채과다 채무빈국들 (HIPCs) 의 다자간 및 양자간 공적채무의 100% 면제와 무상원조를 통한 재정확보로 장기적인 '채무 지속발전성'(debt sustain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더 고안할 것. 외채과다 채무빈국에 대한 외채경감방안 (HIPC initiative)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적절한 곳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국가 중, 저소득 개도국들을 위한 상당한 부채탕감 (debt relief) 또는 구조조정을 고려.
- 무역 자유화와 '도하 작업계획'(Doha Work Programme) 중 개발 부분들의 이행을 위한 신속한 작업에 참여.

2. 테러리즘

■ 누구에 의해서든, 어디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지 모든 형태와 표현에 있어서의 테러리즘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분명한 비난. (최초로, 모든 정부에 의한 규탄)

■ 1년 내 '테러에 대항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추진. 핵 테러 협약(Nuclear Terrorism Convention) 이 빨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 모든 국가들이 다른 12개의 반테러 협약뿐 아니라, 이 협정에도 가입하고 이행하도록 장려.

■ 국제 사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테러 세력들을 더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동의.

3. 평화구축과 유지

■ 상설 펀드(standing fund)와 지원 사무소(support office)를 바탕으로, 전쟁 이후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평화기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평화구축 위원회' (Peacebuilding Commission)를 설립하기로 결정.

■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새롭게 새워진 '경찰 역량' (police capacity).

■ 알선과 중재를 위한 사무총장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보호책임

■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국제 책임에 대하여 모든 정부가 무조건적이고 분명하게 수락. 평화적 수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되거나 국내 당국이 평화적 수단의 사용에 있어서 분명하게 실패하고 있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위 목적을 위해 기꺼이 적절하고 결정적인 집단행동을 취할 것.

5.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

■ 행동계획(action plan)을 지원하고, 고등판무관의 예산을 두 배로 늘리며, UN 인권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들.

■ 내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협정.

■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재확인하며, 13개 국가들로부터 받은 32만 불의 새로운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환영.

■ 교육과 소유권에서의 불평등,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과 같은 만연한 성차별을 제거하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형사 면책을 없애는 데 참여.

■ 부패방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상회의동안 취해진 비준 행위.

6. 관리 개혁 (Management Reform)

■ 다른 기관들에까지 감시 기능을 확대시키고, 독립적인 '감시 고문위원회' (Oversight Advisory Committee)를 발전시킬 것을 요청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윤리문제를 다루는 기능' (Ethics Office)을 발전시키면서, 내부 감시 기능 (Internal Oversight Services)을 포함해서 유엔의 감시 역량을 폭넓게 강화.

■ 새로운 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모든 임무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오래된 것들은 폐기함으로써 유엔을 최신화(update) 함.

■ 예산, 재정과 인력자원에 대한 정책들과 규칙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여, 유엔 기구가 오늘날의 과제 (today's challenges)들을 위해 적절한 직원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격치 못한 직원들의 정리해고(one-time staff buy-out)와 현재의 필요(current needs)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

7. 환 경

■ 기후 변화에 의한 심각한 문제들의 인식과 '기후변화협약' (UN 기본 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한 행동에 참여. 군소도서 개도국들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같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원조 제공.

■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기 경보 체계 (worldwide early warning system)를 만들기 위한 협정.

8. 국제 보건

■ 예방(prevention), 간호(care), 치료(treatment), 지원(support)을 통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대한 대응규모를 확대. 그리고 국내, 양자간, 다자간 혹은 민간 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자원들을 동원.

■ 새로운 '국제 보건 법규'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들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감염성 질병과 싸우며, WHO, Global Outbreak Alert, Response Network를 지원.

9. 인도주의 지원

■ 재난 발생시 구호활동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 긴급 순환 기금 (Central Emergency Revolving Fund) 개선

■ 국내 유민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본 틀로서, '국내유민에 대한 기본 원칙들'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의 승인.

10. UN 헌장 개정

■ 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결정.

- UN 의 역사상 중요한 '자치 허용 원칙'을 확인하며, 신탁 통치 위원회(Trusteeship Council)를 해산.
- 헌장에서 "enemy states" 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 삭제.
- ※ www.un.org/summit2005 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음.

2005년 9월 13일 초안 문서

Ⅰ. 가치와 원칙

1. 우리, 각국 정상들은, 2005년 9월 14일~16일 뉴욕의 UN 본부에서 모였음.

2. 유엔에서의 우리의 신념과,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정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인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재차 다짐하며, 그것들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우리의 결정을 다시 확인함.

3. 우리는 21세기를 시작하며 채택했던 '유엔 밀레니엄선언' (UN Millennium Declaration)을 재확인함. 지방, 국내, 지역 및 지구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동원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유엔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밀레니엄 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 및 그 관련 분야의 주요 유엔 회의와 회담이 갖는 가치를 인정함.

4. 자유, 평화, 연대, 관용, 인권 존중, 자연 보호 및 우리의 공동 근본 가치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5. 우리는 헌장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좇아 전 세계 모든 곳에 정의와 지속적인 평화를 세울 것을 결정함.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과 그들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며,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헌장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힘의 사용과 위협 또는 평화적 수단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분쟁해결방식을 삼가할 것임. 또한, 식민지배와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의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기본권과 자유의 존중 및 인종, 성별, 언어,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평등권 존중, 경제, 사회, 문화 혹은 인도주의적인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헌장에 명시된 의무들을 선의로 이행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정함.

6. 우리는 유엔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하면서도 상호 연결된 과제들(challenges)에 더 적절하게 대처하고, 평화와 안보, 개발 및 인권의 영역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국제 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다자간 체계' (multilateral

system)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또한, 유엔 결의와 결정의 이행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

7.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계적(global)이며 상호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음. 어떠한 국가도 전적으로 혼자 설 수 없음. 초국적인 위협(transnational treats)에 맞서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성패는 국제 법에 따른 효과적인 협력(effective cooperation)에 달려있음.

8. 현재의 개발수준과 상황에서의 주요 과제들과 위협들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이루어 내는 것이 긴급함. 결의(resolution)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그러한 과제와 위협들의 근본원인에 대처하며, 그 합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참여함.

9.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은 유엔 체계의 기둥이며 집단안보와 안녕을 위한 기반. 개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것임.

10. 개발은 그 자체로 핵심 목적이며,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엔 활동의 프레임워크 형성에 핵심요소임.

11. 우리는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법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과 기아의 퇴치에 필수적임을 인정함.

12. 성 평등, 모든 인권, 자유의 보장과 촉진이 개발, 평화, 안보를 진보시키는데 필수임을 재확인함. 우리는 어린이들의 필요를 최대한 고려하여, 미래 세대에게 꼭 맞는 세계(a world fit for future generation)를 만들기로 약속함.

13. 우리는 인권 제반의 보편성, 개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계성을 재확인함.

14. 세계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문화(cultures)과 문명(civilizations)이 인류번영에 기여함을 인정.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른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 관용, 존중, 대화 및 협력을 장려하며, 어느 곳에서든 인류 복지, 자유와 진보를 촉진시킬 것을 약속함.

15. 우리는 유엔 체계(UN system)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신뢰성과 책임성을 신장시킬 것을 약속함.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담된 책임이자 중요한 관심사임.

16. 그러므로 우리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세계를 만들 것을 결의하며, 아래의 네

가지 영역별 문제들에 대한 다자간 해결책(multilateral solutions)을 제시하기 위하여,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 및 다른 주요 유엔 회의 및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취할 것임.

■ 개발 ■ 평화와 집단안보
■ 인권과 법치 ■ 유엔의 강화

Ⅱ. 개 발

17.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합의된 천년개발계획(MDGs)을 포함하여 유엔 회의와 회담에서 동의한 개발 목표와 목적들의 시기적적하고 온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결정을 강하게 재 반복함. 그 목표와 목적들은 빈곤 퇴치를 향한 노력들에 활력을 넣어주었음.

18. 전 세계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괄적인 개발 비전(development vision)을 형성하고, 상호 동의 하에 목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경제, 사회 및 관련 분야에서의 주요 유엔 회의와 회담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19. 빈곤을 퇴치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세계 번영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함. 우리는 최근 몇 나라의 빈곤 감소를 보고 힘을 얻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킬 것을 결정함. 한편, 일부 지역에서 빈곤 퇴치 및 다른 개발 목표의 실현이 느리고 그 진전이 균일치 않다는 것이 염려됨. 우리는 개도국이 세계화(globalization)과정에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도국의 생산적인 분야들(productive sectors)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을 약속함. 더 많은 국제 지원이 뒷받침되어, 더 야심찬 국내 개발 전략과 노력을 포함해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신속한 행동이 필요함.

개발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쉽 (Global partnership)

20.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몬테레이 협의(Monterrey Consensus), 요하네스버스 실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에서, 개발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쉽에 대한 우리의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함.

21. 더 나아가, 건전한 정책, 모든 단계에서의 굿 거버넌스와 법치, 국내 자원의 동원, 국제 유동자원의 유치(attracting international flows),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촉진, 개발과 지속가능한 채권금융(debt financing) 및 대외 부채 삭감을 위한 국제 금

융협력과 기술협력의 증가, 국제통화, 국제 금융 및 국제 통상 시스템의 일관성 강화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함.

22. 각국은 그 스스로의 개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에 있어서 국내 정책과 개발 전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또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개도국의 개발 기회를 확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적인 국제 프로그램들, 정책들과 조치들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함. 이는 국내 조건을 고려하고 국내 주권, 전략과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함. 이 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함.

■ MDGs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 포괄적인 국가 개발 전략(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을 채택하고 이행함.

■ 거시 경제의 안정화와 장기 성장을 달성, 유지하고 공공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개발 원조(development assistance)가 국가 능력배양 (building national capacity)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보장함.

■ 개발 원조 증가,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국제 무역 촉진, 상호 동의한 조건하의 기술이전, 투자흐름의 증액과 더 폭넓은 부채 삭감을 통해, '국가 개발 정책과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함. 충분한 양질의 원조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며, MDGs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개도국들을 지원함.

■ 국제 사회에서 각국 경제간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국제 경제 관계에 있어서 법치 기반 레짐의 출현은, 국가 경제정책이 – 특히, 무역, 투자, 산업 개발의 영역에 있어서 – 종종 국제적인 원칙, 의무와 국제 시장을 고려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각국 정부는 국제 규범과 의무를 받아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럼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제약(국내 정책형성과정 중 있을 수 있는 제약) 사이에 존재하는 교환조건(tradeoff)을 고려해야 함. 특히, 개도국들은 개발목적과 목표를 유념하면서, 국내 정책 형성과 국제 원칙, 의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의 촉진 뿐 아니라, 국가적인 개발 노력에 있어서 NGO,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강화시킴.

■ 유엔 기금들, 프로그램들, 특별기관들은 공동국별 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와 유엔 개발 원조 구성 과정(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Process)을 통하여 개도국 지원을 강화함.

■ 개발과정에서 천연 자원을 보호함.

개발을 위한 금융

23. 우리는 몬테레이 협의를 재확약함. 개발을 위해 금융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과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내 그러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MDGs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의 성취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에 있어서 중추적임. 이러한 관점에서,

- 우리는, ODA의 실질적 증가를 위한 최근 약정에 의해 고무 됨. OECD 는 모든 개도국에 대한 ODA가 2010년까지 년간 500억불까지 증가될 것으로 평가하며, 그러한 원조의 실질적 증가는 MDGs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 성을 위해 필수적임.
- 2010년 내에 LDCs에 GNP의 0.15% ~ 0.20%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르셀 행동 프로그램(Brussels Programme of Action) 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ODA로 2010년까지 적어도 GNP의 0.5%, 2015년까지 GNP의 0.7%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일정표(timetables)를 환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을 약속한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권고함.
- 더 나아가,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포함해서 원조의 질과 그 효과를 높이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환영함. 각국의 전략들을 고려한 원조의 일치, 제도적인 능력배양, 거래비용 감소, 관료적 절차 제거를 포함하여 확실한 모니터링과 분명한 최종 기한 설정과 함께 원조효과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며, 언타이드 원조(untying aid)에 대한 진전을 만들고, 수혜국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과 재정관리를 강화시키며, 개발결과들에 대한 집중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이며 시기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결의함.
- 발전되고 혁신적인 자원을 찾는 일이 개도국에게 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님. 그러한 관점에서, 재정 마련을 위한 전통적인 자원들을 증가, 보강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추가적인 재원들을 규정할 목적을 가진 '기아와 빈곤에 대항한 행동 (Action against Hunger and Poverty)' 과 같은 국제적인 대화와 노력들, 공헌들에 주목함. 일부 국가들은 국제재정기금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을 시작할 것임. 어떤 국가들은 면역자금 마련을 위한 IFF를 시작해왔음. 어떤 국가들은 직접적인 재정모금 혹은 IFF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특히, 보건 분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마련할 예정임.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음.
- 민간 부문이 새로운 투자와 고용, 개발 재정모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적격을 갖춘 다자간 및 국제 포럼들을 통해 저소득 개도국들이 무엇보다도 재정적, 전문적,

기술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개발 필요에 대처할 것을 결의함.

- 적격한 다자간 포럼 및 국제포럼들과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중간소득 개도국(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ies)이 그들의 재정적, 전문적, 기술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위해, 그들의 개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함.
-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된 세계 연대 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운용하며, 총회 회원국들이 이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장려함.
- 특별히 소액금융과 소액대부를 포함해서 가난한 자들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국내 자원 동원

24. 성장과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리의 공동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 생산적인 투자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인적 능력들을 증가시키며, 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줄이면서 기금의 불법 거래를 억제하고, 합법적인 국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공적 및 사적 국내 저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임.

- 모든 단계에서 굿 거버넌스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려는 개도국의 모든 정책과 투자 노력을 지원함.
- 굿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건전한 경제 정책,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건전한 민주주의 체계와 발전된 사회기반시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한 기본임. 자유, 평화와 안보, 국내 안정,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의 존중, 법치, 양성 평등, 시장 경제 기반 정책과 정의와 민주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 역시 필수적이며 서로를 보강하는 것들임.
- 모든 단계에서 부정, 부패와의 싸움을 우선순위에 둘 것. 이런 관점에서 신뢰성, 투명한 공공 관리, 유엔 부패방지 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과 양립하여 부정부패를 통해 획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노력을 포함한 공동책임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의 채택 등 모든 국내외 차원의 행동들을 환영함. 또한, 유엔 부패방지 협약에 사인, 비준, 이행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를 권고함.
- 경제 개발과 기아, 빈곤의 퇴치를 가속화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파트너쉽과 혁신을 위한 적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적, 공/사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행동들을 통해 민간 역량과 재원들을 개도국내 민간부문을 촉진시키는데 사용.
- 자본도피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기금의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지원함.

투 자

25. 우리는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들(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내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투자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지원할 것을 결의함.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함.

- 소유권의 존중, 법치, 적절한 정책, 규제와 더불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들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함.
- 보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주택문제와 교육, 공공재와 사회내 취약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s)에 지속가능하며 적절한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 공적/사적 부문과 적절한 공여자(donor)가 있는 분야를 모두 참여시키는 전략으로 각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사회 간접자본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개발시킬 것.
- 위험 평가 메커니즘 (risk rating mechanisms)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 혹은 은행기관을 유치함. 사적 부문에서 만들어진 국가 위험 평가(sovereign risk assessment)는 최대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에 의한 엄격하고 투명한 척도를 사용해야 함.
-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으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민간 금융 자본의 이동(private financial flows)이 필요함을 강조. 특히, 아프리카, LDCs,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내륙 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들로의 금융 자본 흐름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중요. 단기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법들은 중요하며 고려되어야 함.

채 무

26. 채무를 통한 자금마련과 부채 탕감이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래로, 개도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대단히 중요함.

- 최근 HIPCs 국가들이 IMF, IDAAD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African Development Fund)에 진 많은 채무를 100% 탕감해 주고,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G8 의 제안을 환영함.
- 채무의 지속발전성(debt sustainability)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강조. 부채 탕감이,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증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MDGs를 비롯한 국가 개발 목

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채무의 지속발전성' 의 중요성을 강조.

■ 더 나아가, 증여 중심의 자금마련 (grant-based financing)과, HIPCs의 양자간/다자간 채무의 100% 탕감을 통해 장기적인 '채무의 지속발전성' 을 강화시킬 목적을 가진 추가적인 방법들과 이니셔티브들이 고안될 필요성 강조. 상황에 따라 적절하며 상당한 채무 탕감 및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중,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구조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나라들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성 강조. 그러한 메커니즘은 적절한 경우에, '지속가능한 개발 스왑' (sustainable development swaps) 또는 '다자채권자부채 스왑 조정' (multicreditor debt swap arrangement)을 위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들에,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의 지속발전성' 을 위한 기본 틀을 개발시키기 위한 IMF와 World Bank 의 더 심도 깊은 노력들이 더해져야 함. 이것은 다자간 금융기관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ODA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무 역

27. 의미 있는 무역 자유화 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원칙 중심적이며 개방되고 무차별적이며 공평한 다자간 무역 체계는 개발의 전 단계마다 각국에 이익을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약하며, 무역이 경제성장, 고용촉진, 모든 이들을 위한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을 재확인함.

28. 우리는 특히, LDCs와 같은 개도국들이 그들의 경제 개발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무역 체계(world trading system)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개도국들의 수출을 위해 한층 강화되고 예측 가능한 시장접근성을 보장.

29. 우리는 부르셀 행동 프로그램(Brussels Programme of Action)을 따라, 개도국 시장뿐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 모든 LDCs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와 무할당 시장접근(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공급자측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30. 우리는 이미 제공된 상당한 지원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생산능력과 무역 능력 구축을 위해 늘어난 원조를 유지하며 촉진시키고,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진전된 단계를 취할 것을 약속함.

31. 우리는 규칙기반의(rules-based) '지구적 무역 체계' 의 전 세계적 통합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기준을 따라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economies in transition)들의 WTO 가입을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해 일할 것임.

32. 우리는 '도하 작업프로그램' (Doha work programme) 의 개발 부문이 실행되도록 신속하게 일할 것임.

물 품

33. 취약하고 변덕스러운 생필품의 가격 효과에 대처하고, 상품 부문 경쟁력을 재구성하고 다양화시키며 강화시키려는 생필품 의존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강조.

빠른 효과가 있는 이니셔티브 (quick impact initiative)

34.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들에서의 즉각적인 진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장기 국가개발 전략들에 부합되게 적절한 국제 지원과 함께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들을 신속히 만들어 이행할 것을 결의함. 이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약속함.

국제 경제의 결정방식과 제도적 문제점

35. 우리는 국제 경제의 결정과정과 규범설정에 있어서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책임을 재확인함. 이를 위해 국제 금융구조 개혁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브레튼 우드 체계(Bretton Woods Institutions) 내에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확대시키는 일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짐.

36. 금융, 재정, 무역 체계내의 거버넌스 (governance)와 형평성,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재확인함. 또한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원칙 중심적이며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계와 금융체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재 확약함.

37. 또한 개발을 뒷받침할 국제 금융구조의 중요 요소로서, 국가 개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전한 국내 금융부문' 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무 강조.

38. 더 나아가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과 국제사회에서 협의된 개발 목표들과 행동들의 일관성과 조정/이행에 있어서, 유엔이 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다자간

금융 무역과 개발 기관들과 밀접히 협력하여 유엔 시스템내의 coordination을 강화할 것을 결의함.

39.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바탕임. 역동적이면서 적법한 국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도국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금융, 무역, 기술과 투자 패턴에 대처하며 국제 경제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거시경제 개혁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 개도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을 포함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방법들을 취해야 함.

남-남 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40. 우리는 남-남 협력의 큰 잠재력과 업적들을 인정하며,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최상의 실무경험과 진보된 기술협력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남북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촉진을 장려함. 이러한 맥락에서, 신 아시아-아프리카 전략적 협력(New Asian-African Strategic Partnership) 과 다른 지역적 협력 메커니즘의 설립을 비롯해서 남-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Second South Summit에서 채택하고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과 도하 행동계획(Doha Plan for Action) 에 포함한 '남반부 발전도상국 지도자들' (the leaders of the South)의 최근 결정에 주목함. 그리고 IFIs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개도국들의 그 노력-특히, 3자간 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지원하도록 장려함. 또한, 남-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GSTP 3차 협상의 시작에 주목함.

41. 남-남 협력을 위한 유엔 고위급 위원회(the High Level Committee of the UN on South- South cooperation)의 활동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개발 필요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DP 내 남-남 협력을 위한 특별 기관(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을 지원하도록 권고함.

42. 개도국들내 개발활동에 대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부 기금(the South Fund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의 잠재적 기여 뿐 아니라, 개도국들에 의해 시작된 OPEC 기금과 같은 구조들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함.

교 육

43.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 (Millennium Declaration)에서 구상한데로, 빈곤 퇴치와 다른 개발 목표들의 성취 - 특히, 문맹퇴치를

위한 기본교육과 훈련 – 에 있어서 공식적/비공식적 모든 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함. 직업 교육과 훈련 – 특히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 인적 자원과 사회기반시설 역량의 형성, 빈곤층에게 권한 위임(empowerment)뿐 아니라 중,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힘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00년 세계 교육 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 채택된 다카르 행동 프레임워크(Dakar Framework for Action)를 재확약하며, 2015년까지 초등교육 보편화를 위한 MDG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for All programmes)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빈곤퇴치를 위한 – 특히, 극빈퇴치– UNESCO 전략의 중요성을 인정함.

44. 우리는 성차별과 성비 불균형을 없애고 여성의 교육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무료 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하려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재확약함. 또한, 국가 주도의 '국가교육계획' 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의 빠른 진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s)를 통해 모든 종류의 자원을 확대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 (Education for All Initiatives)를 수행하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함.

45. 우리는 평화와 인간 개발을 위한 교육을 촉진시킬 것을 약속함.

농촌과 농업 개발

46. 국가 개발과 그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식량 안보와 농촌/농업 개발은 적절하고 긴급하게 대처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그 토착/지역사회들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 빈곤, 기아, 특히 어린이 영양실조의 퇴치가 MDGs의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 농촌/농업개발은 국내외 개발 정책들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며, 식량안보와 농촌/농업개발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우리는 개도국내 농업개발과 농업부문에서의 무역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을 증가시킬 것을 약속함. 생필품 개발 프로젝트, 특히 시장 기반 프로젝트들의 지원과 Second Account of the Common Fund for Commodities 하에서 준비를 위한 지원을 장려함.

고 용

47. 우리는 공정한 세계화(fair globalization) 과정을 강력하게 지지함.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및 완전고용의 목표를 위해,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일을 만들 것을 결의함. 이는 MDGs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일부분으로써 빈곤 감소 전략을 포

함한 국가 개발 전략들과 적절한 국내외 정책의 핵심 목적임. 이러한 방안들은 ILO 협약 182조에서 규정된 최악의 노동형태인 아동 노동자(Child labour)들과 강제 노동자(forced labour)를 없애는 일을 포함해야 함. 또한 우리는 일터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의 완전 존중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함.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 관리와 보호

48. Agenda 21과 요하네스버그 실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함. 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들과 방법들을 취하고, 리오 원칙(Rio principles)을 고려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 노력들은 또한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 (경제 개발, 사회 개발, 환경 개발) 의 통합을 촉진할 것임. 빈곤 퇴치,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한 패턴 완화, 그리고 사회 경제 개발의 기반인 천연자원의 관리와 보호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조건이자 포괄적인 목표임.

49.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에서 요구한 대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이끌어 가는 선진국들과 그 과정의 수혜국과 함께 그 패턴을 촉진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재순환 경제 (recycling economy)를 촉진하려고 노력하는 개도국들을 지원.

50. 우리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무공해 에너지를 만들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해야 하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함.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긴급성과 결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임.

51. 기후 변화는 지구의 모든 부분에 걸쳐 영향을 끼칠 잠재력을 가진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과제임.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과 쿄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포함한 다른 국제 조약들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의무들과 위임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조함. UNFCCC 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 틀임.

52. 기후 체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 중 오존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UNFCCC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재 확약함.

53.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 UNFCCC 원칙들에 부합하는 –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제 대응에 가능한 폭넓은 협력과 참여가 요청됨. 이러한 원칙들을 따라, 기후변화에 대처

하기 위한 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지구적 대화에 임할 것을 약속함. 2005년 11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 11회 UNFCCC 당국자 회의(the Elev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의 중요성을 강조.

54. 우리는 양자간/지역간/다자간 구상을 포함해서, 무공해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협력관계들을 인정함.

55. 특별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 국제협력을 통해 더 심도깊은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함.

- 기술혁신, 깨끗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환경보호를 촉진하며, 정책, 법 규제, 재정마련을 위한 기본 틀을 개선하며, 무공해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킴.
- JPOI에서 요청한 대로, 개도국의 에너지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개도국의 민간투자, 기술이전, 역량 구축을 강화함.
-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소들로 인한 기후변화 효과에 적응하는 것은 각국 특히, UNFCCC 4.8조에서 언급된 가장 취약한 나라들의 우선적 과제이므로, 개도국들이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안에 이 적응목표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대처하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특히 군소도서개도국, LDCs, 아프리카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원조함.

56.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유엔 10년 교육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International Decade of Water for Life를 촉진시킴.
- 특히, 모든 차원에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자원 동원, 기술이전과 역량구축을 통하여 사막화/땅의 황폐화의 원인에 대처하고, 황폐화의 결과로 인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극심한 가뭄과 사막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의 사막화(desertification)를 막기 위한 유엔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며 강화함.
-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관여한 국가들은 그 협약과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해야 함.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의 감소비율'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다른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련된 협약들과 요하네스버그 의무사항들의 이행을 지원해야 함. 참여국들은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과 유전자 활용 혜택의 균등하고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

는 국제 레짐을 염두하면서,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기본틀 내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함. 모든 나라들이 그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여 201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의 감소비율' 을 상당히 줄이며, '유전학 자원들과 혜택 공유 (benefit-sharing)에 대한 접근' 에 관한 국제 레짐의 고안과 협상에 관하여 현재진행중인 노력을 계속해야 함.

- 각 토착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아와 빈곤에 대항한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
- 국내 입법을 통하여, '생물학적 다양성' 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적절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인 제도, 관행을 보전,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제도, 관행을 보유한 자들의 승인과 개입으로 더 폭넓은 참여를 촉진함. 그 과정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균등하게 공유할 것을 장려함.
- 최근 설립된 '인도양 쓰나미 경보와 이동 시스템'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and Migration System)과 같이 기존의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역량위에 세워진 '지역 네트워크' 와 함께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기 경보 체계를 세우기 위해 힘씀.
- 자연재해 감소에 관한 국제회의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에서 채택된, 휴고선언 (Hyogo Declaration)과 2005 ~ 2015년 휴고 행동 프레임워크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 특히, 재난 복구와 재건설 과정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복구 단계에서 자연 재해에 취약한 국가들을 원조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완전 이행할 것.
- 국가개발전략의 일부분으로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밀레니엄 선언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원조함.
-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빈곤퇴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더 깨끗하고 알맞은 가격의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보전 기술들의 개발과 보급, 그러한 기술들의 이전 – 특히, 개도국에 무료 혹은 특혜조건과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상호동의 하 기술 이전– 을 가속화함.
- 산림부문과 다른 부문들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숲과 나무들이 MDGs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협의된 개발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한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유익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모든 종류의 숲의 보전/지속적 관리/개발을 강화할 것. 우리는 제6회 산림에 관한 유

엔 포럼(the 6th Session of the UN Forum on Forests)의 논의 내용들을 기대함.

- Agenda 21과 JPoI을 따라, 국제 화학물 관리에 대한 자발적이며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이행함으로써, 투명하며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절차를 이용. 2020년까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역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그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동안 화학적으로 유해한 쓰레기들을 올바르게 관리함. 적절한 곳에 기술원조와 재정원조를 공급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유해한 쓰레기들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개도국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바다/대양과 관련된 문제들을 통합된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향상시키며, 바다/대양의 통합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함.
- 적당한 가격의 주택과 관련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식하고, 빈민가 방지와 빈민가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며,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빈민가 인구들의 생활에 상당한 개선을 이룰 것. UN Human Settlements Foundation 과 빈민가 개선 기금(Slum Upgrading Facility)을 지원하도록 장려함.
-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GEF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세 번째 보충으로부터 나온 모든 공약들을 따라 올해 성공적인 보충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 군소도서개도국을 통한 방사능 물질들의 이동, 운반을 중단하는 것은 그 개도국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임을 주목. 국제 법을 따라 항해의 자유권을 인정. 각국은 특히 IAEA 와 IMO 의 보호 하에 상호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방사능물질의 안전한 해양운반과 관계된 대화와 협의를 강화시켜야 함. 그러한 물질의 운반에 관계하는 나라들은,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을 비롯해서 그 밖에 다른 국가들과 계속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대화를 촉진할 것. 적절한 포럼들을 통하여 그러한 물질 운반과 관계된 안전, 정보공개, 책임, 안보와 보상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규제 레짐(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의 더 심도 깊은 개발과 강화가 필요함.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기타 보건 이슈

57.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다른 감염성 질병들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으며, 개발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과제임. 이러한 질병들과 다른 보건 이슈들은 지속적인 국제 대응이 요구된다는 인식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나오는 재정기부와 상당한 노력들에 감사를 표함.

■ 기존의 메커니즘과 파트너쉽을 통하여, 2015년까지 보건과 관련된 MDGs를 성취하기 위해 충분한 보건 인력들, 사회기반 시설, 관리체계들과 물자들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economies in transition)들의 보건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가함.

■ HIV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함.

■ 예방/간호/치료/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더 강력한 리더십과 UN의 에이즈 관련 프로그램 뿐 아니라 결핵, 말라리아퇴치를 위한 국내/양자간/다자간 기금의 조성으로 '에이즈에 관한 회원국들의 의무선언'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에 의해 선포된 모든 위임사항을 전부 이행함.

■ 2010년까지 자원 증액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나라에게 보편적인 치료가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약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내 차별을 철폐하고, HIV/ADIS와 다른 질병들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 (특히, 고아와 병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HIV 예방/치료/관리의 총체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수행함.

■ WHO의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에 대한 지원과 함께, 2005년 5월 제 58회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한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의 제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 다자기관들과 국제 파트너들이 하나의 합의된 'HIV/AIDS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협력자들의 일을 조율하는데 바탕이 됨)와 합의된 수원 국 차원의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하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Three Ones"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함. '국제 공여자들과 다자기관들 사이의 에이즈 조정활동 (AIDS Coordination) 개선에 관한 국제 전문가팀'의 중요한 권고들을 받아드리며 지지함.

■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설정된 대로, MDGs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산모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을 줄이며, 산모 보건과 양성 평등을 개선시키며, 에이즈와 싸우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에 이 목표를 통합시키면서 2015년까지 누구나 출산관련 보건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운 백신, 살균제, 진료 도구, 조류독감과 사스와 같은 주요 유행성 질병과 열대병의 치료법 개발뿐 아니라 장기 재정마련, 학문과 산업부문 연구를 위해 적절한 공-사 협력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재정모금 체계를 개선하며, 적절한 곳에선 구매 의무(Advance Purchase Commitments)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장 인센티브를 추진함.

■ 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의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활동 규모 증가를 장려함.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58. 우리는 여성의 진보가 모두를 위한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함. 우리는 베이징 선언과 그 행동을 위한 기본방침, 그리고 제 23회 총회의 특별회의 결과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MDGs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성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을 위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함.

■ 빠른 시일 내에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없애며, 2015년까지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성차별을 철폐함.

■ 여성의 재산소유와 상속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함.

■ 출산과 관련된 보건 서비스에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노동시장, 지속적인 고용과 적절한 노동자 보호에 있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토지, 대출, 기술을 포함하여 생산적인 자원과 자산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함.

■ 국제 인도주의 법과 국제 인권법 하에서 각국의 의무사항을 좇아, 소녀들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행사시 형사면책이 되는 규정을 없애고,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보호를 강화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없앰.

■ 여성의 정치 참여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하여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체계에 여성대표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킴.

59. 성 평등을 위한 수단으로 여성의 차별교육 철폐가 중요함. 이를 목적으로, 우리는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의 고안하고,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에서 성 차별적 교육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더 나아가 성 평등과 관련된 유엔의 활동 역량을 강화할 것.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

60. ICT를 포함해서 과학과 기술이 개발목표들의 성취를 위해 핵심적이며, 국제적 지원이 개도국들의 기술진보와 생산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함.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보건, 농업,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 관리, 에너지, 산림, 기후변화 효과의 전 영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사 부문간 자발적 협력을 포함해서 자발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함.

■ 적절한 수준으로, 개도국들에 친환경적 기술과 그에 상응하는 노하우의 이전과 확산을 촉진하

며 그것에의 접근이 용의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구축에 있어서 일차적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개도국들의 모든 노력을 지원함.
- 태양열, 바람의 힘, 지열과 같은 대체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더 많은 노력들을 촉진하며 지원함.
- 국내/국제 차원에서 – 지식을 확대하고 상호 합의한 조건 위에 기술을 이전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 공적/사적 투자 및 국내/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실행함.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단들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가를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이용하려는 개도국들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들을 지원함.
- 디지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평등한 정보 사회를 구축하고, 개발을 위해 정보와 통신 기술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함. "지식사회에 관한 제네바 세계 정상 회담"(Geneva phase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의 결과를 이행함으로써 그리고 2005년 11월 튀니스에서 열릴 그 정상회담의 두 번째 단계의 성공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함.
-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연대 기금(Digital Solidarity Fund)의 설립을 환영하며, 그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을 장려함.

이민과 개발

61. 국제 이민과 개발사이의 연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 태생지(countries of origin), 정착국가(destination), 및 이동(transit)과정 중에 머무는 나라에 미치는 – 문제들과 기회들을 다룰 필요 있음. 국제적인 인구이동이 국제사회에 피해뿐 아니라 이익도 가져옴. 각 국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국제 이민과 개발에 관하여 다각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할, '2006년 인구이동과 개발에 관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 을 기대함.

62. 우리는 이민자,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련의 방법들을 취할 것을 결의함.

63. 우리는 이민자들이 개도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과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장려함.

특별한 필요에 처한 국가들

64. LDCs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브레튼 우드 체계를 포함한 유엔 체계하의 모든 관계 기관들과 각

국들이 (2001 ~ 2010) 10년간 LDCs를 위한 브루셀 행동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절한 시기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행할 것을 권고함.

65. 우리는 내륙 개도국들이 직면한 모든 필요들과 도전과제들을 인식하며,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과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제 8 차 총회'에서 채택된 '상파울로 협의'의 시기적적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통하여, 그러한 나라들의 필요에 재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함. 유엔 지역별 위원회와 기관들이,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의 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비용 방법론"(time-cost methodology)을 만들 것을 권고함. 또한 LLDCs 의 경제를 다자간 무역 체계 내에 통합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LLDCs의 특별한 염려와 어려움들을 인식함. 이러한 관점에서, 내륙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을 위한 '이동 이전 협력'(transit transport cooperation)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본구조 하에 그와 같은 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처하려고 하는 알마티 각료 선언(Almaty Ministerial Declaration)과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Almaty Programme of Action)의 온전하고 시기적절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

66. 군소도서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와 취약부분들을 인식하며, 그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모리셔스 전략'(Mauritius Strategy),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arbados Programme of Action)과 유엔총회 제 22회 특별 총회 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그 국가들의 필요와 취약부분들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

67. 또한, 분쟁에서 벗어난 신흥국들과 자연재난으로부터 복구되고 있는 나라들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지원이 필요함.

아프리카의 특별한 필요 충족

68.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의무를 잘 이행함으로 상당한 진보를 이룩한 것을 환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인권, 굿 거버넌스, 건전한 경제 관리, 성 평등 증진을 위해, NEPAD 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와 함께, 진보되고 강화된 제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통치구조와 개발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격려함. 또한, 2010년까지 년간 250억불 씩 아프리카 ODA 증가 약속과 함께 아프리카 개발 노력에 지원하겠다는 G8 국가들과 EU의 최근 결

정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협력자들에 의해 취해진 최근 결정을 환영함. 우리는 2015년까지 MDGs를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유일한 대륙인 아프리카의 실질적 필요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확약함.

- 대내외적인 재정 자원들을 동원하고, 다자간 금융기관에 의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의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에 일관성있게 지원함으로 NEPAD 와 협력을 강화함.
-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뿐 아니라 양질의 완전 무료 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아프리카의 약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프리카의 공적, 사적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기본 틀로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와 함께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World Bank,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사회기반시설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함.
- HIPCs를 위한 G8 국가들의 최근 제안에 따른 다자간 채무의 100% 탕감을 포함하여, 대외적 채무 문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촉진함. 경우에 따라 적절한 경우 HIPCs 국가가 아니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채무 탕감을 포함해서 상당한 채무 면제를 추진함.
- 목표가 확실한 무역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국제 무역 체계로 완전히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함.
- 생필품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생필품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생필품 가격 위험 관리(price-risk management)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와 더불어 시장 기반(market-based) 구조를 구축하기로 결정함.
- 농업생산성을 높이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들을 – 아프리카 녹생혁명의 부분으로서 NEPAD의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 개발(NEPAD's 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에서 제시한대로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완함.
- 유엔의 보조 하에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려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과 지역적 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격려하며 지원함. 이러한 맥락에서 G8 국가들의 아프리카 평화 유지를 위한 지원 제안을 환영함.
-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피해를 입지 않는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원조를 제공함. 201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에이즈 치료에의 보편적인 접근이 최대한 가능해지도록 원조를 제공함. 제약회사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로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포함한 약품들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보건 체계들을 강화함으로써 말라리아, 결핵과 다른 감염성 질병과 싸우기 위해 가능한 증여의 형태로 양자/다자 원조를 증가시킬 것.

Ⅲ. 평화와 집단 안보

69. 우리는 긴급하고, 집단적이며 더 결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다양한 범주의 위협에 처해있음을 인식.

70. 헌장을 따라,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엔의 모든 기구들이 그들의 위임사항을 따라 서로 협력할 것이 요구됨.

71. 우리는 상호의존적이며 지구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오늘날의 많은 위협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국제법과 헌장을 따라 지구적/지역적/국내적 차원에서 씨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함.

72. 그러므로 많은 위협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개발, 평화, 안보와 인권 문제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어떤 나라도 전적으로 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들은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단 안보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하에 안보에 관한 논의의 일치점을 찾아야 함.

태평양 분쟁 해결

73. 유엔 헌장 6장의 규정을 좇아 평화적인 수단으로 혹은 필요한 곳에는 국제 사법재판소의 개입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각 국의 의무를 강조함.

74.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좇아 무력 분쟁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력분쟁 방지를 위한 유엔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안보와 개발 문제들에 대처하려는 수단으로 무력 분쟁 방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의무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함.

75. 더 나아가, 무력분쟁의 방지와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중요하며, 안전 보장 이사회, 총회, 경제 사회 이사회, 사무총장이 각각 헌장의 위임사항을 좇아 서로의 활동에 있어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

76. 분쟁의 중재를 비롯해서 사무총장의 중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이 분야에서 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임.

헌장에 입각한 무력사용

77.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의 무력 사용과 위협을 삼갈 것을 거듭 강조

함. 유엔을 이끌고 있는 목적과 원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간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취하며, 이를 위해 부당한 침략행위와 평화 위협의 방지/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집단 체제를 결성하며, 국제법과 정의, 국제 분쟁의 조정과 해결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임을 재확인함.

78. 다자간 절차(multilateral process)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국제적인 문제들과 도전과제들에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함. 더 나아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강조함.

79. 또한, 헌장의 조항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재확인함. 더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강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재확인함.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좇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

80.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또한 헌장의 관련 조항을 따라, 유엔 총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계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테러리즘

81.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한,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행해지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테러를 배척함.

82. 우리는 사무총장이 '반-테러 전략' 요소들을 규명한 것을 환영함. 이러한 요소들은 반테러에 대한 국내/지역/국제적 차원에서의 포괄적이며 조정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이행하려는 관점에서 지체 없이 총회를 통해 더욱 논의 발전되어야 함. 또한 그 요소들은 테러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조건들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문명(civilizations) 사이의 대화, 포용,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상들을 권고함.

83. 제 60회 유엔총회 동안 국제 테러에 관한 포괄적인 조약을 만들고자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

84. 모든 종류의 테러와 시위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유엔 후원 하에 고위급 회담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고안해야 함.

85. 테러와 싸우기 위한 국제 협력은, - 유엔헌

장, 관련 국제 협약들과 의정서들을 포함한 – 국제 법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함. 각 국은 테러와 싸우기 위해 취한 방법들이 국제법상, – 특히, 난민법과 국제 인도주의 법 – 부합될 것을 보장해야 함.

86. 모든 국가들은 테러리스트 활동의 지원, 조직, 격려, 훈련의 제공 등을 삼갈 것이며, 자국 영토가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87. 테러와 싸우는데 있어서 유엔이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양자간 혹은 지역적 협력의 핵심적인 공헌– 특히, 법 집행 협력과 기술 교류의 실질적인 차원에서 – 을 강조함.

88.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기 위한 국내적 및 지역적 역량을 구축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원조할 것. 테러와 싸우려는 국가를 보조하기위해 유엔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의 활동들 간 조율(coordination)을 강화하기위해 사무총장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각각 그 권한 내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89. 테러 희생자를 지원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함.

90.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보고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반테러관련 산하기관들의 다양한 임무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반테러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행 역할을 강화해야 함. 안보리의 결의들(resolutions)을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세 개의 적격한 산하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함.

91. 핵 테러행위의 방지(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를 위한 국제 협약의 조속한 효력발생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각 국이 반–테러에 관한 12개의 다른 국제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되고 그것들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함.

평화유지

92.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분쟁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복잡한 상황들에서의 복합적인 임무이행을 포함하여 최근 수년간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서 나타난 공로들에 주목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가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함. 그리고 전쟁행위에 대처하고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 강조. 더 나아가 위기상황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배치능

력의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유엔 평화유지 임무 중 치안 유지를 위한 상설 경찰력을 위해 초기 단계의 운영능력(initial operating capacity) 형성을 지원하고, 조언과 전문지식의 제공을 통해 기존의 임무를 원조함.

93. 유엔 헌장 제8장에 입각한 지역 기구들(regional organizations)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공헌을 인정함. 유엔과 지역 기구들 사이에 예측 가능한 협력관계와 조정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특히 아프리카에 주어진 특별한 필요들, 강한 아프리카 연합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함.
 - 빠른 병력의 배치(deployment), 대기(standby), 가교의 준비(bridging arrangements)와 같은 것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 연합과 다른 지역적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
 - 아프리카 연합과 함께 역량구축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함.

94. 우리는 모든 종류의 소형무기 불법거래를 방지/퇴치하기 위한 2001 유엔 행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함.

95. 또한, 반-개인지뢰금지 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과 특정 비핵무기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에 대한 2차 개정의정서(Amended Protocol Ⅱ)의 당사국들은 그들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우리는 각 국이 지뢰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더 광범위한 기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96.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적 착취와 남용에 관한 사무총장 고문(the Secretary-General's Advisor on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by UN Peacekeeping Personnel)의 권고들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권고들을 기반으로 관련 총회 결의들에 채택된 대책들은 지체없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

평화구축

97. 지속가능한 평화 성취를 목적으로, 분쟁 후 평화유지와 화해에 대하여 명확하고 조정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 분쟁 후 복구, 재통합, 재건축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신흥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우리는 정부간 자문기관으로서 평화구축 위원회 (Peacebuilding Commission)의 설립을 결정함.

98. 평화구축 위원회의 주 목적은 육군자원(marshal resources)을 위해 모든 적합한 행위자(actors)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며, 분쟁 후 평화구축과 회복을 위한 통합된 전략을 자문하며 제안하는 것임. 평화구축 위원회는 분쟁 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건축과 기관 설립에 집중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놓기 위해 통합된 전략들의 개발을 지원해야 함. 더 나아가, 평화구축 위원회는 유엔 내부/외부의 모든 적합한 행위자들의 coordination을 개선하고, 최상의 실무를 개발하고, 조기 회복 활동을 위한 예측 가능한 자금지원을 보장하도록 도우며, 분쟁 후 회복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되는 기간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평화구축 위원회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 회원국들의 협의를 기반으로 행동해야 함.

99. 평화구축 위원회는 국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적합한 조직과 행위자들에게 유엔 문서로서 그 논의사항들과 권고사항들을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함. 평화구축 위원회는 총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00. 평화구축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모여야 함. 제100조에서 규정된 대로 조직위원회의 초청을 기반으로 모이는 특정국가회의(Country-specific meetings of the Commission)는 조직 위원회 회원들을 비롯해 다음의 대표들을 회원으로 포함해야 함.

- 고려중인 나라
- 분쟁 후 절차(post-conflict process)에 관여된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구제 혹은 정치적 대화에 포함된 다른 나라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역기구들과 소지역기구들(sub-regional organizations).
- 복구 노력에 관여한 군대와 시민경찰의 주요 재정 기부자들
- 영역별 상임 유엔 대표부들과 관련 유엔 대표자들
- 관련된 지역/국제 금융기관들

101. 평화구축 위원회는 조직의 절차와 문제들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영구적인 조직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상임 회원국들을 포함한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들
- 전후 복구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 지역 그룹(regional group)에서 선출된 -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들
-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설 평화구축기금 (the Standing Fund for Peacebuilding)을 포함하여 유엔 기금, 프로그램, 기구들의 예산에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기부한 국가들

■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엔 임무에 있어서 군대와 시민경찰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들

102. 사무총장 뿐 아니라 World Bank, IMF와 다른 기관 공여 자들의 대표들은 그들의 위치에 상응하는 대우로 평화구축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되어야 함.

103. 분쟁 후 평화구축을 위해, 기존의 도구들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자발적 기부로 지원되는, 다년간 '상설 평화구축기금'을 설립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평화구축 기금의 목적 중 하나는 평화구축활동과 복구를 위한 적절한 금융의 이용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들의 빠른 조성을 보장하기 위함.

104. 평화구축위원회를 원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 사무국 내 그리고 기존 자원들로부터 나온 전문가 – 소규모 '평화구축 지원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이 사무소는 전문적인 활동에 최적이 될 것임.

105. 평화구축 위원회는 2005년 12월 31일내로 그 활동을 시작해야 함.

제재 규정

106. 제재규약(sanctions) 은 무력 사용에 의지하지 않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헌장하의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제재들은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제재조치에 부합되고, 인구와 제3세계를 위하여 사회경제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결과를 포함하여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결의함.

107. 제재 조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행해져야 하며,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재검토되고,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한시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한번 달성되고 난 후에는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함.

108. 우리는 사무총장의 지지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함. 제제의 이행과 효과의 모니터링을 개선할 것. 제재 조치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 그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헌장에 따라, 제제조치로 야기된 특별한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109. 또한 우리는 사무총장의 지지와 함께 안전보장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함. 개인 및 단

체들을 재제조치의 대상으로 설정할 때와 인도주의적인 해택을 줄 때 뿐 아니라 그것을 중단할 때 공정하고 분명한 절차들이 존재하도록 보장할 것.

110. 제재 규약(sanctions)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함.

초국적인 범죄

111. 인신 매매, 밀수출입, 세계 마약 문제, 소규모 무기의 불법거래를 포함한 초국가적인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취약한 국가에서 야기되는 개발, 평화와 안보, 인권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심각하고 진지한 관심을 표함. 우리는 그러한 초국가적 범죄와 싸우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함.

112. 인신매매가 반인류적인 심각한 문제임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처방안이 요구됨. 이를 위하여, 모든 나라들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와 싸우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마련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함.

113. 조직범죄와 부패에 관하여 관련 국제협약들에의 가입을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하여, 그 협약들에 가입할 것과 그러한 국제협약들을 국내 입법에 편입시키고 사법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국제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요청함.

114. 불법 마약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내 전략들과 국제 협력을 통하여, 세계 마약문제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결심과 공약을 재확인함.

115.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권한 내에서 '마약과 범죄에 관한 유엔의 역할' 을 강화할 것을 결의함.

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116. 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있어서, 그리고 평화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함. '여성, 평화와 안보' 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2000) 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의 위임사항들을 재확인함.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결정력을 증가시킬 필요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완전보장하며, 차별을 철폐한 성역활 관점(gender 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 폭력, 남용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소녀들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모든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성 폭력을 조사, 방지, 처벌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함.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117. 무력분쟁 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함. 이와 관련되어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상당한 진보와 혁신을 환영함.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612 (2005)를 환영함. 우리는 각 국들이 아동 인권에 대한 협약과 그와 관련된 "무력분쟁에 있어서 아동의 연루에 관한 의정서"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요청함. 또한 군대와 무장단체들에 의한 국제 법에 어긋나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어린이 고용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들은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취할 것.

118.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아동에 대한 심각한 학대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들에 의한 책임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취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함. 또한, 사회의 재건설과 재통합을 위해, 무력 분쟁 하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육과 같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함.

Ⅳ. 인권과 법치

119. 우리는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촉진할 것을 재 확약하며, 그것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유엔의 보편적인 핵심 가치와 원칙에 속해있음을 인식하여, 유엔의 모든 기관들이 그들의 위임사항(mandates)을 쫓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시킬 것을 요청함.

120. 우리는 유엔헌장, 세계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인권과 국제 법에 관계된 다른 문서들을 쫓아 모든 이를 위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보존/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모든 국가들의 진지한 약속을 재확인함.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속성은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함.

인 권

121.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개인적이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강화하는 것임. 모든 인권은 동등한 위치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루어 져야 함. 국내와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에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함.

122. 헌장을 따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출신 혹은 계급과 같은 모든 종류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

123. 더 나아가, 모든 인권,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유엔 인권 기구를 강화할 것을 결의함.

124. 국제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인권 난제들 – 특히 기술적인 원조와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의 영역에서 – 에 대처해야 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등판무관의 행동 계획(plan of action) – 정기 예산 하에서, 광범위한 지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비 균형을 맞춰 유능한 스텝들을 고용하고 개도국들의 '우선순위 프로그램(priority programmes)' 들을 고려하여, 정기예산과 기부금 사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잘 맞추면서 다음 5년 내에 정기 예산 자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하기 위한 행동계획 – 에 주목하면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역할(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 유엔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적극 지지함.

125. 더 시기적절한 보고, 합리적으로 개선된 보고 절차, 각 국의 보고 능력(reporting capacity)을 강화하고 권고사항들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원조 같은 것을 통해서, 인권 조약 기구들의 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을 결의함.

126.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국내 정책에 통합시키며,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과 다른 관련 유엔 기구들 사이의 더 긴밀한 협력 뿐 아니라, 모든 유엔 체계에 걸쳐 인권을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을 결의함.

127. 지방, 국내, 지역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지역주민들과 협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인권 신장에 있어서 계속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며, 가능한 빨리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최종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함.

128.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인권 의제에 여성과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가능한 모

든 방법으로 그들의 인권신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 있음.

129.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그들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또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포괄적인 초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를 재확인함.

130. 자국민 또는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계층의 권리를 보호/촉진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의 전통을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함.

131. 우리는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의 이행을 포함하여, 모든 차원에서 인권교육과 학습의 촉진을 지원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함.

국내 유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132. 국내 유민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본지침으로서 '국내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 (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인정하며, 국내 유민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취할 것을 결의함.

난민 보호와 지원

133. 난민 이동의 근본원인에 대처하고, 난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귀환을 이끌어내며, 장기적인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난민의 이동이 국가간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는 난민 보호원칙을 지킬 것과 난민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처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또한 연대와 책임공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난민과 그들의 본국을 원조하면서 그들을 지원할 것을 결의함.

법 치

134.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의 보편적 준수와 이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의 의무사항을 재 확약함. 이것은 국가 사이의 평화적인 공존과 협력을 위해 필수적임.
- 매년 조약체결(annual treaty event)을 지원.
- 시민 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격려함.
- 국가가 계속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과 정책들을 없애고자 노력하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실

무를 채택하도록 요청함.

- 법치를 촉진하려는 유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존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 사무국내 법률지원부(law assistance unit)의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함.
- 국가 간 분쟁을 재판함에 있어서 국제 사법재판소, 유엔 사법기관의 중요한 역할과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하며,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을 받아드리지 않는 국가들은 그 지위에 맞게 그것을 받아드릴 것을 요청함. 자발적인 차원에서 '국제 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의 해결과정에 있는 국가를 원조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신탁 기금'(the Secretary-General Trust Fund to Assist States in the Settlement of Disput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제 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민주주의

135. 민주주의란, 삶의 모든 면에서, 각자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체계를 결정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의사를 기반으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 치임. 민주주의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된 민주주의 단일 모델은 없다는 것과 주권과 자기 의사결정권 존중의 당위성을 재확인함. 민주주의, 개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것임을 강조.

136.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각 국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돕는 유엔의 역량을 강 화시킬 것을 결의함. 우리는 유엔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 설립을 환영함. 설립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다양한 지정학적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함. 민주주의 기금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들이 기존 유엔 활동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137. 우리는 이해관계에 있는 회원국들이 그 기금에 기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도록 요청함.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인구를 보호할 책임

138. 각 개별 국가들은 자국민을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이 책임은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 그러한 범죄와 그 범죄

유인(incitement)을 예방할 것을 포함.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아드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임. 절적한 방식으로, 국제사회는 각국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며, 유엔이 조기 경고(early warning) 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39. 헌장의 제6장, 8장 규정을 따라 국제사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적절한 외교적, 인도주의적 그리고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적 수단이 적당치 않고 국가가 그 국민들을 이러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역부족인 경우, 유엔 헌장 제 7장 규정을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를 통해, 시기적절하고 결정적인 수단으로 집단행동을 취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함. 총회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또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 구축을 도우며, 위기 직전의 긴장하에 있는 국가들 혹은 분쟁이 발발한 국가들을 원조할 것을 약속함.

140. 우리는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유엔 특별 자문기관(UN Special Advisor for the Prevention of Genocide)의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함.

아동의 권리

141. 우리는 국내 폭력, 성적 남용과 착취, 그리고 밀매의 모든 형태 뿐 아니라 무력분쟁에 어린아이들이 연루되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 우리는 그러한 아동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내 '포용과 재통합' 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정책들을 지지함.

142.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및 다른 견해, 국적, 사회적 계급, 재산, 장애의 여부,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함.

인류 안보

143. 모든 사람이 빈곤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권리를 강조함. 모든 개인, 특히 연약한 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human potential)을 개발시키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두려움과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 함을 누릴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인정. 이러한 목적으로, 총회에서 인간 안보의 개념을 토론하고 정의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함.

평화 문화(culture of peace)와 문화, 문명, 종교간 대화의 시도

144. 우리는 총회에서 채택된 '문명 간 대화를 위한 지구적 의제' (Global Agenda for Dialogue among Civilizations)와 그 행동계획(its Programme of Action)뿐 아니라,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과 그 행동계획, 종교를 초월한 협력에 관한 대화를 포함하여 문화와 문명 간 대화에 대한 다른 시도들의 가치를 재확인함. 우리는 지방, 국내,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문화와 대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며, 사무총장은 그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함.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또한 2005년 7월 14일 사무총장에 의해 발표된 '문명의 연대 시도' (Initiative of the Alliance of Civilizations)를 환영함.

145. 스포츠가 평화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포용과 이해의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스포츠와 개발 행동계획(A Sport and Development Plan for Action)' 을 이끌어나갈 제안들을 위해 총회에서 토론할 것을 독려함.

Ⅴ. 유엔 체계의 강화

146.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여 현 시대의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엔의 역량뿐 아니라 그 권위와 효율성 또한 강화시키려는 맥락에서, 유엔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재확인함. 우리는 유엔의 정부간 조직들을 활성화 시키고 그들이 21세기의 필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함.

147. 헌장 하에 위임된 각 임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엔 조직들은 더 효율적인 유엔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노력에 있어서 필요한 협력과 조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148. 유엔의 임무 수행을 더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 더 적합하고 시기적절한 자원들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개혁된 유엔은 전체 회원국들에게 더 민감하고, 그 기본원칙에 더 충실하며, 그 위임사항을 성취함에 있어서 더 적합하게 개혁되어야함.

총 회

149. 기준 설정 과정과 국제법의 체계화에 있어서의 총회의 역할 뿐 아니라, 총회가 유엔의 최고 심의, 결정, 대표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지위에 있음을 재확인함.

150. 총회가 그 역할과 권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채택한 방법들과 총회 의장의 역할과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환영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온전히 신속하게 이행될 것을 요청함.

151. 유엔 기구들 각자의 임무사항을 좇아, 유엔에 의한 조정 (coordination)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더 원활한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와 다른 중요한 기관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

안전보장 이사회

153. 유엔이 더 광범위한 것을 대표하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지기 위해, 더 나아가 그 결정의 효과, 적법성,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을 개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필수요소로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우선적 개혁이 필요.

154. 우리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회원국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며,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 업무 수행 방법을 계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을 권고함.

경제 사회 위원회

155. 유엔 헌장과 총회가 경제사회이사회에 부여한 역할을 재확인하며, MDGs를 비롯한 주요한 유엔 회담과 회의에서 합의된 국제 개발 목표의 이행뿐 아니라 조율, 정책검토, 정책을 위한 대화와 경제사회 개발 이슈에 대한 권고를 위해, 경제 사회 이사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 있음.

■ 경제, 사회, 환경, 인도주의적인 분야에서 지구적인 정책과 경향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화와 협력관계를 촉진함. 이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국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개발에 더욱 신속하게 잘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할 뿐 아니라, 국제 금융기관, 사적 부문과 시민사회, 새롭게 나타나는 글로벌 정책, 경향, 행동과 함께 회원국들 사이의 고위급 연계를 위한 질적으로 우수한 토론장으로서 기능할 것임.

■ 전략, 정책과 재정모금을 포함한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경향들을 검토하기 위해 2년마다 한번씩 고위급 개발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다른 개발 파트너들의 개발 활동사이의 일관성을 더 향상시키며, 유엔의 규범적이면서도 기능적인 활동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킴.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을 포함해서 주요한 유엔 회의와 회담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각자의 임무에 따라, 다른 국제기구들 뿐 아니라 그 기능적이고 지역적인 위원회들도 포함해서, 그 진전을 평가하기위한 장관급 실무 조사를 실시함.

■ 더 개선되고 조정된 유엔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재난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긴급구호에 대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들을 지원하고 보완함.

■ 기금, 프로그램, 기구들 사이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위임사항들과 활동들의 중복을 피하면서, 이들 기관의 전체적인 조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156. 위의 기능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이사회의 업무 체계, 의제, 현재 업무 방법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

인권 위원회

157. 유엔 인권 기구를 더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좇아, 인권 위원회를 형성할 것을 결의함.

158.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보장을 촉진할 책임 있음.

159. 위원회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포함해서 인권 침해의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그것에 관하여 권고안을 만들어야 함. 위원회는 또한, 유엔 체계내의 효과적인 조율과 인권 차별의 철폐를 촉진해야 함.

160. 제60번째 회기동안, 위임사항, 형식, 기능, 규모, 조합, 멤버쉽, 일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열린 협상을 끝마칠 수 있도록, 총회 의장에게 요청함.

사무국과 관리 개혁

161.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효과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함. 사무국 스텝들은 조직의 신뢰성, 투명성과 통일성의 문화내에서 헌장의 제100조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함.

■ 신뢰성과 감시기능 강화, 관리 수행(management performance)과 투명성 개선, 윤리적 행동 강화를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개혁방법을 인정하며, 그를 초청하여 개혁 이행으로 인한 진전에 대해서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 사무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

■ 헌장 제 101조에 따라, 적합한 지리학적 배분

법칙을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효율성, 능력,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윤리적인 행동과 유엔 직원들의 재정공개의 범위 확장을 보장하고, 조직 내 비리를 폭로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사무총장이 기존의 행동기준을 양심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유엔 직원들에 대한 윤리규범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함.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무총장이 만들기로 했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윤리 부서(ethics office)'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 60회 총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함.
- 유엔이 그 임무사항을 이행하고, 유엔총회에서 합의된 우선순위들과 예산 원칙을 존중하면서 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유엔에 필요한 자원들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것을 약속함. 모든 회원국들이 기구의 비용에 관한 그들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유엔활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관점에서,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합의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보와 통신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포함한 최선의 관리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을 채택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162. 유엔헌장 제 97조를 따라, 사무총장은 기관의 행정적인 수상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우리는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총회에 제안서(proposals)를 만들도록 함.

163. 유엔의 효과적인 관리와 기구 혁신을 강화시키려는 사무총의 노력에 찬사를 보냄.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재정과 인적 자원을 더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그 원칙과 목표, 임무사항에 더 잘 부응하기위해 추가적인 개혁들을 결단할 필요 있음. 사무총장은 2006년 1/4 분기의 결정과 고려사항들을 위하여 총회에 관리개혁(management reforms)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함.

- 유엔 예산, 재정, 인력 자원을 위한 정책, 규제, 규칙들이 기구의 현 필요에 대응할 수 있고, 업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2006년 1/4 분기 동안 결정사항을 위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총회에 보고해 줄 것. 사무총장의 평가와 권고사항들은 인적 자원 관리와 예산 집행과정의 개혁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인 방법들을 고려해야 함.
- 우리는 유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최신화(update)하여 그것이 회원국의 현 요구사항

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함. 이를 목적으로, 총회와 다른 관련 기관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결의문에 내포되어 있는 5년 이상 지난 모든 임무사항(mandates)을 검토할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정기적인 검토 작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총회와 다른 기관들은 2006년 동안 이러한 검토 작업을 통하여 필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함. 사무총장은, 총회가 사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침변경(programmatic shifts)의 가능성들을 포함한 분석과 권고사항들과 함께 이 검토 작업을 촉진해야 함.

- 비용 지표(an indicator of costs)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서, 인사 구조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정리해고에 관한 기본 틀(framework)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서

164. 우리는 유엔의 감시와 관리 체계를 상당히 개선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 OIOS(the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 의 기능상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 회계와 감사를 위한 내부감시 기관(the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의 전문성, 역량과 자원들은 상당히 강화되어야 하며 이것은 긴급한 문제임.
-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와 감시 구조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은, 특별기구들의 회계와 감시체계를 포함해서 유엔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평가서 – 관리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서 –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이 평가는 거버넌스 제도(governance arrangements)의 포괄적인 검토로 이루어져야 함. 사무총장에 의해 만들어진 그 평가와 권고사항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제 60회 총회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방법들을 채택할 것을 요청함.
- 감시 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법들이 더 필요함. 따라서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함. 임무내용(mandate), 구성, 선택 과정과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포함해서, 독립적인 감시 자문 위원회의 설립을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60회 총회에 제출할 것.
- 유엔 사무국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내부 감시 시스템이 필요한 유엔 기구들내에 그러한 내부 감시 기능을 확장하는 일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도록 OIOS 에게 권한을 부여함.

165. 모든 유엔 직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기준을 요구하며,– 각 나라의 사무소 혹은 본부에 있는 모든 – 유엔직원에 의한 성적 착취와 남용에 대하여 한 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무총장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당한 노력을 지지함.

우리는 사무총장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희생자(victims)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총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함.

166. 유엔의 정책과 결정에 있어서 성 차별을 철폐하는 것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모든 의사결정 기구들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격려함.

167. 우리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연관된 직원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규탄함. 우리는 각 국이 '유엔과 관련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afety of United Na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며, 제 60회 유엔총회동안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종결할 필요 있음.

조직전반에 걸친 일관성 (System-wide coherence)

168. 지구적 이슈(global issues)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유엔이 기여한 공헌들을 인정함. 유엔의 다양한 개발관련 기구, 기관, 기금, 프로그램들의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지식들을 높이 평가함. 다양한 유엔 회의에 의해 설정된 MDGs와 다른 개발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유엔의 상당한 공헌 또한 높이 평가함.

169. 우리는 아래의 방법들을 이행함으로써, 조직전반에 걸친 일 관성을 더 강화하도록 지원함.

정 책

- 유엔 체계의 규범적인 업무와 그 기능적인 활동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함.
- 다양한 개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들이, 임무를 부여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조직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그 기구들의 운영위원회 (governing board)에 우리의 의견을 조화시킴.
-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과 성 역할과 같은 주요한 수평적 정책들이 전 유엔 체계에 걸쳐 그 결정 과정(decision-making)에 고려되어야 함.

운용 활동들 (Operational activities)

- 적법한 권한, 자원과 책임, 그리고 공동 관리, 프로그래밍과 모니터링 기본원칙과 함께 – 특별 대표단, 각국 주재 코디네이터 혹은 인도주의 코디네이터이든지– 상임 유엔 주재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각 국 유엔 사무소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고, 조정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 개혁들을 실행함.

■ 사무총장이 유엔의 운용 활동(operational activities)의 관리와 조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청함. 그로써, 그 운용활동들이 MDGs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의 성취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인도주의 원조

■ 인류애, 중립, 공평과 독립성의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따라, 인도주의 행위자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비하고 대처하며, 그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각 국의 노력,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

■ 유엔의 인도주의 대응, 그 중에서도 인도주의 기금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시키고, 부분적으로 중앙 긴급 순환기금 (Central Emergency Revolving Fund)을 개선함으로써 그 대응의 효과를 강화시킬 것.

■ 더 나아가, 유엔의 후원 하에, 인도주의 긴급상황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기 능력(emergency standby capacities)의 활용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개선시킬 것.

환경 활동

■ 유엔 체계 내에서, 강화된 조정(coordination) 역할, 개선된 정책조언과 지침, 강화된 과학지식, 평가와 협력, 더 나은 조약 가입(treaty compliance)과 더불어 – 운용적인 차원에서 환경 활동을 더 넓은 범위의 '지속가능한 개발' 틀(framework)에 통합시킬 뿐 아니라, 역량구축과 조약의 법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 더 효과적인 환경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됨.

■ 우리는, 조약 기관들(treaty bodies)과 특별기구들 뿐 아니라, 기존 조직들과 국제적으로 협의된 기관들 위에 세워진 더 통합된 구조를 포함하여, 위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구조를 연구하는데 동의함.

지역 기구들(regional organizations)

170. 우리는 헌장 제8장에 따라, 유엔과 지역(regional) 및 지역 내소구역(sub-regional) 기구들 사이의 더 밀접한 관계형성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 각 사무국들 간 조약을 통하여 혹은 적절한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 업무에 지역 기구를 참여시킴을 통하여, 유엔과 지역 및 소구역 기구들 사이의 협의와 조정을 확대함.

■ 무력분쟁의 예방 및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 기구들을 유엔 대

기 장치(UN Standby Arrangements System)의 구조 내에 두는 것을 고려함.

■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함.

유엔과 의회 사이의 협력

171. 특히, 유엔 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Millennium Declaration의 모든 면을 추진하고 유엔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간 연합(Inter-Parliamentary Union)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유엔과 국내 및 지방 의회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할 것.

지방 당국, 민간 부문과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

172. 우리는 개발과 인권 프로그램의 이행과 촉진에 있어서, NGO를 포함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기여를 환영하며, 이러한 핵심 분야에 있어서 정부, 유엔,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의 계속적인 참여가 중요함.

173. MDGs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의 성취를 위해 지방당국의 역할이 중요함.

174. 지구적 협정(Global Compact)에 의해 촉진된 것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을 장려함.

175. 또한 우리는, NGO와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대표자들과 함께 했던 비공식적인 총회 최초 쌍방향 발언기회(interactive hearings)와 같이 이러한 기구들과 회원국들 사이의 대화를 환영함.

유엔 헌장

176. 신탁통치 위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헌장 제8장과 제12장의 '위원회 조항'을 삭제해야 함.

177. 총회 결의안 50/52를 고려하고 이와 관련된 총회의 토론 내용들을 상기하고, 유엔 설립의 근본적 이유를 염두하며 우리 공동의 미래(common future)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유엔 헌장의 제 53조, 제 77조, 제 107조의 "적대국가(enemy states)"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결의함.

178. 우리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군사 조직 위원회' (Military Staff Committee) 의 구성, 임무,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요청함.

OECD/DAC 주요원조기관의 조직도

1. 스웨덴 SIDA ····· 137

2. 호주 AusAID ····· 138

3. 프랑스 AFD ····· 140

4. 캐나다 CIDA ····· 142

5. 영국 DFID ····· 143

6. 독일 GTZ 및 KFW ····· 144

7. 일본 JICA ····· 147

8. 노르웨이 NORAD ····· 148

9. 미국 USAID ····· 149

10. 뉴질랜드 NZAID ····· 150

Ⅰ. 스웨덴 SIDA



REGIONAL DEPARTMENTS

Asia

Africa

Europe

Latin Amerika

SECTOR DEPARTMENTS

Democracy & Social Development

Infrastructure & Economic Cooperation

Natural Resources & the Environment

Research Cooperation

Cooperation with NGOs, Humanitarian Assistance & Conflict Management

INTRA-AGENCY FUNCTIONS

Finance & Corporate Development

Information

Human Resources

Policy &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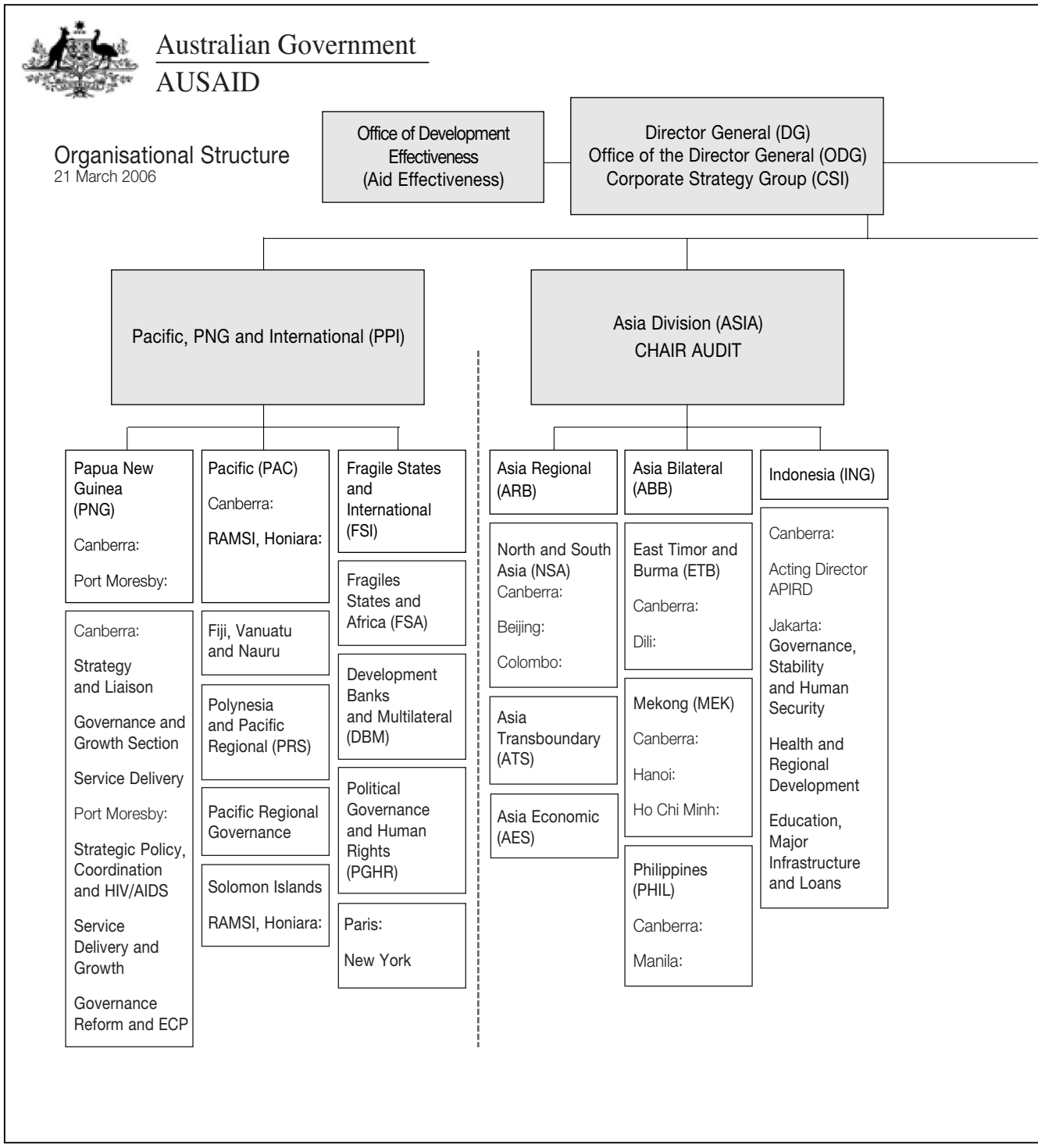
SECRETARIAT FOR EVALUATION & INTERNAL AU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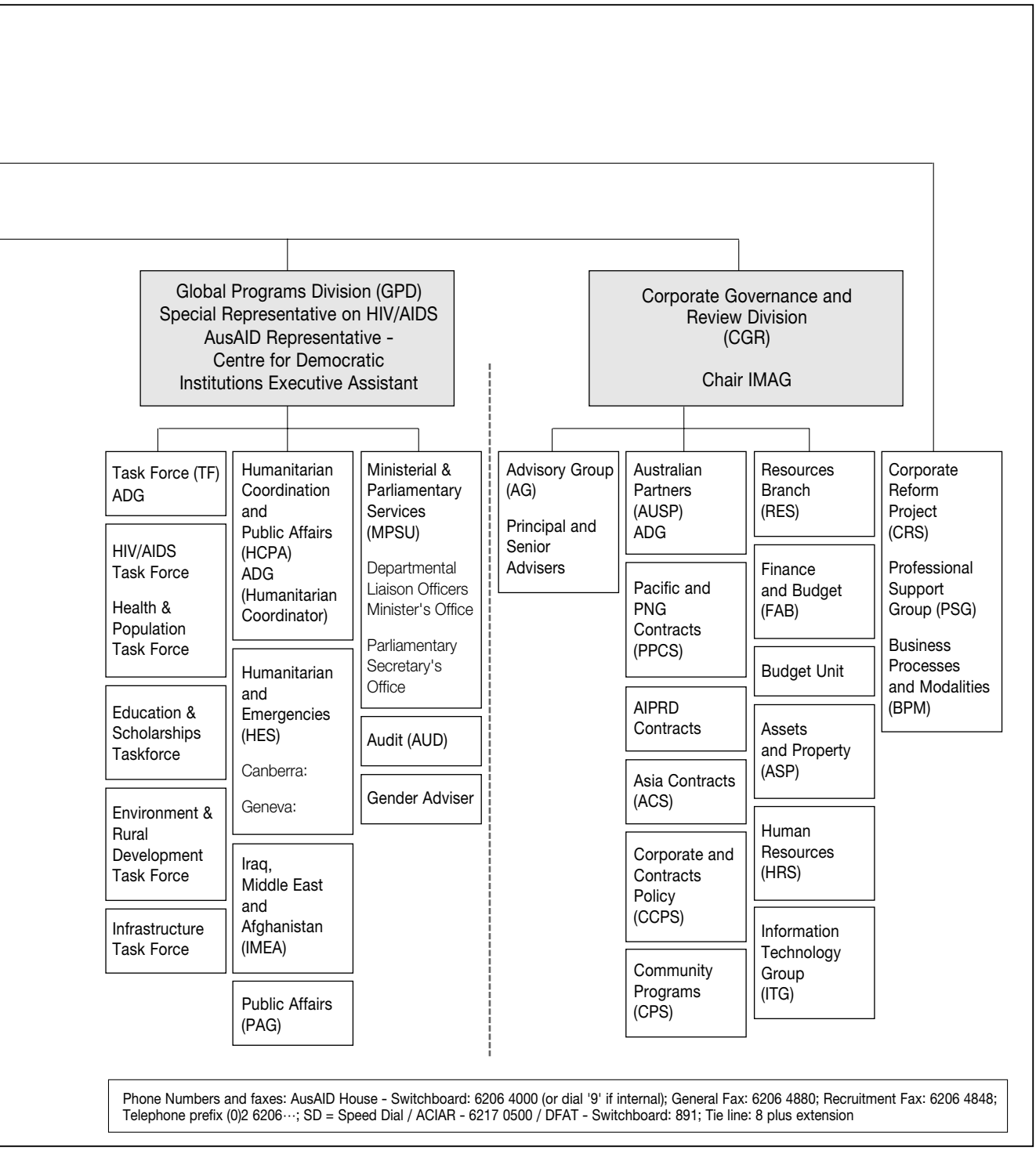
DIRECTOR-GENERAL

BOARD

Si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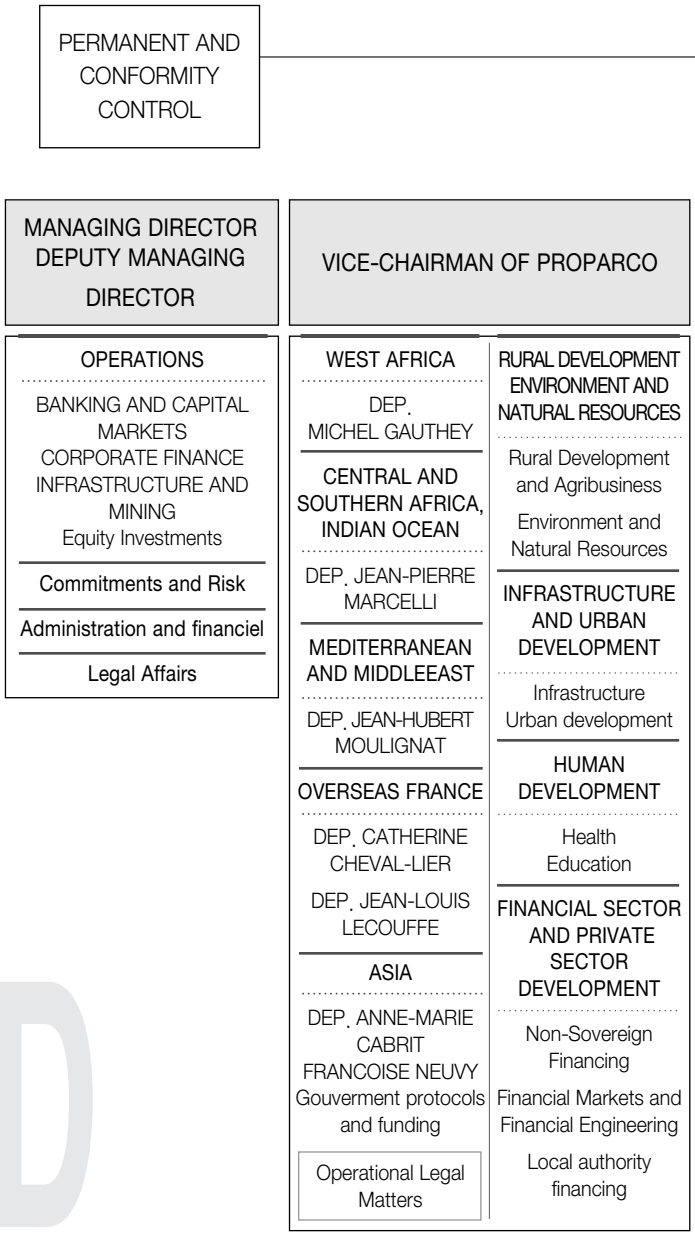
Ⅱ. 호주 Aus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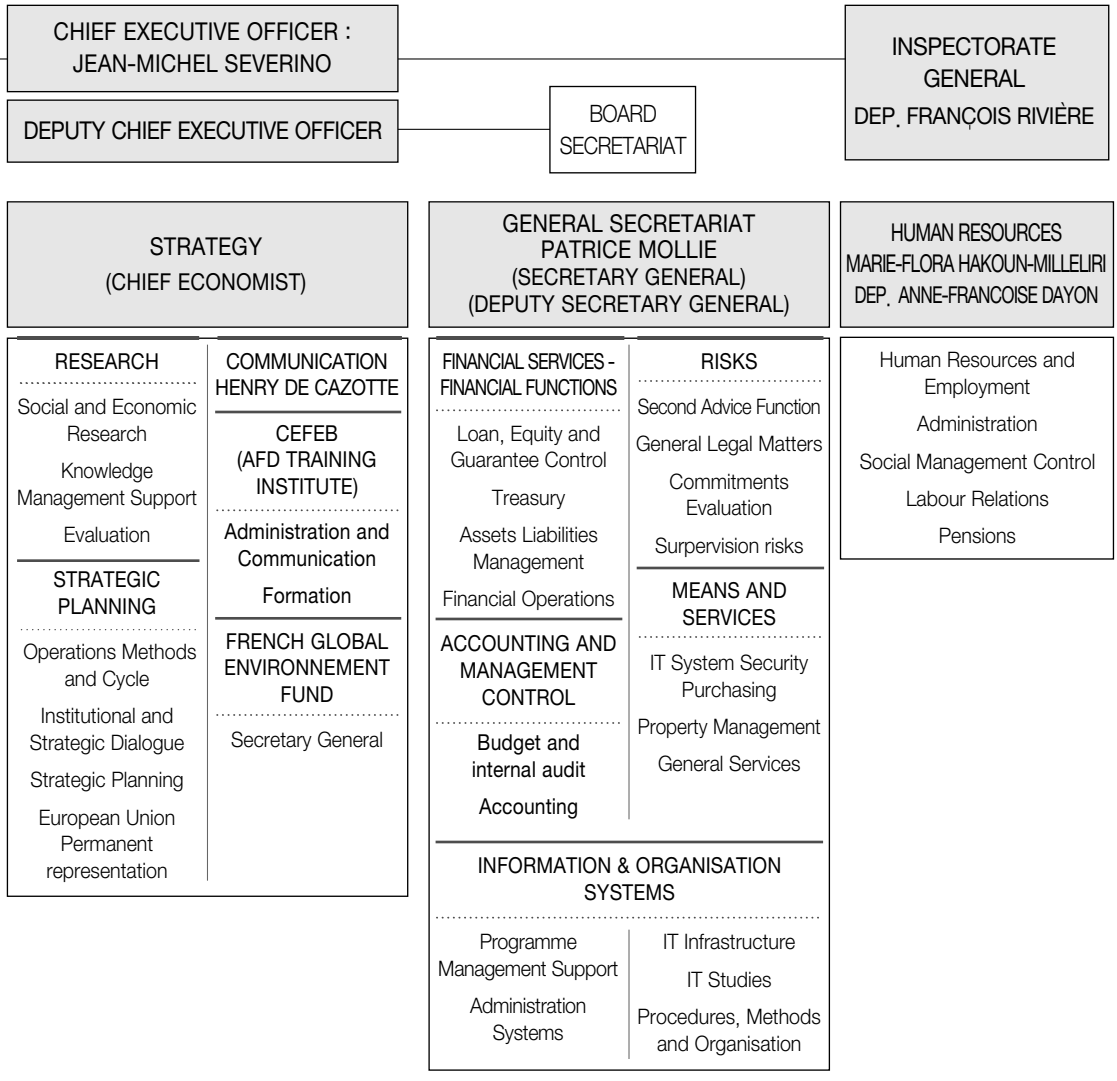

Australian Government
AUSAID
Organisational Structure
21 March 2006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id Effectiveness)
Director General (DG)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ODG)
Corporate Strategy Group (CSI)
Pacific, PNG and International (PPI)
Asia Division (ASIA)
CHAIR AUDIT
Papua New Guinea (PNG)
Canberra:
Port Moresby:
Canberra:
Strategy and Liaison
Governance and Growth Section
Service Delivery
Port Moresby:
Strategic Policy, Coordination and HIV/AIDS
Service Delivery and Growth
Governance Reform and ECP
Pacific (PAC)
Canberra:
RAMSI, Honiara:
Fiji, Vanuatu and Nauru
Polynesia and Pacific Regional (PRS)
Pacific Regional Governance
Solomon Islands
RAMSI, Honiara:
Fragile States and International (FSI)
Fragiles States and Africa (FSA)
Development Banks and Multilateral (DBM)
Political Governance and Human Rights (PGHR)
Paris:
New York
Asia Regional (ARB)
North and South Asia (NSA)
Canberra:
Beijing:
Colombo:
Asia Transboundary (ATS)
Asia Economic (AES)
Asia Bilateral (ABB)
East Timor and Burma (ETB)
Canberra:
Dili:
Mekong (MEK)
Canberra:
Hanoi:
Ho Chi Minh:
Philippines (PHIL)
Canberra:
Manila:
Indonesia (ING)
Canberra:
Acting Director APIRD
Jakarta:
Governance, Stability and Human Security
Health and Regional Development
Education, Major Infrastructure and Lo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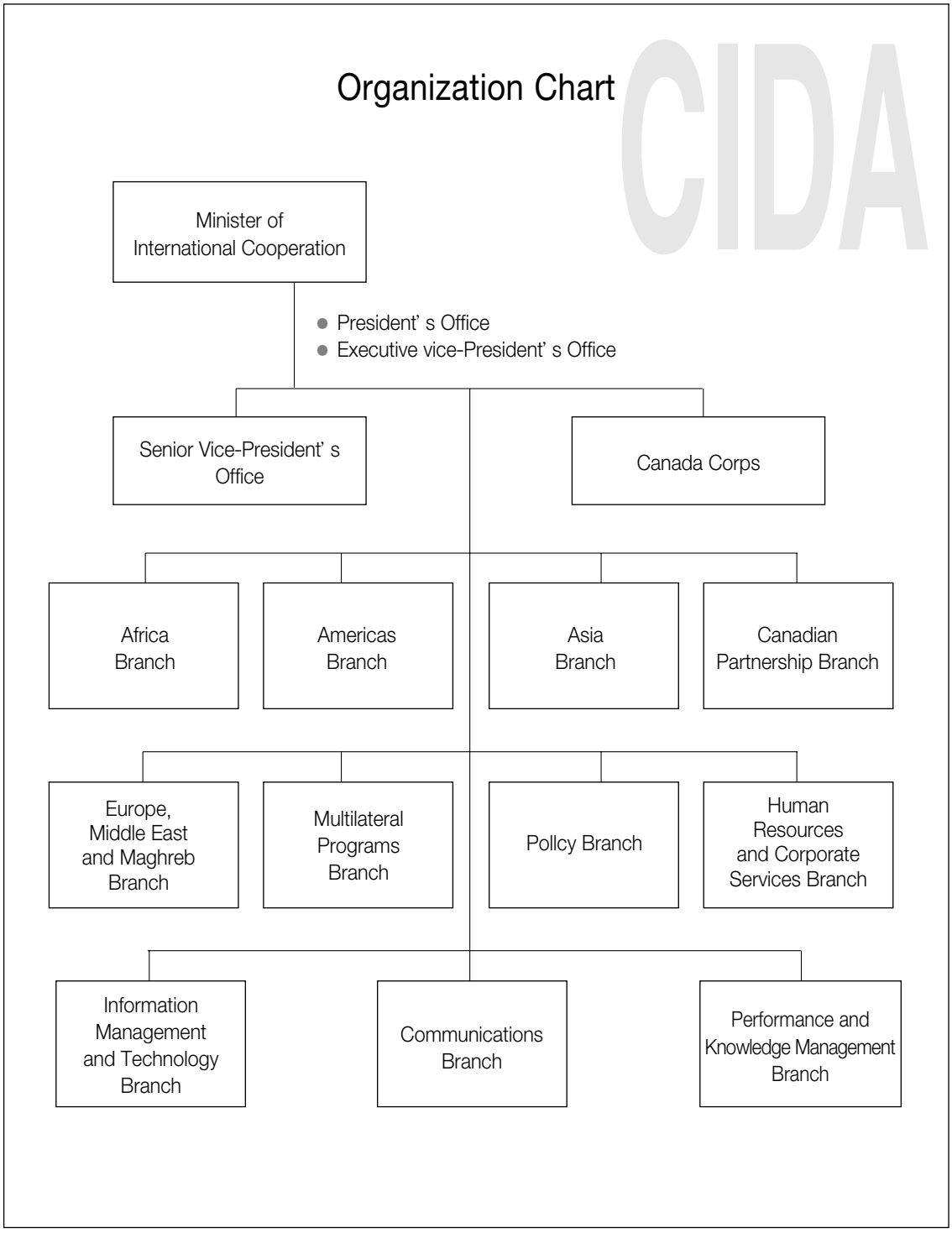
Phone Numbers and faxes: AusAID House - Switchboard: 6206 4000 (or dial '9' if internal); General Fax: 6206 4880; Recruitment Fax: 6206 4848; Telephone prefix (0)2 6206···; SD = Speed Dial / ACIAR - 6217 0500 / DFAT - Switchboard: 891; Tie line: 8 plus extension

Group Organisation at 1st March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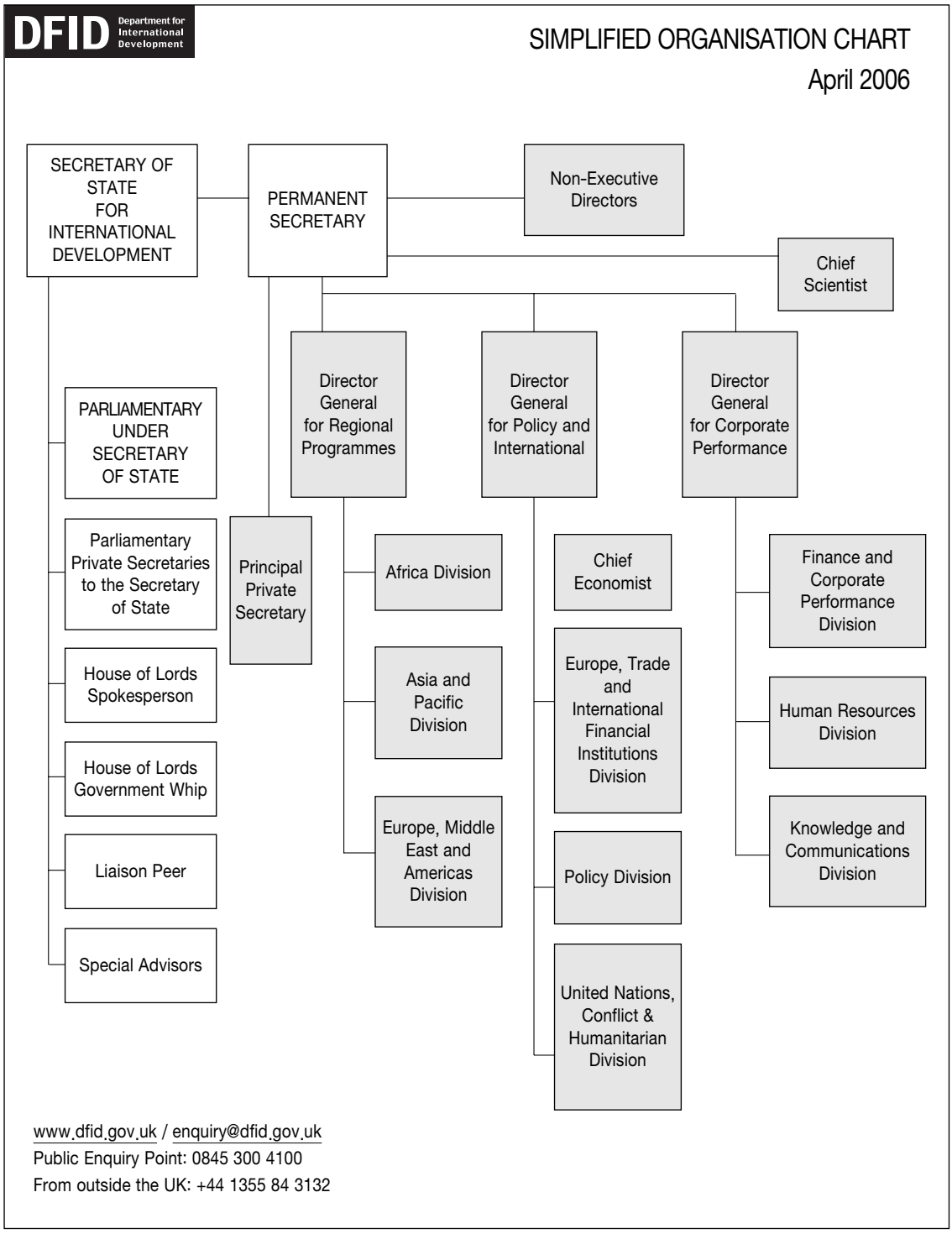



CHIEF EXECUTIVE OFFICER :
JEAN-MICHEL SEVERINO
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BOARD SECRETARIAT
INSPECTORATE GENERAL
DEP. FRANÇOIS RIVIÈRE
STRATEGY
(CHIEF ECONOMIST)
RESEARCH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Knowledge Management Support
Evaluation
STRATEGIC PLANNING
Operations Methods and Cycle
Institutional and Strategic Dialogue
Strategic Planning
European Union Permanent representation
COMMUNICATION
HENRY DE CAZOTTE
CEFEB
(AFD TRAINING INSTITUTE)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
Formation
FRENCH GLOBAL ENVIRONNEMENT FUND
Secretary General
GENERAL SECRETARIAT
PATRICE MOLLIE
(SECRETARY GENERAL)
(DEPUTY SECRETARY GENERAL)
FINANCIAL SERVICES - FINANCIAL FUNCTIONS
Loan, Equity and Guarantee Control
Treasury
Assets Liabilities Management
Financial Operations
ACCOUNTING AND MANAGEMENT CONTROL
Budget and internal audit
Accounting
RISKS
Second Advice Function
General Legal Matters
Commitments Evaluation
Surpervision risks
MEANS AND SERVICES
IT System Security Purchasing
Property Management
General Services
INFORMATION & ORGANISATION SYSTEMS
Programme Management Support
Administration Systems
IT Infrastructure
IT Studies
Procedures, Methods and Organisation
HUMAN RESOURCES
MARIE-FLORA HAKOUN-MILLELIRI
DEP. ANNE-FRANCOISE DAYON
Human Resources and Employment
Administration
Social Management Control
Labour Relations
Pensions

Ⅳ. 캐나다 CIDA


Organization Chart
CIDA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sident' s Office
Executive vice-President' s Office
Senior Vice-President' s Office
Canada Corps
Africa Branch
Americas Branch
Asia Branch
Canadian Partnership Branch
Europe, Middle East and Maghreb Branch
Multilateral Programs Branch
Pollcy Branch
Human Resources and Corporate Services Branch
Information Management and Technology Branch
Communications Branch
Performance and Knowledge Management Bra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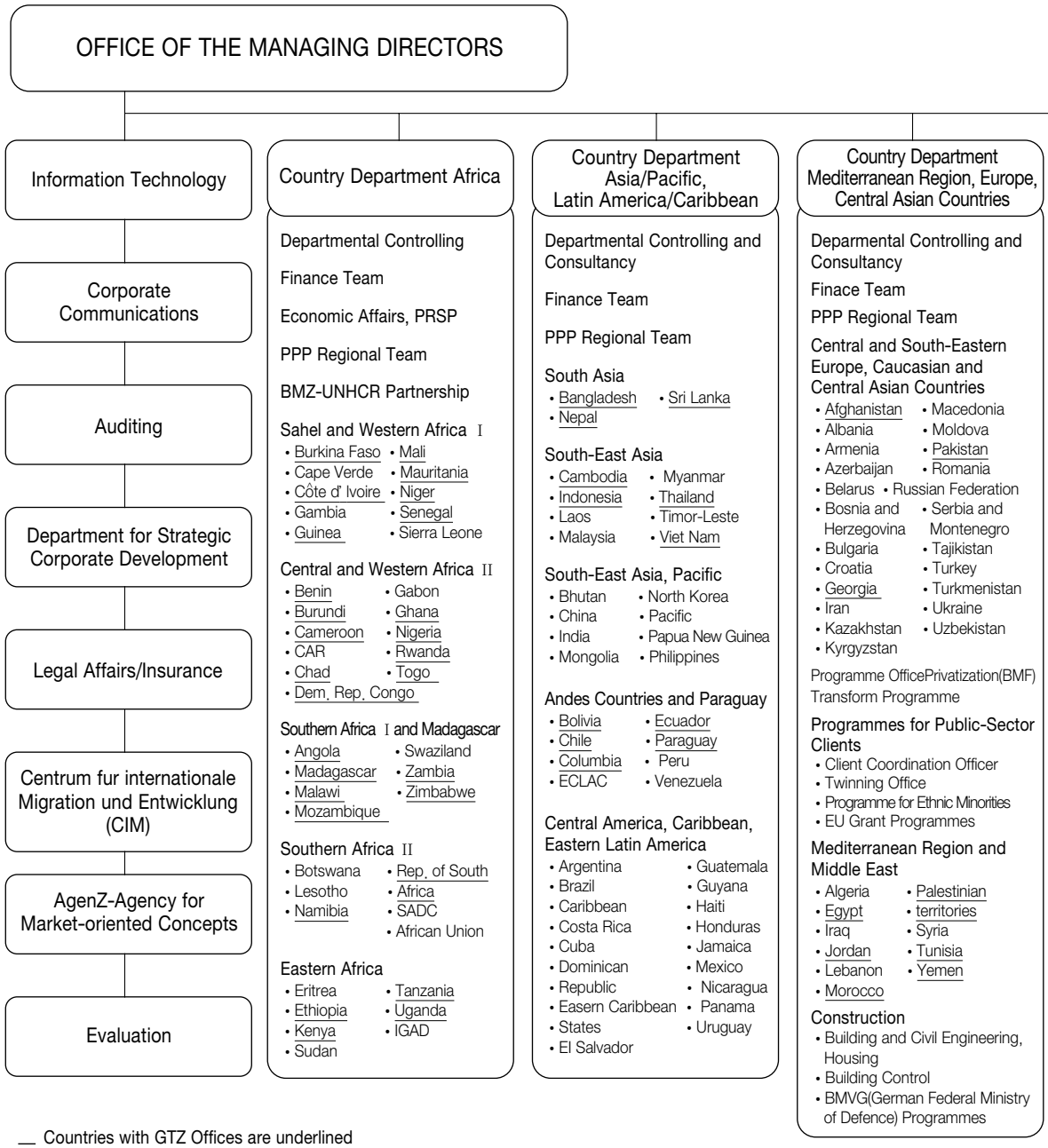
Ⅴ. 영국 DFID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MPLIFIED ORGANISATION CHART
April 2006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ERMANENT SECRETARY
Non-Executive Directors
Chief Scientist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Parliamentary Private Secretaries to the Secretary of State
House of Lords Spokesperson
House of Lords Government Whip
Liaison Peer
Special Advisors
Principal Private Secretary
Director General for Regional Programmes
Director General for Policy and International
Director General for Corporate Performance
Africa Division
Asia and Pacific Division
Europe, Middle East and Americas Division
Chief Economist
Europe, Trad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Policy Division
United Nations, Conflict & Humanitarian Division
Fin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Division
Human Resources Division
Knowledge and Communications Division
www.dfid.gov.uk / enquiry@dfid.gov.uk
Public Enquiry Point: 0845 300 4100
From outside the UK: +44 1355 84 3132

Ⅵ. 독일 GTZ

Organization Chart

1 March 2006



__ Countries with GTZ Offices are underlined

gtz Partner for the Future. Worldwide.

Plann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Centre for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Departmental Controlling and Finance Team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Consultancy, MODeLs Consultancy Team

Knowledge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 Vocational training
- Economic policy, private-sector and trade development
- Finace-system development and credit

Governance and Democracy
-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conflicts and disasters
- State refor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law and Justice, Public Flinance and adminstration, gender
- Decentralization, regional governance,municipal and urban development

Health, Education, Social Protection
- Health systems and promotion
- Promotion of education systems, knowledge organization and youth policie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in DC
- Social protection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management
- Water
- Energy and transport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 Policy consultancy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sector
- Promotion of agriculture and food Programme Office for Social and Ecological Standards

Commercial Affairs Department

Departmental Controlling

Facility Management, Postal Services, Central Archives

Financial Management Consultancy Team

Building 1 Modernisation

Corporate Controlling
- Financial planning, budgets, forecasts
- Management information and external reporting
- Cost accounting
- Expenditure accounting
- Final accounts

Financial Accounting, Payments,Taxes
- Creditor accounting
- Debitor accounting
- Fixed assets accounting
- Annual accounts
- Accounting :Intermational Services
- Payments/cash letters of credit
- Taxes
- Financial archives

Contracting, Procurement and Logistics
- Contract management
- Procurement:agro, medical,
- communications, logistics
- Procurement:vehicles, workshops , industrial technology
- Finance team

Personnel Department

Departmental Controlling, Social Issues

Management Positions

Document and Graphics Centre, Secretariat Service

Cooperation with Personnel in Stress, Conflict and Crisis (COPE)

Human Resources Policy and Development
- Management development
- HR National Personnel
- Competence building
- Principle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 Training of young professionals

Medical Services

Personnel Recruitment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 Western and Central Africa, Mediterranean Region, Europe, Central
- Asia, Planning and Development
- Eastern and Southern Africa, Units 01, 04, 07, Planning and Development
- Asia, Latin America, Commercial Affairs Department, Units 02, 03, 05, 06
- Corporate Policy, crisis officer
- Salaries

Personnel-related Information Technology, Travel

GTZ International Services

Gulf-States, supraregional

Sub-Saharan Africa
West Africa

Southem Africa

Central and Eastern Africa

Asia, Lat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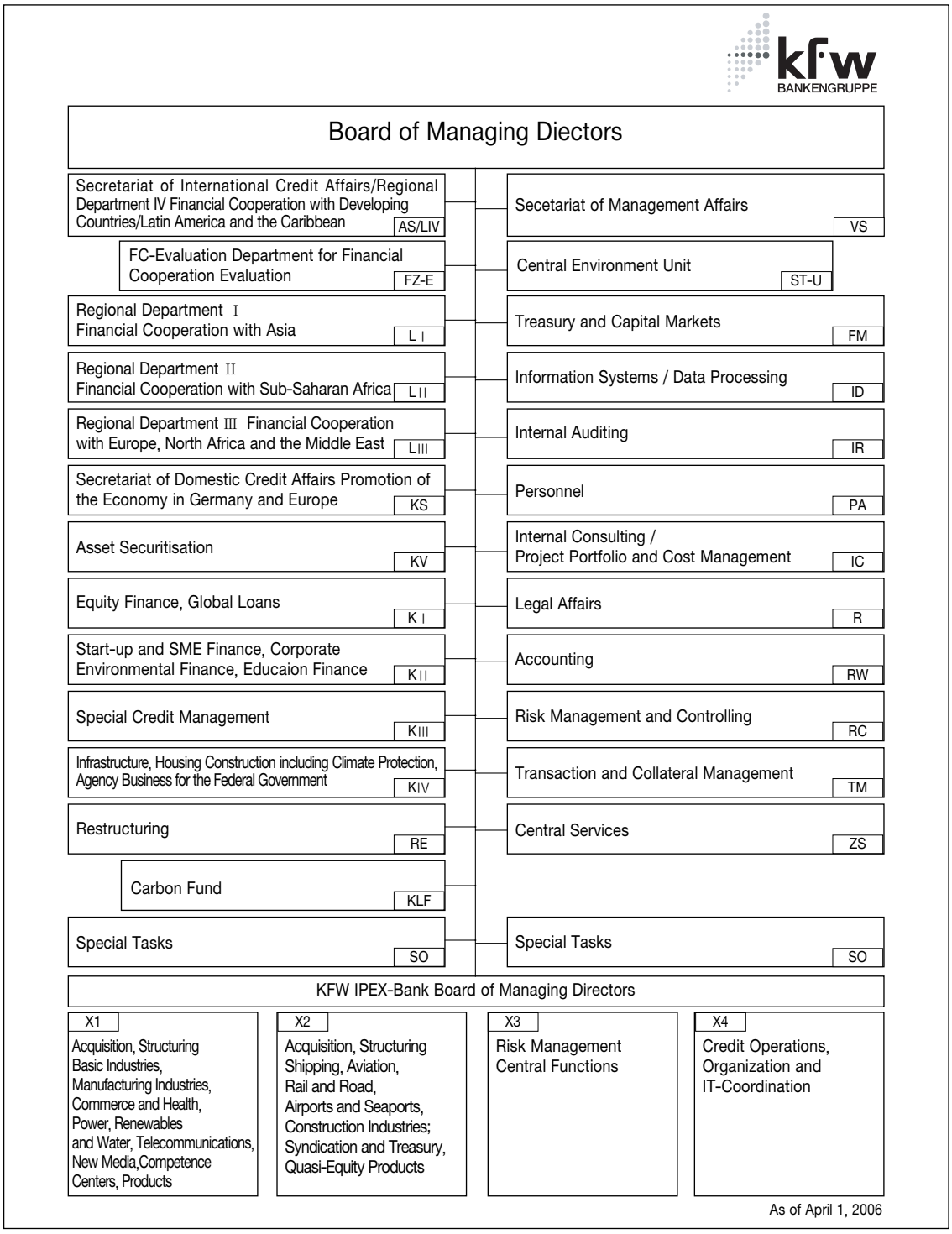
Europe, Mediterranean, Central Asia

Finance and Controlling

Perso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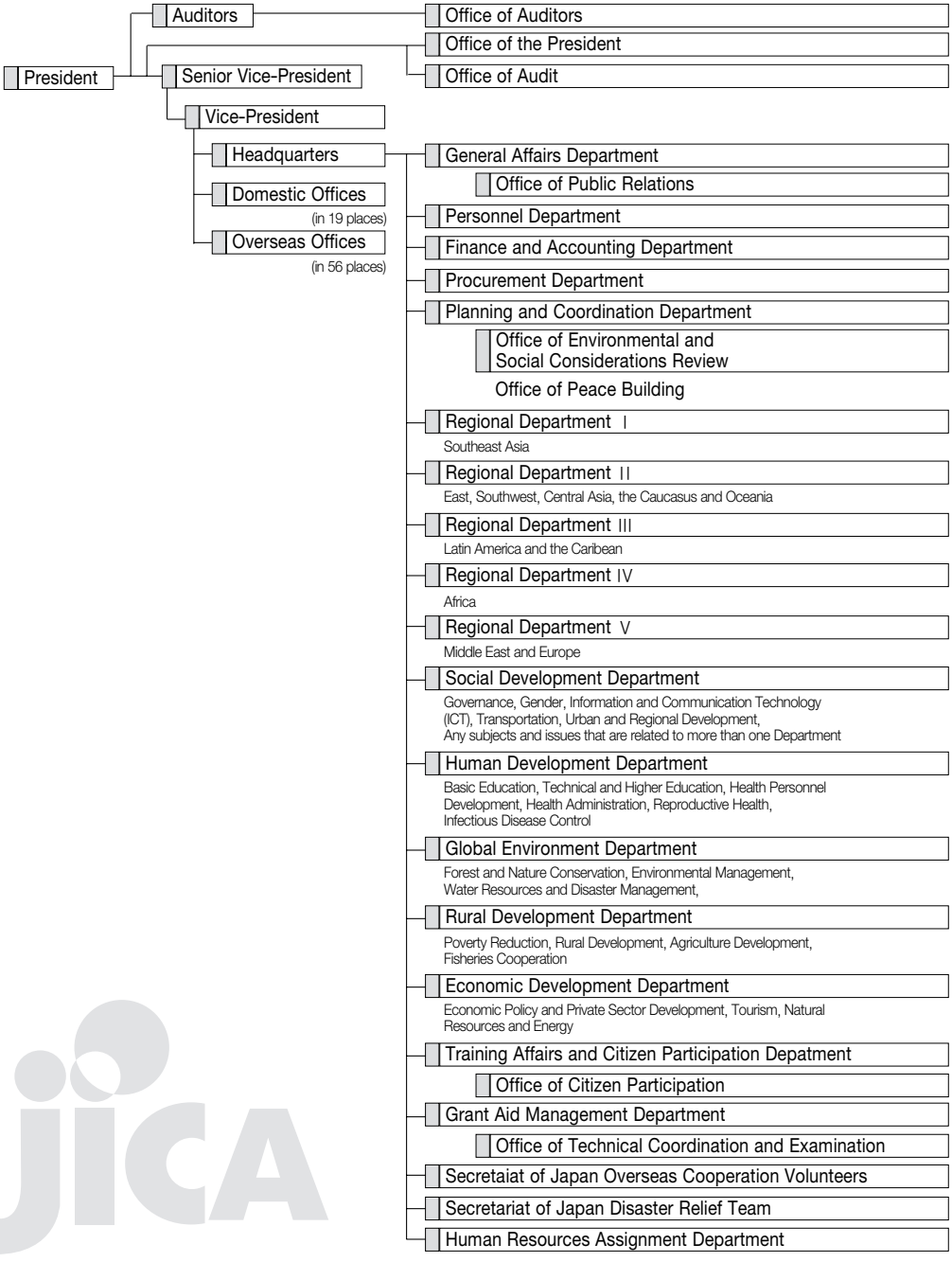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GmbH
Dag-Hammarskjöld-Weg 1-5
65760 Eschborn/Germany
T +49 61 96 79-0
F +49 61 96 79-11 15
Tx 40 75 01-0 gtz d
E info@gtz.de
I www.gtz.de

Ⅵ. 독일 K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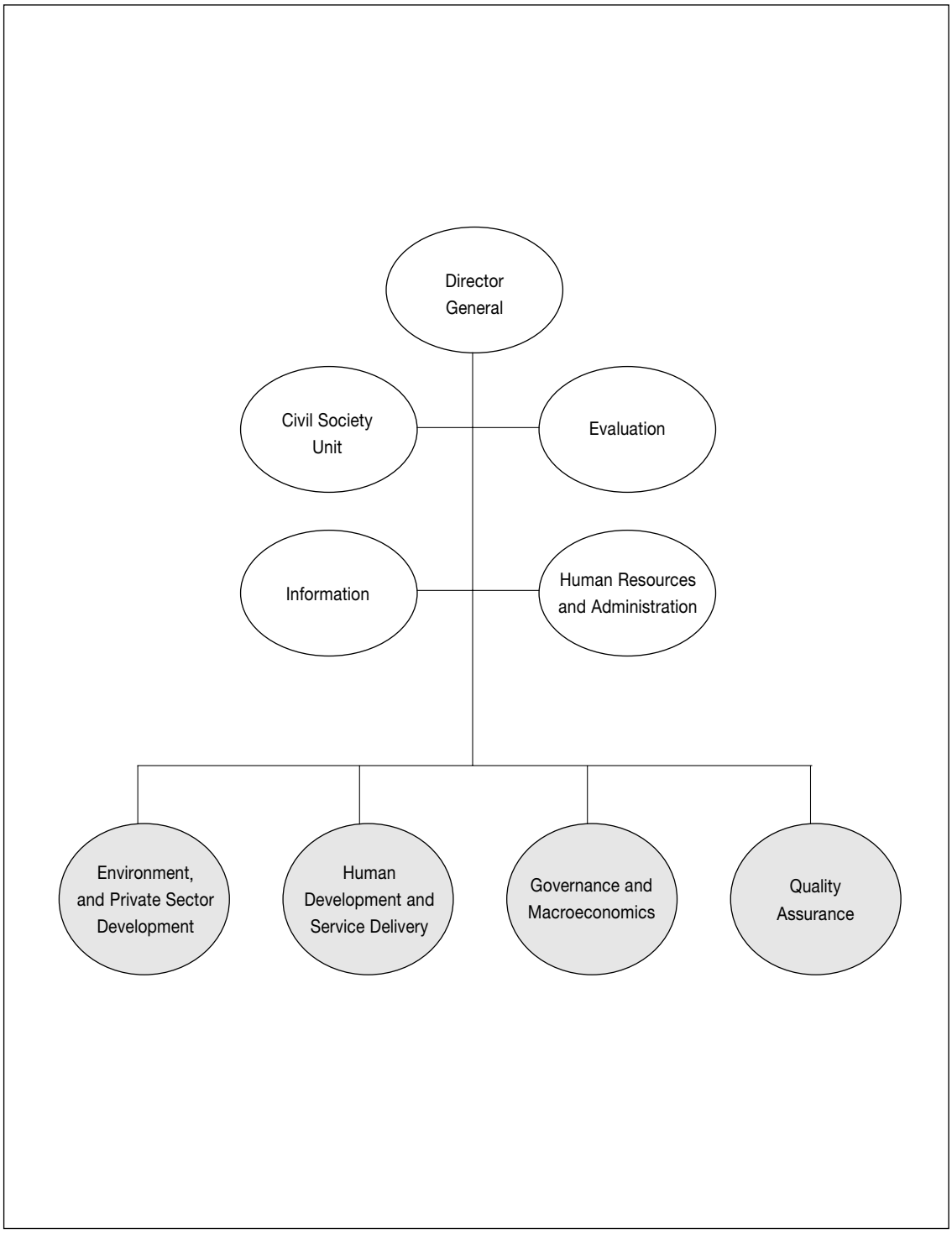

kfw
BANKENGRUPPE
Board of Managing Diectors
Secretariat of International Credit Affairs/Regional Department IV Financi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S/LIV
FC-Evaluation Department for Financial Cooperation Evaluation
FZ-E
Regional Department I Financial Cooperation with Asia
L I
Regional Department II Financial Cooperation with Sub-Saharan Africa
L II
Regional Department III Financial Cooperation with Europe,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L III
Secretariat of Domestic Credit Affairs Promotion of the Economy in Germany and Europe
KS
Asset Securitisation
KV
Equity Finance, Global Loans
K I
Start-up and SME Finance, Corporate Environmental Finance, Educaion Finance
K II
Special Credit Management
K III
Infrastructure, Housing Construction including Climate Protection, Agency Business for the Federal Government
K IV
Restructuring
RE
Carbon Fund
KLF
Special Tasks
SO
Secetariat of Management Affairs
VS
Central Environment Unit
ST-U
Treasury and Capital Markets
FM
Information Systems / Data Processing
ID
Internal Auditing
IR
Personnel
PA
Internal Consulting / Project Portfolio and Cost Management
IC
Legal Affairs
R
Accounting
RW
Risk Management and Controlling
RC
Transaction and Collateral Management
TM
Central Services
ZS
Special Tasks
SO
KFW IPEX-Bank Board of Managing Directors
X1
Acquisition, Structuring Basic Industries, Manufacturing Industries, Commerce and Health, Power, Renewables and Water, Telecommunications, New Media,Competence Centers, Products
X2
Acquisition, Structuring Shipping, Aviation, Rail and Road, Airports and Seaports, Construction Industries; Syndication and Treasury, Quasi-Equity Products
X3
Risk Management Central Functions
X4
Credit Operations, Organization and IT-Coordination
As of April 1, 2006

Ⅶ. 일본 J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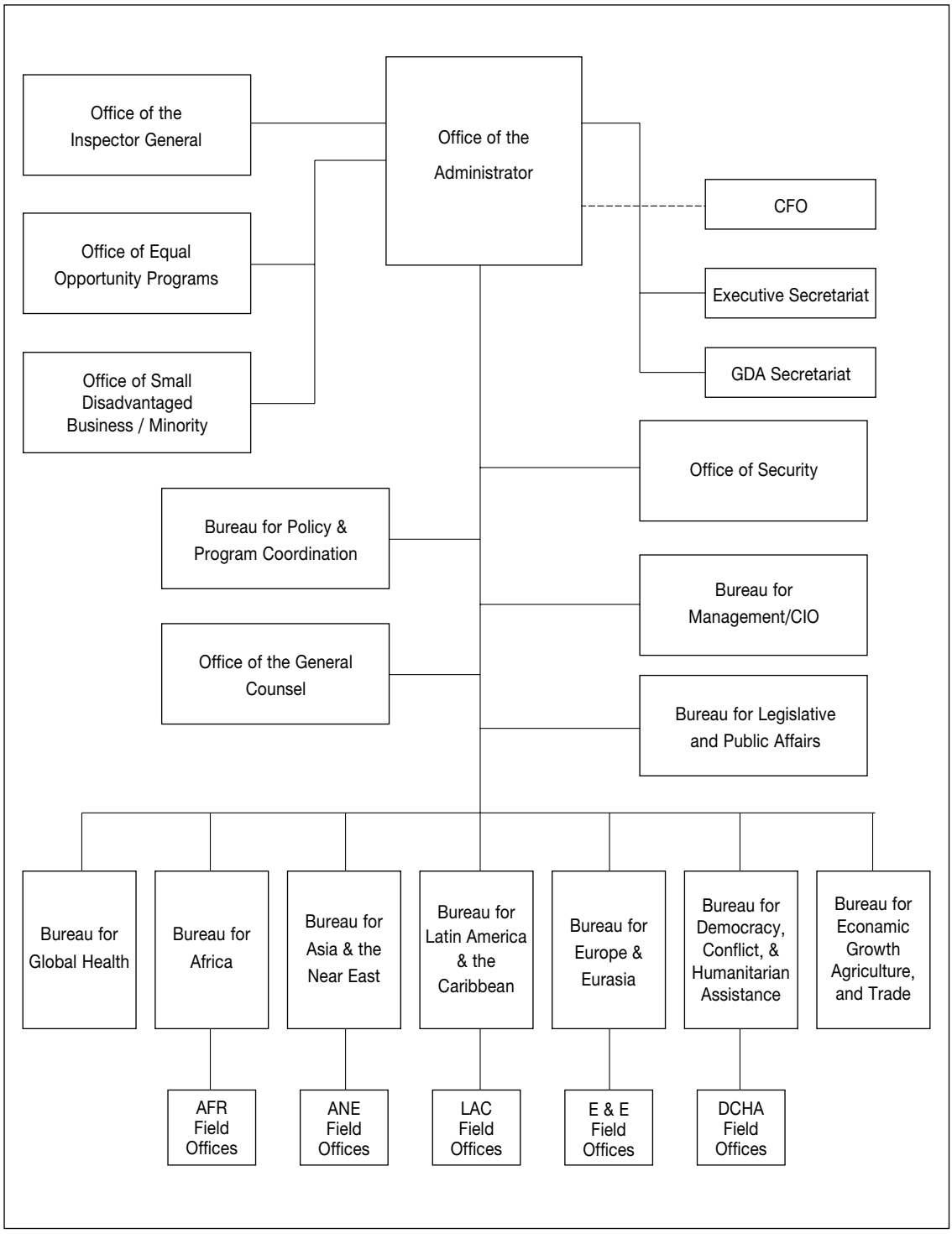
New Organization Chart of J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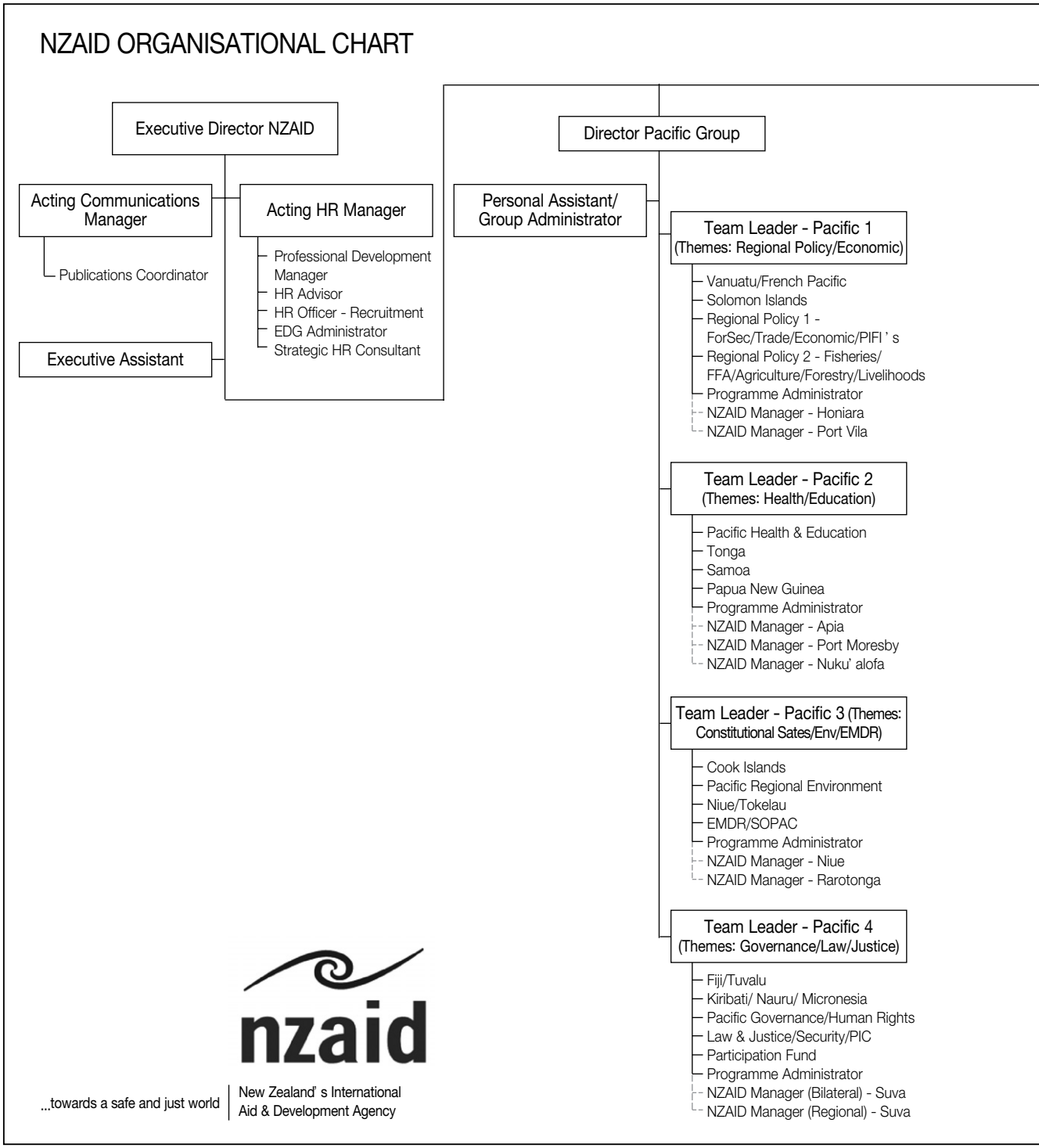
Ⅷ. 노르웨이 NOR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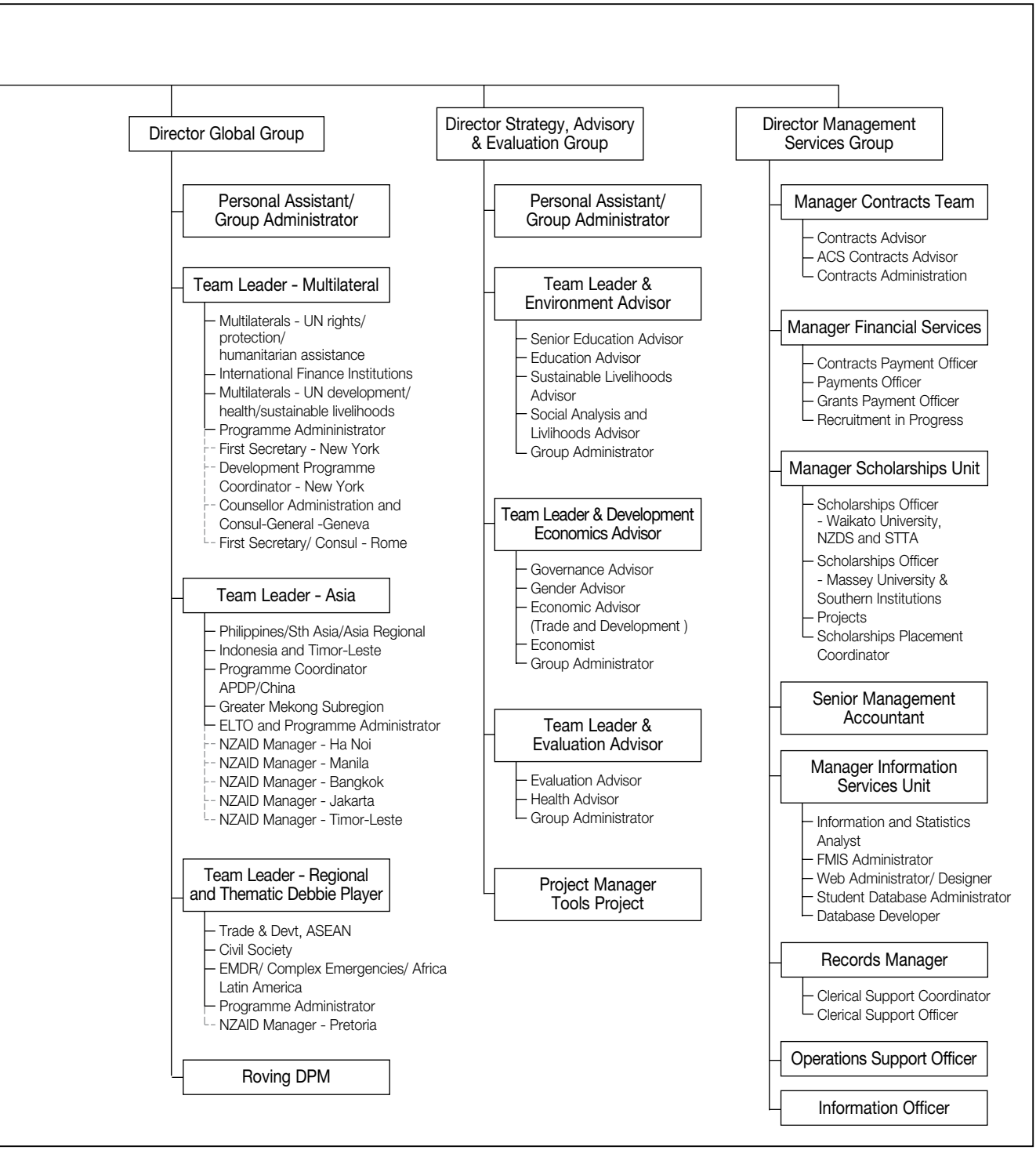

Director General
Civil Society Unit
Evaluation
Information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Environment,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and Service Delivery
Governance and Macroeconomics
Quality Assurance

Ⅸ. 미국 USAID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fice of the Administrator
CFO
Office of Equal Opportunity Programs
Executive Secretariat
Office of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 Minority
GDA Secretariat
Office of Security
Bureau for Policy & Program Coordination
Bureau for Management/CIO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Bureau for Legislative and Public Affairs
Bureau for Global Health
Bureau for Africa
Bureau for Asia & the Near East
Bureau for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Bureau for Europe & Eurasia
Bureau for Democracy, Conflict, & Humanitarian Assistance
Bureau for Econa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
AFR Field Offices
ANE Field Offices
LAC Field Offices
E & E Field Offices
DCHA Field Offices

X. 뉴질랜드 NZAID


NZAID ORGANISATIONAL CHART
Executive Director NZAID
Acting Communications Manager
Publications Coordinator
Acting HR Manager
Professional Development Manager
HR Advisor
HR Officer - Recruitment
EDG Administrator
Strategic HR Consultant
Executive Assistant
Director Pacific Group
Personal Assistant/ Group Administrator
Team Leader - Pacific 1 (Themes: Regional Policy/Economic)
Vanuatu/French Pacific
Solomon Islands
Regional Policy 1 - ForSec/Trade/Economic/PIFI ' s
Regional Policy 2 - Fisheries/ FFA/Agriculture/Forestry/Livelihoods
Programme Administrator
NZAID Manager - Honiara
NZAID Manager - Port Vila
Team Leader - Pacific 2 (Themes: Health/Education)
Pacific Health & Education
Tonga
Samoa
Papua New Guinea
Programme Administrator
NZAID Manager - Apia
NZAID Manager - Port Moresby
NZAID Manager - Nuku' alofa
Team Leader - Pacific 3 (Themes: Constitutional Sates/Env/EMDR)
Cook Islands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Niue/Tokelau
EMDR/SOPAC
Programme Administrator
NZAID Manager - Niue
NZAID Manager - Rarotonga
Team Leader - Pacific 4 (Themes: Governance/Law/Justice)
Fiji/Tuvalu
Kiribati/ Nauru/ Micronesia
Pacific Governance/Human Rights
Law & Justice/Security/PIC
Participation Fund
Programme Administrator
NZAID Manager (Bilateral) - Suva
NZAID Manager (Regional) - Suva
nzaid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New Zealand' s International Aid & Development Agency


Director Global Group
Personal Assistant/ Group Administrator
Team Leader - Multilateral
Multilaterals - UN rights/ protection/ humanitarian assistance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
Multilaterals - UN development/ health/sustainable livelihoods
Programme Admininistrator
First Secretary - New York
Development Programme Coordinator - New York
Counsellor Administration and Consul-General -Geneva
First Secretary/ Consul - Rome
Team Leader - Asia
Philippines/Sth Asia/Asia Regional
Indonesia and Timor-Leste
Programme Coordinator APDP/China
Greater Mekong Subregion
ELTO and Programme Administrator
NZAID Manager - Ha Noi
NZAID Manager - Manila
NZAID Manager - Bangkok
NZAID Manager - Jakarta
NZAID Manager - Timor-Leste
Team Leader - Regional and Thematic Debbie Player
Trade & Devt, ASEAN
Civil Society
EMDR/ Complex Emergencies/ Africa Latin America
Programme Administrator
NZAID Manager - Pretoria
Roving DPM
Director Strategy, Advisory & Evaluation Group
Personal Assistant/ Group Administrator
Team Leader & Environment Advisor
Senior Education Advisor
Education Advisor
Sustainable Livelihoods Advisor
Social Analysis and Livlihoods Advisor
Group Administrator
Team Leader & Development Economics Advisor
Governance Advisor
Gender Advisor
Economic Advisor (Trade and Development)
Economist
Group Administrator
Team Leader & Evaluation Advisor
Evaluation Advisor
Health Advisor
Group Administrator
Project Manager Tools Project
Director Management Services Group
Manager Contracts Team
Contracts Advisor
ACS Contracts Advisor
Contracts Administration
Manager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Payment Officer
Payments Officer
Grants Payment Officer
Recruitment in Progress
Manager Scholarships Unit
Scholarships Officer - Waikato University, NZDS and STTA
Scholarships Officer - Massey University & Southern Institutions
Projects
Scholarships Placement Coordinator
Senior Management Accountant
Manager Information Services Unit
Information and Statistics Analyst
FMIS Administrator
Web Administrator/ Designer
Student Database Administrator
Database Developer
Records Manager
Clerical Support Coordinator
Clerical Support Officer
Operations Support Officer
Information Officer

Overview of Program -Based Approaches(CIDA)

Prepared by Real Lavergne and Anneli Alba
Analysis and Research Division, Policy Branch
with contributions from other CIDA staff

August 5, 2003*

A. Introduction. ····153
B. Definition of PBAs ····154
C. Comparison to Other Approaches ····155
The project approach ····156
PBAs ····157
The macroeconomic approach ····157
New approaches to budget support ····157
From projects to programs ····158
D. Why PBAs? ····159
Projects vs. PBAs and the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162
E. Categories of PBAs and Qualifying Criteria ····165
SWAps ····165
Qualifying Criteria ····166
F. Funding of PBAs ····168
Project Support ····170
Program support ····171
Pooled Funding (Common Basket) ····171
Budget Support ····172
G. CIDA's Account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Under PBAs ····174
H. CIDA Experience to Date ····178

A. Introduction

In September 2002, CIDA's Minister released the document,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 Policy Statement on Strengthening Aid Effectiveness*. This came at the end of a two-year consultation process and formalized a number of adjustments in CIDA's aid policy whose impact on CIDA practice was already being felt. One of the most important adjustments being made is increased use of what are called "program-based approaches" or PBAs, in contrast to CIDA's traditional reliance on projects as a way of engag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policy shift has led to the need for a summary document on PBAs that would explain the central concepts, the modalities involved, and some of the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 This primer is meant to satisfy this need. It is intended as a general guide to PBAs for CIDA staff and others associated with CIDA programming. It is at once a basic introduction to the topic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hould be useful to newcomers to the topic as well as more seasoned travelers. An attempt has been made to illustrate the issues by referring to examples of PBAs in CIDA wherever possible.[1]

The primer is more of a guide to the issues than a how-to manual or operational guide. However, its structure parallels that of the project cycle, with chapters II, III and IV working through issues of project selection,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Complementary material is being produced elsewhere in the Agency. This includes an operational guide on contracting, payments, legal considerations and procurement when engaging in budget support, which is being assembled by CIDA's Financial Policies and Systems Section. In parallel, CIDA's Portfolio Working Group is organizing a series of events around different issues covered in the primer and will be producing case study material to illustrate these issues. More detailed coverage of operational issues arising under PBAs is available in the European Commission's *Guidelines for European Commission Support in Sector Programmes* (EC, 2003), which is frequently quoted in this primer.

This is a rapidly evolving field of analysis. The primer should thus be seen as a living document, which will be revised on an ongoing basis, as new material becomes available and as CIDA's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creases.

[1] Readers will find additional material on these examples on the PBA extranet site, the address of which appears on the title page of this document.

B. Definition of PBAs

The expression "program-based approaches" is one that has emerged relatively recently both in CIDA and internationally. However, the expression is a fairly straightforward extension of the concept of sector-wide approaches or SWAps, on which there exists considerable documentation. Although this is the first document of this type that takes PBAs as its focal point, the term PBA is increasingly used, most notably in the name of the recently formed Learning Network on Program-Based Approaches (LENPA), which brings together experts from development agencies around the world.

Covering both SWAps and "SWAp-like" initiatives,[2] PBAs emphasize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lanning in a given sector or thematic area of intervention, or under a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 PBAs are intended to support locally owned programs of development, so the word "program" in the expression refers to the program of a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 or institution, which one or more donors have agreed to support. In CIDA's understanding (2002a), that program may be a PRS, a sector program, a thematic program (such as an environmental strategy), or the program of a specific organization such a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A program and a PBA can be defined as follows:

A program is an integrated set of activities designed to achieve a related set of outcomes in a relatively comprehensive way.

A PBA is a way of engag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oordinated support for a locally owned program of development. The approach includes four key elements:

- *Leadership by the host country or organization.*
- *A single program and budget framework.*
- *Donor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of procedures.*

[2] The expression "SWAp-like" is used in CIDA with reference to initiatives covering a programming area that is not sectorally defined, but which are in other essential respects the same as SWAps.

• *Efforts to increase the use of local procedures over time with regard to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financial management,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PBAs need to be understood as highly dynamic. What matters for most purposes is the direction of change, rather than the particular level of achievement attained for each element of the approach at a particular moment. For example, the degree of leadership by the host country or organization may not be as strong as one would like, because of capacity limitations, but should be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The elements of a successful program may take a long time to develop and will continue to evolve once they are in place.

However, the question does arise how sound and comprehensive or well planned a program must be, or how much buy-in there must be by different members of the donor community, before one can speak of a PBA. We will return to this question in section E. below, where a number of criteria are proposed for determining when an initiative can appropriately be called a PBA. Where a coherent program and budget framework does not exist, or where a critical mass of donors has not yet come together to support that program, it may be more accurate to speak of a "pre-PBA," meaning an approach whose primary intent is to pave the way for a PBA where the basic criteria are not yet satisfied (EC, 2003: section 4.1).

C. Comparison to Other Approaches

One way to appreciate the implications of PBAs is by comparison to other approaches. The following table compares PBAs and two other approaches, the project approach, and the macroeconomic approach, according to four features:

• The types of results pursued and associated accountabilities.
• The type of targeting or earmarking of funds.
• The approach to local ownership and to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 The nature of collaboration with other donors.

Table 1_ Distinguishing Program-Based Approaches from Other Approaches

	Project approach [1]	Program-based approach	Macroeconomic approach
Results and accountabilities	Specific to the project	Program-wide.	Macroeconomic policy reforms and economic adjustment.
Targeting or earmarking of funds	May involve fairly detailed targeting of funds in the pursuit of project objectives.	May still involve targeting, but the intent is to move away from project targeting towards program targeting.	Funds not targeted.
Local ownership and division of esponsibilities	Projects may have a high degree of local ownership, or they may not, but most involve a high level of donor control.	PBA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ocal ownership, but include a role for donors at the program level.	Local ownership often limited. Moderate to high level of donor collaboration.
Donor collaboration	Limited donor coordination.	PBAs seek donor coordination and the harmonization of donor procedures under host-country leadership.	

[1] In the CIDA context, this includes the use of regular independently-managed projects, stand-alone technical assistance, Canada Funds projects, and projects funded using the Counterpart Funds approach.

The project approach

What distinguishes the project approach is the identification of a specific area of intervention for donor involvement, and the targeted use of funds for specific activities for which objectives and outputs and the inputs required to achieve them have been defined (Foster and Leavy: 2001: 5). Results pursued are specific to the project, and participant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 achievement of those results. Experience has shown that it is difficult to hold project managers accountable for higher-level outcomes and impacts under the project approach, because the achievement of such outcomes is usually dependent on other activities and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roject. Whereas PBAs involve a planned and coordinated approach toward the pursuit of desired outcomes, the project approach is based on a plurality of approaches, and much lower levels of integrated planning and coordination. Responsibilities are divided, and donors are likely to maintain a high level of control over their own projects, while having relatively little to say about activities lying outside those projects.

PBAs

In contrast to this, PBAs involve a joint approach to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 outcomes at the program level, and joint accountability for these outcomes. Funds may or may not be earmarked for specific activities, but the tendency under PBAs will be to reduce the specific targeting of funds by using modalities such as pooled funding or budget support. The aim is to promote the larger objectives of the program by reducing transactions costs, reinforcing local systems, and introducing a larger element of flexibility in the use of funds. The most appropriate level of earmarking under PBAs will depend on local circumstances and on the results of negotiations about programming and budgeting among the different partners involved. Local ownership is emphasized, and prime responsibility for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rests with the local institution or institutions. There is a strong emphasis on donor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of procedures.

The macroeconomic approach

The macroeconomic approach is not one that CIDA has used very much, but it is important in other aid agencies, in particular the World Bank, the IMF and the EC. Although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is approach and PBAs, the macroeconomic approach has its own particularities. For instance, the desired results under the macroeconomic approach are specific economic reforms and economic adjustment. Funds are not targeted, but instead are associated with specific policy conditionalities that are used to trigger the release of funds. Examples of the macroeconomic approach include IMF or World Bank adjustment lending, balance of payments support and some forms of debt relief or general budget support. Donor collaboration is less of an issue under the macroeconomic approach than under PBAs, because of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World Bank and of the IMF in this area and because of the limited number of donors involved.

New approaches to budget support

Debt relief and budget support in recent years have been increasingly associated with host country PRSs, and as such have taken on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PBAs. For instance,

there is some blurring of the lines between macroeconomic support and PBAs under the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where debt relief is provided upon the acceptance of a country□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by the World Bank and the IMF.

Lawson et al. (2002) speak of the "New" budget support, which has the following features:

- It is a partnership-based approach that provides untied budgetary support within a medium or long-term perspective.
- It supports a government's PRS.
- It gives prominence to institutional development objectives.
- It seeks to minimize transactions costs and to work through government systems and processes.

This paradigm provides a perspective very similar to that of PBAs, except that the focus is on a particular funding modality (budget support) and a particular level of intervention (governmentwide). In order to avoid too much conceptual overlap, it is best for our purposes to think of the new budget support paradigm as simply one way of engaging in PBAs, at the highest level.

However, the presence of general budget support should not automatically be interpreted as engagement in a PBA. According to Lawson et al. (2002: 55), "Outside Uganda, budget support continues to be seen very largely as a "macro-economic" tool . as a mechanism for transferring large-scale resources and for reaching agreement over economic and fiscal policy objectives." If this is so, the provision of budget support, even though linked to a country's PRS, may often be closer to the macroeconomic approach than to the PBA model.

From projects to programs

These various approaches are complementary, and play different roles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For example, the case for a macroeconomic approach is obvious in circumstances of economic instability and crisis, or more generally when macroeconomic policy

constraints or fiscal constraints are the primary obstacle to development.

Projects, likewise, have a role to play. Although PBA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way of doing business in most donor agencies, they are not appropriate in all circumstances. Section A in Chapter II of this primer discuss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BAs are most likely to be appropriate. Projects are particularly well adapted to situations of low aid dependence, where a "niche" approach to development may yield high returns, while requiring less coordination with other players. Projects are also appropriate in situations where program consensus does not exist, or for dealing with areas of development that do not lend themselves so easily to comprehensive programming.

In many cases, the problem is not to implement fairly well known or standard solutions that are amenable to a PBA – such as vaccination programs or school construction – but to find solutions to particular problems that are highly context specific, or to test different solutions in parallel. As Pritchett and Woolcock (2002) argue, a programmed approach to service delivery is appropriate in areas involving standardized services, but less appropriate where heterogeneous services are involved.

The international consensus is that PBAs have considerable promise as an alternative to the project approach in many cases. The following section lays out the reasons underlying this belief, and points to some of the principal limitations of the project approach identified in recent years. However, it would be an error to pretend that PBAs are a panacea, or that they are the best solution in all cases. Projects will continue to have a role . either in a stand-alone c apacity or in the context of PBAs . and the difficulties of the PBA approach itself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wareness of these realities should condition both the evolving balance between projects and PBAs in CIDA and the speed with which the transition to PBAs can be made.

D. Why PBAs?

PBAs are not an entirely new phenomenon. They are, rather, a recognition and formalization of a package of ingredients now seen as critical to ensuring the success and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That process of formalization began with the publication of the seminal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ublication,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OECD-DAC*, 1996), which articulated a vision of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partnership around development strategies owned and led by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At the heart of this vision is the idea that the way that aid is delivered, not just its content, is fundamental to its effectiveness in promoting development. This vision has been reiterated in different ways in numerous documents and pronouncements, as summarized in a recent multi - partner evaluation of the World Bank's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 Dept., 2003: 7). Launched in January 1999, the CDF expressed the new vision in terms of four cardinal principles: long-term, holistic development framework; results orientation; country ownership; and country-led partnership (*op. cit.*: 5). These are the principles that underpin PBAs.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dopts a very similar set of principles. With some adjustment for present purposes,[3] they include the following:

- Local ownership.
- Improved donor coordin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host country.
- Stronger partnerships, based on a clear definition of goals and responsibilities.
- A long-term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increased attention to institutional development, governance issu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 A results-based approach, with improved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 programs.

The shift in favour of PBAs is thus based on a growing consensus on a number of key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In CIDA, the shift towards PBAs means a move away from the

[3] The list below includes all but one of the five principles listed in Canada Making a Difference. It excludes the principle of greater coherence between the aid and non-aid policies of donor countries, which is not as relevant in the context of PBAs. It differs from the presentation in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one other way, by the addition of a principle favouring a "long-term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ourth bullet) that groups together items described in Canada Making a Difference as "three other factors of central importance."

project – based approach that has been the principal delivery vehicle of Canadian aid since CIDA was created in 1968. The case for PBAs thus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of standalone projects as a delivery vehicl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s summarized in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nd elsewhere (for example Brinkerhoff, 1991; Bolger, 2000; European Commission (EC), 2003; Lawson et al. 2002: 5–6; Takala and Marope, 2003: 16–18), these limitations include the following:

- Projects can undermine local ownership, due to the high level of control maintained by donors over the selec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is loss of national ownership was in fact one of the main findings of a needs assessment survey of 11 countries conducted by the OECD–DAC Working Party on Donor Practices (2003: 13).
- The multiplicity of projects works against the coherent programming of resources. It leads to duplication or fragmentation of effort and to imbalances in the use of resources. This is partly due to the desire of donors to ensure the success of "their" projects by investing heavily in particular areas, at the expense of other areas. Projects also tend to generate imbalances between investment expenditures, favoured by donors, and recurrent expenditures.
- Similarly, the project approach is ill–equiped to deal with contextual factors that can undermine their impact. For example, a project may involve training of government staff, but that training may serve little purpose in the absence of civil service reform ensuring that staff are motivated to use their new skills productively and to build on those new skills.
- Projects encourage the concentration of attention on operating tasks and functions (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plans and schedules, etc.) at the expense of strategic tasks and functions more likely to be emphasized under a PBA (program design, capacity building, financial sustainability,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etc.) (Brinkerhoff, 1991: 4).
- By focusing attention on accountability to donors, projects may corrode or imped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ccountability structures.

- Projects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ystems, due to frequent reliance on parallel project management structures and staffing arrangements that bypass the government. One result of this is the tendency of projects to drain high level human resources away from the public service into higher paying jobs in development projects.
- Finally, projects impose a high administrative burden on developing country organizations faced with the challenge of negotiating, managing, and reporting on a large number of projects funded by donors with different approval and reporting requirements, and differ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and calendars.

Projects vs. PBAs and the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Another way to illustrate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approach is to compare the project approach with PBAs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cited above. As Table 2 illustrates,[4] PBAs present significant potential advantages over the project-based approach, according to each of the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By providing standards against which to assess different aid instruments and approaches, the consensus principles have led to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approach and a growing international consensus in favour of PBAs.

In defending the shift to a program-based approach, the EC eloquently summarizes the issues as follows (EC, 2003: 13):

> By working outside normal government systems, in particular the systems of budget planning and execution, accounting, procur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id projects not only missed the opportunity to assist in the strengthening of government systems, but actually ended up undermining their credibility and reducing their effectiveness, even in areas of government activity completely untouched by aid. Simultaneously, the primacy given to donor demands for accountability was increasingly forcing governments to be accountable to donors rather than to parliaments and their people.

[4] See Bolger, 2000, for a similar and more detailed table comparing the project and program approaches.

Table 2_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as Applied to Projects and Programs

Principle	Stand-Alone Projects	Programs
Local ownership	Projects are often supply-led. Even when they are demand-led, they may be undertaken in response to demands from a single local partner.	PBAs are expected to be based on locally owned programs, involving a community of stakeholders.
Donor coordination	Limited donor collaboration leads to high transactions costs, possible duplication of efforts, and suboptimal identification of priorities.	Although PBAs may not reduce transactions costs in the short term, they involve a high level of donor coordination at the program level, ideally involving all of the donor community, under national leadership.
Partnerships	Projects are often managed directly by executing agencies or project implementation units that maintain control over the project and are held accountable for results.	The underlying philosophy of PBAs is that they are based on partnership and shared accountability rather than a situation in which one party controls or polices the other. Programs are intended to involve movement towards the use of local procedures and controls.
Attention to institutional development, governance issu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Projects attempt to ensure success by establishing project-specific control mechanisms. They thus attempt to bypass, rather than solve, certain institutional weaknesses.	Because PBAs are expected to rely on local procedures, attention is brought to bear on institutional, governance, and participation issues necessary to ensure success and the accountability of local institutions to their constituents.
Results-based approach	Attention is focused on the success of the projects themselves, even though other conditions necessary to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 results may not be met. One thus faces the possibility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may be successful at the project level, while failing to promote development more generally.	Under PBAs, the focus is on results at the program level. This makes it feasible to focus on broad development objectives such as those identified i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r in the PRSs of individual countries.

In summary, these critiques highlighted two fundamental problems: aid financed projects almost by definition would not use government systems and structures and secondly, the use of donor-specific approval and review processes for projects almost inevitably removed government ownership, making it difficult for government choices and priorities to rule over project selection. The negative consequences for longer-term institutional capacity were very serious:

Aid agencies have a long history of trying to 'cocoon' their projects using freestanding technical assistance, independent project implementation units, and foreign experts - rather than trying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service provision...They have neither improved services in the short run nor led to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ong run. (World Bank, 1998)

...The lessons of these evaluations have been increasingly internalised in the polici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f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financing agencies. Major efforts have been made in recent years to ensure that projects are part of a national policy and that donor coordination is improved. But such an approach is still inadequate where large numbers of projects continue to exist and where the very structures of policy making, budgeting and planning are weak.

Despite the strong case that can be made for PBAs, it bears repeating that PBAs should not be viewed as a panacea or "silver bullet." As will be explained in Chapter II, PBAs tend to be implemented in countries with low capacity. Implementation under these conditions will inevitably be problematic, and in some cases, absorption capacity has been a problem. As a result, PBAs have often been unable to disburse funds at the expected rate in the early years. Furthermore, transactions costs may actually increase in the short term, due to the cost of coordinating efforts and of adopting new management approaches (Foster, Brown and Conway, 2000: section 6.8; Lawson et al., 2002: section 3.5.1). PBAs are complex undertakings, involving partners with limited capacities and competing interests, and there should be no illusions about how easily PBAs can be implemented (see in particular Therkildsen et al, 1999; Pavignani, 2001; Riddell, 2001). As Pavignani argues, field realities call for an incremental approach that emphasizes capacity development, trust building and the progressive adoption of new mechanisms such as budget support. In this perspective, "modest initiatives within the reach of existing capacity stand a better chance of success than grandiose ones" (2001: 14).

It is not possible to review all of the things that may go wrong under PBAs in this paper, or to analyse whether and how the things that go wrong could be made right over time. However, Pavignani's general caution is a sound one, and should inspire one's reading of this primer.

Subsequent sections of this primer will clarify the conditions when PBAs may be appropriate,

and draw attention to some of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reporting and evaluation issues requiring attention.

E. Categories of PBAs and Qualifying Criteria

Sector-wide approaches (SWAps) are the best-known manifestation of PBAs. However, PBAs can be applied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other than SWAps. For example, there is no reason why a PBA could not be applied multisectorally to cover the whole of a country's PRS.

Indeed, as more and more countries have finalized PRSs,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for donors to engage in budget support at a fairly general level, in support of these strategies. This approach is not yet very widespread in CIDA. However, Agency examples include recently approved budget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PRSs in Tanzania and Ghana.

PBAs may also be applied at other levels. For instance they might involve a number of countries, as happens under the Nile Basin Initiative, in which 10 African countries are involved. Alternatively, PBAs might be applied at sub-national levels of government, for instance at the provincial or state level in large countries such as India, or at the district level, in countries trying to promote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PBAs can also be used in support of specific organizations, for example a para-governmental organization (such as the Ombudsman□s Office in Bolivia or the National Demining Institute in Mozambique), or a large NGO (such as BRAC in Bangladesh). Where NGOs are involved, it is possible that some or all of the donors might also be NGOs. An example of this can be found in the support that Zimbabwe□s Organization of Rural Associations for Progress was able to marshal under a PBA in the 1990s, which included funding from a number of Canadian and other Northern NGOs.

SWAps

SWAps deserve special attention because they were a precursor to the more general notion of PBAs, and because of their growing importance in CIDA programming. The concept of SWAps emerged from an Inter-Agency Group meeting in 1997.[5] The expression was intended to describe

[5] The Inter-Agency Group is an informal group of donor representatives involved in the health sector under Wolrd Health Organization (WHO) leadership.

a different way of engaging at the sector level, based on country leadership and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recurrent as well as investment expenditures, in comparison to the approach pursued under the World Bank-led Sector Investment Programs that preceded SWAps. [6]

The definition of SWAps that CIDA has been using is a frequently cited one developed by Foster (2000). According to that definition, a SWAp requires that:

> Funding for the sector supports a single sector policy and expenditure program, under government leadership, adopting common approaches across the sector, and progressing towards relying on government procedures to disburse and account for all funds.

This definition of a SWAp is consistent with the understanding of PBAs described earlier, except that it focuses on a specific sector and emphasizes government leadership as opposed to the more general reference to leadership by the host country or organization used in the definition of PBAs.

Qualifying Criteria

Even when there is agreement on a definition of PBAs or of SWAps, this may not always be sufficient to determine under what conditions an initiative might "qualify" as a SWAp or as a PBA for statistical purposes. Some efforts have therefore been made to elaborate on the above definition, to define the criteria that must be met before an initiative can be categorized as such. Table 3 below summarizes these efforts, and suggests a number of criteria that CIDA might use, to ensure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thinking on the subject. Table 3 provides a summary of the criteria used for SWAps by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Africa (SPA), the UK'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C, the DAC, and the UK'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A final column proposes six criteria for use by CIDA, based on criteria that are most widely accepted elsewhere. This selection excludes three less-frequently used criteria that correspond to desirable features of SWAps, but whose

[6] Some organizations use slightly different terminology, but the understanding remains much the same. For instance, the European Union and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Africa both refer to sector programs. Belgium speaks of sector support.

Table 3_ Qualifying Criteria for SWAps

Criteria	SPA	ODI	SIDA	Netherlands	EC	DAC	DFID[1]	CIDA
1. Comprehensive sector policy and strateg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2. Annual sector expenditure program and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3. Government-led donor coordination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4. Sound macroeconomic framework	Yes	No	No	Yes	No	No	No	No
5. Consistency of sector expenditure program and macroeconomic framework	Yes	No	No	Yes	No	No	No	No
6. Major donors provide support within the sector framework	Yes	Yes	Yes	Ideally	Yes	Yes	Yes	Yes
7. Donors move towards greater reliance on government financial and accountability systems	No	Yes	Yes	Yes	Yes	No	Yes1	Yes
8. Significant donor movement towards the adoption of common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2]	No	Yes	Yes	Yes	Yes	Yes	Yes1	Yes
9. Participation of key stakeholders in sector policy	No	No	No	Yes	Yes	No	No	No

1. Current agreement in DFID is that all of criteria 1, 2, 3, and 6, and at least one of criteria 7 or 8, should be met.
2. In the original table, this criterion was "Common approach to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We have adjusted this criterion to emphasize movement towards harmonization rather than an absolute level of harmonization that will rarely be perfectly achieved.
Source: DFID (2002a).

inclusion would tend to overburden the definition.[7]

CIDA would thus retain six criteria for an intervention to qualify as a SWAp. By adjusting the wording slightly, the same criteria can be used to distinguish any PBA from other forms of support, or from pre-PBA initiatives that satisfy some but not all of the criteria. This yields the following criteria:

- The existence of a comprehensive program policy and strategy.
- The existence of an annual expenditure program and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 Host partner-led donor coordination.
- Provision of major donor support within the program framework.

[7] The other criteria listed in the table include two (numbers 4 and 5) that are used by the SPA and the Netherlands, but not by other organizations. These criteria indicate the need for a sound macroeconomic framework, and relate to the SPA□s original mandate, which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acroeconomic reform agenda and quick disbursing forms of aid. Likewise, criterion 9, relating to the participation of key stakeholders in program definition and policy, points to a desirable feature of PBAs, but is not generally considered a defining feature.

- Movement towards greater reliance on local financial and accountability systems.
- Significant donor movement towards the adoption of common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Together, these six criteria establish some fairly demanding conditions of what qualifies as a PBA.[8] While the PBA concept is considerably broader than the concept of SWAps that preceded it, it remains fairly specific and can be distinguished from related concepts relating principally to the choice of funding modalities. For instance, there is a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PBAs and "institutional support" (uncoordinated budget support for a specific organization); or between PBAs and "multilateralism" (pooling of donor funds on a grant basis for particular purposes). PBAs have as much to do with the program being supported and with the nature of donor collaboration in support of those programs, as with the choice of funding mechanism.

F. Funding of PBAs

It would be wrong to associate PBAs too closely with the provision of budget support. PBAs can be financ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s illustrated by data collected by the SPA's Sector Program Tracking Survey on actual financial practice with regard to SWAps in Africa. For 2002, this data set covered 24 SWAps in 12 African countries. Table 4 indicates the proportion of total support for SWAps being provided in the form of pooled or

Table 4_ Funding Modalities in African SWAps

Funding Modality	2000 (%)	2001 (%)	2002 (%)	2002 Education(%)	2002 Health (%)	2002 Transport (%)
Pooled funding	8	11	11	7	20	0
Budget support	20	24	35	63	28	2
Project support	56	49	40	27	28	91
NGOs and other off budget support	16	16	13	3	24	7
Total, %	100	100	100	100	100	100
Total, $US million	678.2	791.2	1070.6	331.9	484.2	162.1

Source: SPA Secretariat (2003)

[8] A suggestion has been made for an additional criterion relating to the relative level of comprehensiveness that a program must have before an initiative can be counted as a PBA. Unfortunately, there is no ready way to apply such a criterion,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what counts as "relatively comprehensive" is bound to be a highly subjective. It can be argued that the six criteria identified above have considerable value in their own right, even without the addition of a seventh one.

common basket funding, budget support, projects, and funding channelled through NGOs or other forms of off-budget support (e.g., technical assistance or other off-shore payment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budget) (SPA, 2003).

According to these data, 11 percent of support for SWAps was channelled through pooled funding in 2002. Budget support accounted for another 35 percent. However, the majority of funding . 53 percent . continued to be provided in the form of project support or support for NGOs and other forms of off-budget support. Table 4 also shows some interesting differences across sectors. Fully 70 percent of funding to the education sector took the form of pooled funding or budget support in 2002; this fell to 48 percent for the health sector; and dropped to only 2 percent in the transport sector, where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tend to dominate.

Not shown in the table, but no less interesting, ar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one donor to another. For instance, France and Japan, respectively, continue to disburse 100 percent and 97 percent of their support to these SWAps in the form of projects, while USAID disburses 72 percent in the form of support to NGOs and other off-budget support. The main providers of budget support and pooled funding were the European Union (EU, 45 percent), the World Bank (57 percent), DFID (65 percent), and the Netherlands (71 percent).[9] CIDA provided 48 percent of its funding in the form of budget support or pooled funding, but its absolute level of funding for the sector programs under review was relatively small.

This table also shows the trend in favour of increased pooled funding and budget support, with the latter showing the strongest growth, going from 20 percent in 2000 to 35 percent in 2002.

This trend shows up very strongly in the case of Uganda, where the share of budget support as a proportion of all concessional lending and grant funding has grown from 19.2 percent in 1998/99 to 56.4 percent 2002/03 (projected) (Lawson et al., 2002: 27-28 and 66).[10]

[9] These shares, taken from Table 24 in SPA, 2003, are for 2000-04, based on actual data to 2002 and projections for 2003 and 2004.

[10] As a highly aid-dependent country where budget support is thought to have worked fairly well, Uganda is a particularly dramatic example. Data in Lawson et al. (2002, 66) show that Uganda received fairly high level of budget support of a macroeconomic character even in the early 1990s (up to 35.8 percent in 1993/94). This declined in the mid-1990s, and began to grown again beginning in 1998/99, as part of the shift toward the PBA mod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Support

These data confirm that there are many ways of channelling funds to recipients under PBAs. Project support in particular continues to occupy an important place. However,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stand-alone projects and those undertaken under PBAs. Project support in the context of a PBA should not imply business as usual. The adjustments in approach that are required follow from the analysis of the limitations of stand-alone projects presented earlier, and from the consensus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These adjustments include the following:

- The insertion of projects in a locally-owned program of development.
- Collaboration with other donors under host-country leadership, in ways that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 Relationships increasingly based on principles of partnership at the program level.
- Increased and substantial attention to local institutional development.
- Use of local procedures wherever possible.
- Focus of attention on program-level results.

For donors, this implies an important change in the way projects are delivered. One way of delivering project aid – the conventional way for CIDA – is through parallel systems, where donors or executing agencies lead the design and appraisal of the project, decide the inputs to be provided, and use their own disbursement and accountability procedures. In contrast, project support under PBAs should preferably make use of local institutions. This means making use of government systems or those of civil society or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in the host country. The channelling of support through local institutions helps to strengthen local ownership and promotes the reinforcement of local procedures and accountability systems. Increasingly, there is recognition of the need to use expatriate expertise in different ways than has been done in the past, to support local institutions rather than to actively manage all aspects of a project.

Program support

Project support can be contrasted with program support, which involves contributions of a more general nature that can be used flexibly for different purposes as part of a pool of funds. Program support can take several forms, based on combinations involving the following distinctions:

- First, program support may be on-budget or off-budget,[11] and may or may not be managed using local procedures.
- Second, program support involves different types of earmarking. Earmarking may be for a particular sector or sectors, or might be for specific types of activities within a sector. At the other extreme is general budget support, which theoretically does not involve any earmarking, although in practice, donors providing general budget support may still wish to ensure that their funding is additional to projected government expenditures in key sectors, by attaching what are called "additionality" conditions to their support.

Program support under PBAs is generally provided either as pooled funding or as direct budget support.[12]

Pooled Funding (Common Basket)

Pooled funding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 number of donors agree to contribute to a common fund or basket. Pooled funding usually involves the use of a holding account reserved for particular purposes identified b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donors participating in the pool. An example of this is the pool fund established in the Mozambique education sector in 2002.

Pooled funding requires clear and harmonized procedures that are observed by all donors participating in the fund. Harmonization and coordination of procedures in pooled funding can be carried out in one of two ways. One way emphasizes the use of government procedures. In

[11] On-budget means that program support is presented and included in the government budget.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on-budget concept, see Pavignani et al. 2002: 22-24.

[12] See EC, 2003, section 4.3 for a discussion of the basis for choosing among different funding modalities.

this case, donor flows are integrated into the government budget system. In this case, the government itself manages and accounts for donor funds, preferably using its own procedures. This focuses the efforts of stakeholders on improv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The second way is to use a single set of donor procedures, for example the World Bank's procedures when it manages funds on behalf of the other co-financing donors under a trust fund arrangement (Foster, 2000).

The EC (2003: 50) summarizes the potential benefits of pooled funding as follows:

- "It may reduce transctions costs by introducing common reporting, disbursement, accounting and procurement procedures for activities which would otherwise be funded through a number of discrete projects.
- By bringing the activities of several donors into one funding arrangement, it may facilitate the process of harmonization with government policies and expenditure programming systems.
- It may provide a useful "learning ground" for building confidence between government and donors and thus facilitate the move to direct budget support and the use of government procedures."

However, the EC also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pooled arrangements impose transactions costs of their own and that these can easily be excessive relative to the gains achieved, unless relatively simple formula are adopted. They suggest that careful assessment should be made of the possibility of moving directly to budget support (EC, 2003: 51).

Budget Support

Program support that is provided directly to host-country institutions to be spent as part of their budgets using their own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is referred to as budget support. Although budget support also involves the pooling of funds, it is distinguished from pooled funding by the mixing of donor funds with those of the recipient, and the greater flexibility that thus accrues to the recipient in the use of those funds. Budget support is sometimes

referred to more specifically as direct budget support (Foster and Leavy, 2001). In this primer, the terms budget support and direct budget support are used interchangeably.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providing budget support. These have been well articulated by DFID, which has moved strongly toward this form of support. In 2001/02, direct budget support accounted for about 25 percent of total DFID disbursements in country programs (Teuten, 2002). The potential advantages of budget support identified include the following (ibid.):

- Further reduction of transactions costs due to the pooling of both donor and government funds.
- Recognition of recipient government 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the government to manage spending rationally.
- Encouragement of a greater results orientation by the government.
- Increased attention to policies and priorities as opposed to operational matters.
- Increased attention to systemic government weaknesses and cross-cutting reforms.
- Promotion of accountability within the recipient country.
- Greater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funding.

Budget support raises a number of concerns regarding the soundness of host-institution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because donors need to ensure that funds will be used as intended.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engage in budget support thus requires careful assessment of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of a country□s commitment to sound policies, of its capacity to deliver on results, and of the organizational and incentive structures that shape decision-making in the host country (Graeme, 2001: 4; Lawson et al., 2002: xi). One of the main conclusions of the Lawson et al. study on budget support (2002: x) is that □few, if any, of the postulated positive effects of budget support are automatic.몸 Budget support needs to be accompanied by work on crosscutting administrative issues, on local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probity, and at the sector level (*ibid.*).

Donors' fiduciary concerns about budget support are legitimate, but bypassing government

systems only perpetuates the problem of weak institutional capacity. Accordingly, donors represented in the SPA have established the Addis Ababa principle favouring the use of government systems whenever possible. The principle, enunciated in November 2001, reads as follows:

> All donor assistance should be delivered through government systems unless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the contrary; where this is not possible, any alternative mechanisms or safeguards must be time-limited, and develop and build, rather than undermine or bypass, government systems.

An intermediate solution to the provision of budget support is for donors to take responsibility directly for the delivery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included in the government budget. In this case, the funds are managed outside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framework. This approach may be adopted for expediency or as an interim measure when fiduciary considerations militate against the use of government procedures. Examples in CIDA include much of our support for the Bangladesh health SWAp, and support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Nicaragua.

G. CIDA's Account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Under PBAs

How CIDA engages in PBAs as both donor and partner depends to a considerable extent on how it interprets its account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towards Parliament and the Canadian taxpayer. This section provides some discussion of how to approach these issues under PBAs (based on Lavergne, 2002b).

As was pointed out in a recent issues paper drafted for CIDA,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recognised in discussions of accountability is that there are several levels or types of accountability (Schacter, 2001). That paper identified three levels. In fact, there are many more than that, if one considers the different agents that may be involv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executing agencies that intermediate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and the different accountabilities that exist as part of any management hierarchy. However, for

present purposes, it is useful to consider four important and fundamentally distinct levels of accountability, all of which are important to the succ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13]

- CIDA's accountability to the Canadian government.
- The accountability of the recipient to CIDA.
- The accountability of developing country institutions to their own constituencies.
- CIDA's accountability to the recipient and to other donors.

Th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has defined modern accountability as follows (OAG, 2002: 5):

> Accountability is a relationship based on obligations to demonstrate, review, and take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both the results achieved in light of agreed expectations and the means used.

Accountability for CIDA is thus an obligation associated with stewardship over resources entrusted to it. A key concept here is that of "agreed expectations." What are these expectations? The precise answer depends on one's understanding of accountability. whether one takes a bureaucratic or rules-based approach, or a results-based perspective as currently advocated by Canada's Treasury Board and Auditor General's Office. Taking the latter perspective, the obligations entrusted to CIDA can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following:

- Striving for results.
- Managing risk and uncertainty to maximize expected results, using a portfolio management approach.
- Taking a non-bureaucratic approach to rules and regulations that promotes innovation, learning, and effectiveness.
- Making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resources.

[13] These four levels correspond to the three levels identified in the issues paper mentioned above, plus CIDA's accountability to recipients and other donors.

• Demonstrating performance in terms of all of the above.

Demonstrating performance is an important part of accountability. Questions arise about demonstrating performance under PBAs, because of how difficult it may be to attribute outcomes to any particular party□s contribution. Resolving these questions requires that a proper distinction be made between *demonstrating performance and demonstrating results*. Although CIDA is accountable for results, performance cannot be demonstrated only by reporting on higher-level outcomes over which donors often do not have very much control. Demonstrating performance is about telling the story in terms of CIDA's contribution to outcomes. This is not just a story about results, but also about what the Agency is doing to achieve those results. It should include reporting on strategy, risk management, compliance, efficiency, and cost effectiveness. Ideally, reporting should combine information on results with information on each actor's own performance in contributing to those results.

Two fundamental features condition donor accountability for results under PBAs: the fact of working in partnership with others, and the principle of local ownership. The principle of partnership is fundamental, because if donors are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with local institutions, it becomes much more difficult to assign credit or attribution for particular results. It thus becomes imperative to think in terms of joint responsibility and joint accountability for results. Although this does not absolve each party from taking responsibility for its own performance, the measurement of performance will have to be adjusted to the circumstances, and should include an assessment of how each party contributed to the efforts of the partnership as a whole.

The principle of local ownership also has major implications for how donors think about accountability for results, because there is an obvious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 of local ownership, and the traditional attempt to ensure results by incorporating all of the necessary controls and resources to guarantee success under the project approach. Under a local ownership model, CIDA's role becomes a catalytic one that addresses issues of sustainability by respecting local conditions and resource limitations. Controlling for results is actually contrary to the aims of promoting local ownership and detrimental to sustainability of results over the

long term, and donors must recognize the cost, in terms of lost opportunities for learning by doing, when donor control is imposed over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 interventions. Releasing controls in a way that is respectful of local ownership does not imply an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Rather, it involves recognition of certain responsibilities that might have been less apparent in the past. It involves a recognition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local ownership cannot be achieved using a control-based mod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model involves some new accountabilities . responsibilities for which CIDA needs to hold itself accountable, and for which the Auditor General and Parliament, even recipient country partners, should be holding CIDA accountable. Project documentation should speak to how CIDA will address these responsibilities. Among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to the fore under PBAs are the following:

- Making strategic choices about engaging in PBAs.
- Adopting new strategies for risk management that involve an optimal balance between donor control and local control, and that promote rather than hinder local ownership.
- Promoting the accountability of local institutions to their own constituencies.
- Promoting local ownership.
- Promoting the enhancement of local capabilities.
- Engaging in collaborative procedures and behaviour that enhance partnerships and coherence, and reduce transactions costs.

In a recent workshop on accountability under PBAs held in CIDA on April 1, 2003, representatives of Canada' s Auditor General' s Office and Treasury Board identified a number of indicators of sound management that they would look for in assessing CIDA□s participation in a PBA. These included the following:

- Quality of the institutional analysis or "readiness assessment" conducted with respect to the recipient institution.

- Justification for the choice of PBA-based support.
- The clear and transparent articulation of the elements of results-based management: clarity of purpose, articulation of realistic targets, allocation of appropriate resources, articulation of roles, responsibilities and accountabilities (including areas of shared accountability) and identification of suitable indicators for assessing progress.
-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to assess and manage risks.
- Details of collaborative arrangements with other donors and of CIDA's contribution to the harmonization of donor practices.
- Demonstration of results and assessment of CIDA's contribution to those results.
- What CIDA is doing to promote the accountability of host partners to their own constituents.
- Evidence of good judgement and of the application of lessons learned in the evolution of support for the program.

H. CIDA Experience to Date

CIDA'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PBAs is relatively recent, considering that the original discussion paper promoting a shift to new programming approaches goes back only to the fall of 2000. Indeed, the official policy statement announcing the movement towards PBAs was made very recently, in September of 2002. However, the Agency has mobilized quickly since 2000 to develop a number of initiatives under the PBA umbrella. Although the proportion of CIDA disbursements being made under this mode today remains modest due to the time lags involved, a large number of important initiatives have already been approved.

The Agency does not have a complete inventory of these initiatives – partly because of inevitable ambiguities about what "counts" as a PBA. However, CIDA's PBA network extranet site lists 26 PBAs currently operational or under development in the Agency. This list is reproduced below as Table 5. It includes 12 SWAps, eight of which cover primary education in different African and Asian countries. It also includes two examples of general budget support in favour of Tanzania's and Ghana's PRSs. The other initiatives listed include a wide range of efforts, including for example the Nile Basin Initiative mentioned earlier, a program in Malawi

to combat HIV/Aids, and support for the Ombudsman's office in Bolivia.

Experience with PBAs is accumulating, and lessons are being learned and shared through both informal and formal arrangements in CIDA, such as the PBA network, the Working Group on Budget Support, and the Portfolio Working Group, charged with drawing lessons from examples of innovative programming in the Agency. CIDA's policy is to emphasize the use of PBAs in a limited number of countries that are poor but committed to improved governance and the effective use of resources.

Table 5 _ List of PBA activities currently approved or being developed in CIDA

Region	Initiative	Type of support	Status
Africa and Middle East	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Budget Support	General support for PRSP	Approved
	Tanzania Poverty Reduction Strategy Budget Support	Multisectoral support for PRSP	Approved
	Burkina Faso - Education	SWAp	Approved
	Ghana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SWAp	Under development
	Mali - Education	SWAp	Operational
	Mali - Reproductive Health and Population	SWAp	Submitted for approval
	Mozambique - Education	SWAp	Approved
	Senegal - Education	SWAp	Under development
	Tanzania - Education	SWAp	Submitted for approval
	Uganda - Education	SWAp	Operational
	Zambia - Education	SWAp	Under development
	Malawi - HIV/AIDS	Subsectoral	Operational
	Nile Basin Initiative	Regional	Operational
	Mozambique - Institute for National Demining	Organizational	Operational
	Ghana District - Wide Assistance Program	Subnational	Under development
Latin America	Nicaragua -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ubsectoral	Operational
	Bolivia - Ombudsman' s Office	Organizational	Operational
	Caribbean Regional Epidemiological Centre (CAREC)	Regional	Operational
	Peru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Organizational	Operational
Asia	Bangladesh - Health and Population	SWAp	Operational
	Bangladesh - Education	SWAp	Under development
	India - Energy Infrastructure Services Project - Phases I & II	Sub-national	Operational
	Bangladesh - BRAC (Primary Education)	NGO program	Operational
	Bangladesh - Proshika	NGO program	Operational
	Vietnam - Primary Education for Disadvantaged Children	Subsectoral	Approved

Acronyms

BRAC	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
BMZ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AREC	Caribbean Regional Epidemiological Centre
CDF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EA	Canadian Executing Agency
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CFAA	Country Financial Accountability Assessment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AMEB	CIDA/Africa and Middle East Branch
CONTACT	Country Assessment i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DANIDA	Royal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EC	European Commission
EU	European Union
GTZ	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V/AID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LDC	Least Developed Country
LENPA	Learning Network on Program-Based Approaches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AG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World Bank)
PBA	Program-Based Approach
PEFA	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FM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PR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RBM	Results-Based Management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PA	Strategic Partnership with Africa
SWAp	Sector-Wide Approach
TBS	Treasury Board Secretariat of Canada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회의 결과

I. 핵심 요지

■ Aid for Trade의 DDA 협상에 대한 기여방안과 관련, AfT가 시장접근 기회를 개도국/LDC들이 실제로 활용할 있도록 공급측면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조정비용(adjustment cost)도 AfT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AfT가 DDA 협상 자체와는 de-link되어야 하며, DDA의 level of ambition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참가자들은 AfT 수혜대상 분야 · 범위 및 동 선정기준, 재원조달 등 관련 Aid for Trade의 운영 모델리티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AfT가 비-LDC 취약 개도국 지원, 민간업계 육성 등에도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한편, Aid for Trade를 위한 전체 재원수요가 매우 클 것이므로 지원분야 선정시 수혜국 스스로가 추가 개발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aid"가 아니라 "investment"의 개념에서 AfT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

■ Stiglitz 교수는 Integrated Framework 등 기존 메카니즘의 강화, 추가 재원 확보, WTO를 활용한 구속적 지원 약속 및 이행,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운영체제 등을 내용으로 AfT 실행을 위한 Global Trade Facility를 설치하는 구상을 제시함.

- 참가자들은 대체로 AfT의 필요성, 재원조달,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관련 사항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WTO를 통한 지원의 구속적 약속 및 이행"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 민간 부문 참가자들은 AfT의 성과를 위해 "Developing African Supply Chains for AGOA"의 예와 같은 민간과의 파트너쉽이 중요함을 강조함.

II.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무역을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통합, 특히 DDA 차원에서 시장접근의 기회를 개도국/LDC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Aid for Trade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세계은행/IMF, WTO(Aid for Trade Task Force), OECD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방안 모색을 위한 유용한 논의의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됨.

■ 개발협력의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coher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양자협력에 더하여 다자 개발협력 노력에 대한 참여 및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등 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정보통신 등 인프라 구축, 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교육 지원, 인적자원개발, 우리나라 개발경험 공유 등 Aid for Trade의 핵심요소인 공급능력 배양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세계은행/IMF, UNDP, WTO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협력사업을 Aid for Trade의 틀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 Integrated Framework 및 Aid for Trade에 대한 재원기여 방안도 검토

III. 의제별 논의 내용

1. Aid for Trade의 DDA 협상에 대한 기여방안

가. 발표 내용

■ 세계은행 대표(Bernard Hoekman)는 (1) AfT가 DDA 협상의 개발측면에 기여하는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AfT 아젠다는 WTO 범위 밖의 개발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며, (2) 무역자유화에 따른 조정비용 관련, adjustment assistance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며, (3) DDA에 따른 조정비용의 크기는 크지 않을 것인 바, WTO 관련 AfT는 WTO 협정 및 약속(commitments) 이행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함.

- 아울러, 아프리카 내륙국의 경우 수출액의 30%가 운송비용이며, 미국 볼티모어에서 Durban(남아공)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2,500임에 비해 볼티모어에서 Durban 경유 Mbabane(스와질랜드) 까지의 운송비용이 $12,000에 달하는 점 등을 예를 들면서 아프리카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IMF 대표는 DDA 협상결과 이행을 위해 AfT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DDA 협상 자체와는 de-link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AfT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개발 전략과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함.

■ South Center 대표(Samuel Asfaha)는 DDA 협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AfT의 요건으로 (1) 충분한 수준의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신규 재원 투입, (2) 개도국의 DDA 협상참여 또는 개발정책과 관련한 조건 (conditionality) 부과 금지 (3) 공여국이 아니라 수혜 개도국에 의한 우선 순위 설정, (4) 효과적인 AfT 이행 점검 메카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공급측면 능력배양 이외에도, 특혜잠식, 국제식품가격 상승, 관세수입 감소, 고용 등 생산요소 관련 비용, 표준 등 요건 준수비용, WTO 협정 이행비용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조정비용(adjustment cost)도 AfT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나. 논의 내용

■ 이집트는 시장개방을 이행하는 국가에게 AfT가 주어져야 하며 자유화에 따른 조정 및 이행비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능력배양 이슈는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콜롬비아는 AfT는 자유화를 이행하는 국가에 한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

■ 코스타리카는 개발의 요소로서 시장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혜잠식은 일부국가의 일부품목에 한정된 문제에 불과하므로 특혜잠식 문제에 대한 myth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함.

- 케냐는 시장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fT가 시장접근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언급

2. Aid for Trade에 대한 개도국의 기대

가. 발표 내용

■ Senadhira 당지 스리랑카 대사는 AfT가 최근 폭넓게 논의되어 왔으나, 어떻게 동 메카니즘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고, 우선 AfT의 주요 수혜대상(primary target group)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홍콩각료선언 제57항은 AfT의 목표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등 AfT가 LDC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미국, EU 등에 특혜시장접근이 없는 일부 아시아 개도국들은 LDC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 현재 LDC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Integrated Framework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비-LDC 개도국에도 AfT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arrangement)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적 능력배양에 추가하여 민간 수출업계를 육성하는 데 AfT 자원의 일부가 투입되어야 함을 지적

■ UNDP 대표(David Luke)는 AfT 관련 협의 프로세스에서 개도국 이해 반영문제, 새로운 수혜 조건(conditionality) 부과 여부, 개도국의 DDA 협상 참여 유도를 위한 선진국의 "buy-out" 시도인지 여부, 추가재원 투입여부, Aid for Trade와 Aid for Development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모델리티는 어

떻게 될 것인지 등을 AfT와 관련한 개도국들의 우려 및 관심 사항으로 지적함.

- 한편, AfT의 대상으로 공급능력 배양 등 무역관련 능력배양과, 특혜잠식 및 협정 이행 비용 등 조정비용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UNDP의 AfT 관련 활동은 무역관련 능력배양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소개

■ Ms. Hilde Johnson 전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은 EU의 EBA 등 특혜시장접근 부여가 LDC의 수출확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생산능력 배양,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빈곤감소전략에서 무역의 주류화 등을 위한 AfT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조정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종의 compensation으로 AfT와는 별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AfT 재원은 무역능력배양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원의 규모확대, multi-year commitment 등을 통한 예측 가능성 증대,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원조달 메카니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나. 논의 내용

■ 방글라데시는 DDA에서는 LDC가 추가적인 관세감축 의무가 면제되나, 국제금융기구(IFIs)는 지원조건으로 WTO 이상의 무역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coherence 부족의 사례로 지적하면서, coherence의 중요성을 강조함.

■ IDB 대표는 AfT를 통한 공급측면 능력배양 논의시 민간업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스리랑카는 AfT에 민간분야 참여문제 관련, AGOA에서 초기단계부터 민간분야를 참여시켰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Johnson 전 노르웨이 장관은 AfT 활동, 수혜기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영연방사무국 대표는 시장 메카니즘만으로는 적절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지역 인프라(regional infra) 구축 등에 AfT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3. 효과적인 Aid for Trade의 요소

가. 발표 내용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

■ AfT의 원칙으로 추가적인 지원 및 재원 투입(additionality), WTO에서의 commitment 및 구속적 이행 메카니즘 등을 활용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conditionality 없이 수혜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전략에 통합(country ownership), 공여국간 공조 강화 등 일관성(coherence), 공공투자 · 기업육성 · 기업환경 개선 등 민간업계 지원(private sector), 프로젝트 성격 및 수혜국 여건 등 상황에 따른 무상지원과 대출의 활용(grants vs. loans) 등을 제시함.

■ 개도국들은 재정수입 감소, 국제식량가격 상승, 특혜잠식, 이행비용 등 DDA 협상에 따른 더 큰 조정비용에 직면하고 있음.

■ LDC의 시장접근성 저하는 관세장벽이 아니라 인프라부족, 기술표준, 자본부족, 열악한 기업

환경 등에 더욱 기인하는 바, 정책능력 및 국내 제도 발전, 금융 · 기술 · 지식 등 기업발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 AfT 실행을 위한 Global Trade Facility(GTF) 설치를 제안함.

-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Integrated Framework를 단일 기구를 통한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메카니즘 강화
- 기존 약속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DDA에서 binding한 지원에 합의하고 이를 WTO를 통해 이행
- GTF를 세계은행에 설치하여 세계은행의 in-country presence 등을 조직, 경험 활용
-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관리 · 운영체제 구축

나. 논의 내용

■ 세계은행 대표는 AfT 지원에서 국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객관적인 지원 및 accountability가 중요하며 conditionality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WTO는 이행 기능보다는 투명성, 정보 및 지식 제공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IMF 대표(Jean-Pierre Chauffour)는 AfT의 필요성, 재원조달,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등과 관련한 Stiglitz 교수 발표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다만 WTO의 구속적 메카니즘을 활용해 AfT를 이행하자는 방안은 법적구속력 있는 원조 의무 부담에 대한 공여국들의 거부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임을 지적함.

- 아울러, AfT 관련 IMF의 주요 기여 분야는 (1) 무역개혁에 따른 조정비용 평가 등 analytical support 및 정책대화, (2) 관세인하의 재정적 영향, 관세 및 세제 개혁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 (3) 금융지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Stiglitz 교수는 자유화 약속뿐만 아니라 지원 약속도 bind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Global Trade Facility 설치를 통해 세계은행/IMF의 governance의 민주성 부족을 극복하고 개도국의 이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함.

- 한편, AfT 재원이 교육 등 다른 분야 개발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수파차이 UNCTAD 사무총장은 AfT의 진전방향을 아직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동 논의가 DDA 협상의 level of ambition의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AfT의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DDA 이후에도 개발정책에서의 무역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해 무역 관련 지원 메카니즘은 계속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WTO에서의 AfT Task Force 논의시 coherence 제고를 위한 Advisory Group 구성 방안 제안

■ IMF는 AfT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fT에 대한 공통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디오피아는 개도국/LDC들이 AfT에 큰 기대

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AfT의 수혜범위가 폭넓고 다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며, WTO 가입 프로세스에 있는 LDC들도 AfT 수혜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룩셈부르크는 국제시장 진출 능력이 부족한 빈국의 대다수 생계농에게는 국내시장, 지역내 시장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적 · 지역적 인프라 구축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함.
- 모리셔스는 특혜잠식 등이 일부국가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그러한 조정과정에서 국제지원이 핵심적임을 강조함.

4. Aid for Trade와 공급측면 제약 극복 및 구조조정 비용

가. 공급측면 제약 극복

- 세계은행은 인프라 구축, 규제비용 등 거래비용 감소, Working Capital 등 자본에 대한 접근, 선진국의 기술 · 위생기준 등 장벽 극복 등을 공급측면 제약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좀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함.
- IDB 등은 수출상품의 경쟁력 향상 및 마케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AfT에 대한 이론적 · 정책적 논의보다는 수출잠재력이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동 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무역장벽 완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스리랑카는 AfT가 개발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 AfT의 역할에 대해 현실적인 ambition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나. 구조조정 비용

- UNCTAD 사무국 대표는 개도국의 경우 조정비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나 어떠한 조정비용에 대해 AfT를 통한 지원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조정비용 문제는 DDA 뿐만이 아니라, WTO 협정 이행, 자발적 자유화, 지역무역협정 등에서도 계속 제기될 사항이므로 우선순위 선정 등 조정비용을 어떻게 AfT 패키지에 포함시킬 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IMF는 관세인하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의 경우 정부 재정수입은 감소되나 수입품 가격인하로 인한 혜택은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등 조세체계 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우간다는 LDC라고 하더라도 LDC와 같은 공동관세지역에 속하는 비-LDC가 관세인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동 LDC도 관세인하의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함.

[자료: 주제네바대표부]

Ⅳ. 현장의 목소리

1. 대이라크 개발원조의 성과와 한계

2. 한민족 복지재단 소개

대이라크 개발원조의 성과와 한계
– 주요 공여국과 KOICA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손 성 일 / KOICA 이라크사무소

1. 들어가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함께 시작된 이라크 재건 지원이 벌써 4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KOICA를 비롯한 많은 선진 공여국과 원조기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인도적지원과 재건지원을 펼쳐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라크 지원계획과 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이라크 지원노력이 이라크인들에게 실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06년 3월 17일자 한겨레 기사는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이라크 재건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바그다드에는 단 한 대의 크레인도 없다. 곳곳에 검문소가 세워져 만성적인 차량정체만 계속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라크 재건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KOICA의 이라크 지원사업은 그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부지런한 대외활동, 가시적인 성과물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인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라크 내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평가작업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국별 · 분야별 사업 프로그래밍이라는 KOICA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과 더불어 이라크 재건지원의 새로운 전환기를 앞둔 지금, 미흡하나마 이라크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사업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주요 공여국과 KOICA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이라크 개발원조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KOICA의 중점사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이라크 치안사정과 정세 불안으로 인해 평가를 위한 충분한 활동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그간 나온 각종 대내외 보고서 및 자료를 기초로 하였음을 서두에 밝혀둔다.

2. 이라크 개발원조의 실시 여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계속되는 이라크 정치 · 사회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해 이라크 지원은 난항을 겪어 왔다. 이라크 개발원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기도 한다. 이라크 지원사업을 평가하기에 앞서 이라크 지원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피는 일은 그 성과와 한계를 공감하는데 우선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라크의 정세와 치안상황의 변화를 살펴보자.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함께 동맹군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지속되어 오던 군정이 2004년 6월 이라크 임시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라크를 통제했다. 이 기간동안 이라크는 긴급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선진 원조기관들의 활동이 빠르게 전개되었고, 이라크 치안은 연합군 주도의 치안강화활동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KOICA의 NGO 사업도 그러한 이유로 이 시기에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중반부터는 이라크 주권정부 구성 지연에 따른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함께 특히 김선일씨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활동 강화로 인해 치안불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라크 내 각 정파 · 종파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치 · 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12월 주권정부 구성을 위한 이라크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 재건지원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라크는 2006년 5월 새로운 정부구성을 발표하고 정식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금돔사원 폭파사건과 같은 종파간 충돌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라크 치안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종래에는 동맹군이나 이라크 내 유력인사가 주요 테러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정부구성을 전후해서는 이라크 치안병력과 민간인으로 그 대상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처럼 저항세력은 이라크 사회 교란을 노리고 테러 수단과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치안통제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치안상황은 불안정한 정세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라크 재건지원 환경도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라크 경제상황의 변화를 살펴보자. 개발원조의 주요 목적이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 지원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라크인들의 경제활동 여건 및 생활환경, 국가 경제성장 현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이라크의 경제상황은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은 2001년에 $1,391이었다가 2003년 $1,097을 거쳐 2005년에는 $2,400불(추정)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라크 GDP의 75%에 달하는 원유생산량이 성장의 주요 동력인데, 1일 원유생산량은 2001년 235만 배럴에서 2003년에는 158

만 배럴로 떨어졌으나 2004년에는 273만 배럴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다. 그동안 후세인 정권이 취해오던 폐쇄적 경제체제와 그로 인한 부패와 경영부실의 기업활동, 로컬 제조업의 붕괴와 산업기반 취약화 등의 폐단이 정권 붕괴와 함께 정리되면서 세계경제 편입을 위한 경제정책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이라크의 시장경제 체제 지원이라는 미국 주도의 신경제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UN 주관의 이라크 재건기금의 확보와 집행이다. 원유생산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이라크 인프라 구축과 이라크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회안정화 비용 등으로 사용되면서 서민 경제활동이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금융인프라 복구와 외채탕감 등이 활기를 띄면서 경제성장을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재건지원사업 추진이다.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의 재건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경제활동 전반에 활기가 되었는데, 이는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와 이라크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인들의 민생이나 경제활동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화되는 치안상황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6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전후 급격한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건지원사업이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도 속출하는가 하면 지원사업의 수혜가 주로 외국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라크인들의 생활여건 개선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생활에 필수요소인 전기와 수돗물 공급은 시설 파괴 및 노후화로 인해 수요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시설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석유나 식량은 가구배급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과 교육, 교통, 주택 등 사회인프라가 여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라크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라크는 현재 정세 및 치안상황의 불안정과 경제활동 여건 미비로 인해 이라크인들의 생활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라크 개발원조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여 왔는가.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사업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의 이라크 지원은 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재건지원기금(Iraq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을 25억불 가량 편성하여

이라크 긴급지원 및 인도적지원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마드리드 원조공여국회의를 통해 184.4억불의 추가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일본은 15억불의 무상지원과 35억불의 유상지원 등 총 50억불을, 영국은 9억불을 원조자금으로 책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회의에서 2.6억불 규모의 지원을 실시키로 발표했다.

먼저 주요 공여국의 이라크 원조현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전후 긴급지원 및 인도적지원을 위해 2003년 25억불을 지원하였고 이후 2005년까지 총 원조약속액 184.4억불 중 100억불을 집행하였다. 미국은 PCO(Project and Contracting Office), USAID, 미 공병단 등이 현지 집행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 중심의 분야별 원청업체를 두고 이라크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하청 및 재하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집행액 100억불 중 치안 및 법집행 강화 41억불, 전력 18억불, 사법 및 공공안전 13억불, 민간고용증진 6억불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미국의 중점지원전략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미국은 치안, 공공안전, 민간고용 등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지원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일본을 살펴보자. 총 15억불의 무상지원과 35억불의 유상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중 무상지원은 2004년도까지 모두 완료하고 현재는 유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무상자금은 전력 5억불, 보건 3억불, 수자원 2.5억불 등 주로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었다. 특히 일본은 자국 군대가 파견되어 있는 이라크 남부 무타나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기술연수의 경우 이집트나 요르단 등 인근 국가로 이라크인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본격화한 유상지원은 현재까지 항만, 관개, 발전소 등 3개 분야 재건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이라크의 대외채무 해결추이를 지켜보며 유망 사업을 추후에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영국은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DFID 사무소를 두고 총 9억불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중이다. 영국은 2005년까지 집행한 6.3억불 중 UN과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총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으며, 그 밖에 민주주의 이행 지원이나 경제 · 행정자문 등 제도개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의 사업은 사업이 4년째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자체적으로나 국제사회로부터 종합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이유도 있으나 무엇보다 사업 평가를 위한 현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이라크는 치안사정과 정세 불안으로 인해 원조활동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로 인해 평가활동 또한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간 제기된 주요 공여국 지원사업의 몇 가지 성과와 한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KOICA사업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성과는 국제사회의 이라크 개발 프레임워크와 중장기 개발전략 제시를 통해 각국의 이라크 개발원조가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ISRB(Iraqi Strategic Review Board)를 운영하여 원조기관 간 사업을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이라크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통상적으로 여타 수원국의 경우 요청주의 방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이라크 개발원조는 협의주의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원조기관간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후 국제사회의 신속한 긴급구호와 인도적지원을 통한 이라크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파괴와 함께 주거환경의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다행히 국제 NGO와 원조기관들이 긴급재건복구를 위해 발빠른 지원을 펼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재건사업이 대민 복구사업의 성격을 띠면서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재건복구사업이 미국 및 동맹국 주도로 실시됨에 따라 재건복구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군이 목표로 하는 이라크 민주주의 정착 및 정부기능 강화의 기틀이 놓인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은 민주주의나 법집행,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재건지원 과정에서 이라크 정부기구 및 행정조직이 제도적 · 인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활동은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선 적격사업 발굴 및 선정, 사업조정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제한적이라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다. 현재 이라크 원조실시 과정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공여국은 원조조정기구인 ISRB 회의를 통한 사업심사 및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중이며, 또한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나 사업조정을 위한 원조기관 회의가 정례화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는 이라크 정부의 사업승인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업의 중복 및 우선순위 사업의 배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이 진행하는 전국단위의 송변전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라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에 정보공유를 거치지 않고 계획됨에 따라 아르빌 지역을 대상으로 한 KOICA의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전에 ISRB 회의를 통해 KOICA사업을 조정함으로써 정리되긴 했는데, 이는 이라크 정부와 원조 공여국간의 정보공유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이라크 치안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원조사업 자체가 축소,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당초 이라크 전역의 직업훈련원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시설 복구사업에 88백만불을 배정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인해 바그다드 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한 5백만불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전국 170개 보건소 건립사업의 경우 16개 보건소 건립 이후 잔여 보건소 건립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의 축소 혹은 취소가 빈번한 이유는 재건사업에 드는 치안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실시 예정인 경제개혁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3백만파운드의 63%에 해당하는 8.2백만파운드가 치안비용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치안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투입 대비 사업성과의 저조한 실적과 사업의 안정성 확보 문제는 많은 공여국이 안고 가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재건사업의 내실화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재건사업에 수반되는 전문가 및 기술인력 파견이나 현장관리활동 등이 이라크 내 거주 위험성으로 인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주로 이라크기업이 하청업체로 선정되어 실무를 관할하고 공여국의 공사감독 업무는 현장사무소 없이 현장카메라 촬영이나 제3국 원격지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제한적이다. 인적기술 전수는 동맹군 주둔지에 이라크 인사를 초청하여 훈련 및 자문을 실시하는 형식이다. 이라크에 원조기관 사무소를 개설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는 것도 내실있는 원조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사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성과와 한계는 동일한 사업환경과 유사한 원조전략 및 원조실시 방법을 가진 KOICA사업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KOICA의 이라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4. KOICA의 이라크 지원사업

이라크 전쟁 종료 직후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및 NGO를 통한 이라크 인도적지원을 위해 1천만불 지원을 결정하고 KOICA 사무소를 바그다드에 개설하여 본격적인 재건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마드리드 원조공여국회의에서는 2.5억불의 이라크 재건복구비를 추가로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2007년까지 5년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발표했다. 매년 5천만불 규모의 이라크 개발원조가 시작된 것이다.

KOICA는 재건사업 단계별로 사업추진 전략을 차별화하였다. 재건지원 초기에는 이라크 정부부처의 기관능력 향상과 보건, 교육 등 기초시설의 재건, 그리고 파병지역에서의 대민복구사업 강화 등의 전략을 세웠다. 재건사업이 가속화하는 중기에는 전력, 상하수도, 교통, 통신 등 경제 · 사회인프라 복구와 우리나라의 기업진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시기에는 그 동안 지원한 사업들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능력강화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의 중점지원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사업추진 전략은 타 공여국에 비해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을 둔다.

전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한 분야는 공공행정 부문이다. KOICA는 독재와 실정, 전쟁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한 이라크 정부의 행정능력 정상화를 위해 2003년 이후 이라크 정부부처 및 지방주정부 22개를 대상으로 사무장비와 차량 및 중장비, 특수기자재를 지원하였고, 전시 폭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이라크 기획부 청사의 개보수 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교육훈련과 의료보건 분야에도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라크 직업훈련원 건축이나 아르빌 시범학교 건립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고, 아르빌 지역 대상의 이동진료차량 패키지 지원이나 지방 4개 주정부 대상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라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도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2003년 동맹국 중 최초로 이라크 공무원의 방한연수를 실시한 KOICA는 이후 2005년까지 약 800여명의 연수생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2006년에만 800명 수준의 연수생 초청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이 자국 군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KOICA 또한 우리 군대가 파병되어 있는 아르빌 지역의 재건복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파병에 따른 현지 주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파병지역 지원이 시작된 2004년 이후 금년까지 총 2.2억불의 집행액 중 40%에 가까운 83백만불의 예산이 아르빌 지역 재건사업에 집중되었다. 특히 아르빌 지역은 이라크 내 여타 지역에 비해 치안사정이 좋고 미국의 침공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역량이나 사회인프라 활용 등에 있어서 지원사업 추진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이라크 개발원조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더라도 이라크 지원사업이 KOICA 사업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2003년 이후 해마다 총 KOICA 사업비 35% 내외의 규모가 이라크 개발원조에 집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2-3년간 추가 지원이 기대된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이라크 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KOICA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어떤 성과와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성과로는 가장 먼저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 수행체계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예시한 것처럼 주요 공여국의 원조사업은 치안유지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사업성과가 현저히 낮다. 미국의 경우 보통 총 사업비의 40% 내외가 치안비용으로 사용된다. 반면 KOICA의 경우 사업선정 시 치안사정을 감안하여 안정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현지 사무소 운영이나 사업인력 확보 등에 드는 치안비용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 선정과 적극적인 사무소 활동을 통한 비용절감의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이라크 정부와의 적극적인 원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라크 정부는 ISRB 회의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기관 간 협의주의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 승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KOICA 사업은 이 회의에 보고, 승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라크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조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 원조기관과의 사업수행에 대한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부 공여국의 ISRB 회의 불참으로 인해 최상의 사업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으나 국제사회 원조기관의 일원으로 KOICA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다.

전후 신속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quick impact 사업을 추진한 것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3년 중반에 이미 KOICA는 바그다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물자 및 현금지원과 NGO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라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한연수는 동맹국 중 KOICA가 처음이었다. 일본이 2004년부터 이라크 재건사업을 시작한 것과 비교할 때 KOICA의 활동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사업은 주로 긴급의료, 난민구호, 보건 · 위생 및 교육시설 지원, 공공행정 정상화 지원 등 신속한 초기대응 및 인도적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quick impact 사업의 조기 수행을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 결과 KOIC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인도적지원에 힘입어 이라크는 200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건지원 체제에 돌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KOICA의 아르빌 지역 중점지원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효과 극대화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라크 타 지역에 비해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KOICA와 파병부대의 적극적인 재건지원을 받은 아르빌 지역은, 지방정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적 · 물적 토대 구축은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재건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으나 region-specific 프로그램 접근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아르빌 지역 지원은 성공적인 개발원조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지역은 향후 이라크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과정에서 주요 관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KOICA 사업은 많은 한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한계는 치안사정 및 정세 불안정 문제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 중반 이후 급격히 악화된 이라크 치안문제로 인해 우리 전문기술 인력의 이라크 입국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프로젝트의 사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또한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KOICA 사업이 가진 가장 큰 한계라 하겠다. 이러한 한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라크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원조사업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이라크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물자지원의 경우 KOICA는 이라크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와 사무용 차량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러한 물자지원은 정부 행정능력 향상에 긴급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내에서 개인적으로 유용될 위험이 높고 원조효과가 불분명하며 특히 이라크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공공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된 건설중장비나 청소차량, 대형버스 등은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물자지원사업은 기대만큼 혜택이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연수사업은 매년 수백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연수생 선정과 과정준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어렵다. 이상의 한계는 치안의 부재 상황에서 우리 기술인력 파견이 필요하지 않는 물자지원과 연수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형태의 물자지원과 연수사업을 탈피하여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르빌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이 자칫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정부와의 지원 차별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르빌을 중심으로 한 쿠르드지역의 자치 요구는 이라크 내에서 종족간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아 왔고, 특히 전후 정부구성 및 연방제 실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석유매장량이 높은 아르빌 지역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아르빌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때 타 지역과의 불균형 지원에 대한 견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ISRB 회의에서는 이미 몇 차례 KOICA 사업의 아르빌 지역 집중지원 정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여타 지역의 개발수요가 아르빌 지역보다 훨씬 크고 긴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KOICA의 사업방향은 정책상의 딜레마 혹은 한계를 내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간 KOICA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성과와 한계가 상호불완전하게 충돌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성과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한계로 설명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라크의 예측불가능한 치안사정과 그에 따른 특수한 재건지원의 매커니즘이 지속되는 한 재건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숙명처럼 끊임없이 작동하는 기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향후 KOICA 중점사업방향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재 KOICA는 국별 · 분야별 사업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전환은 이라크 사업여건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재건지원 전략이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현 단계에서 새로운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사업은 이미 분야별 사업접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KOICA의 사업수단별 접근은 오히려 부정적인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KOICA의 지원사업은 분야별 프로그래밍을 통한 맞춤형 · 문제해결형 사업기획이라는 외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지원사업의 분야별 프로그래밍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이라크의 치안사정이다. 아르빌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문기술 인력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채택 가능한 사업범위를 크게 줄여놓는다. 다음으로는 이라크인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야 선정이다. 주요 공여국의 전후 신속한 이라크 지원 결과 긴급재건 및 인도적지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보건 · 위생, 교육, 전기와 수자원 등의 기초 인프라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업경험과 비교우위를 고려한 핵심사업의 집중 지원이다. 이라크 재건사업의 마무리 시기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가급적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되 새롭게 선정할 사업은 한두 가지로 최소화함으로써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가장 유망한 사업은 보건분야 개발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라크 보건분야는 기초보건부터 의료 서비스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라크는 전국적으로 240여개의 병원과 1,700여개의 보건소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의료시설이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검사장비나 수술장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병상가동률은 50%에도 못 미친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바그다드에 집중되어 있고 남부 및 북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낮기 때문에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각하다. 이러한 결과 영양결핍, 만성질병, 설사, 전염병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건분야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병원의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통해 병원기능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KOICA는 이라크 보건부를 포함해 4개 주정부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장비와 의약품, 앰뷸런스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아르빌 지역에는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하여 기초 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KOICA가 구상중인 보건분야 개발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보건소 이동진료차 지원사업이다. 앞서 언급한 이라크 전역의 1,700여개 보건소는 각 보건소별로 이동진료팀이 활동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보건소에 이동진료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거리 지역의 이동진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라크 보건부는 지역 보건소의 이동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라크 전국 18개 주 107개 지역의 이동진료 지원을 위한 이동진료차 보급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KOICA 사업은 기초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보건부의 긴급한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라크 내 107개 지역 중 아르빌이 속해 있는 쿠르드정부 관할 25개 지역을 제외한 82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를 각 1대씩 지원하고 의료담당 및 엔지니어링 담당을 위한 전문교육을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총 82대의 이동진료차는 일반병실, 주사실, 모자보건실, 보건교육실 등 4개실과 연구실로 구성되며, 이에 필요한 주요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운용인력 교육은 보건소 관련 정책담당자 연수와 이동진료 전문인력 교육 및 차량 관련 유지 · 보수교육 등 기초교육을 실시하되, 대상지역이 다수임을 고려하여 교육생들이 이라크 현지에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된다.

보건소 이동진료차 사업은 우리 전문인력의 이라크 파견이나 건물 건축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의 장애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라크 정부의 정책실현을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높다. 더불어 전국 단위의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 층도 넓다. KOICA는 이미 이동진료차 지원사업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향후 KOICA는 보건분야별 문제해결형 연수 프로그램, 이라크 내 병원 및 의료센터 물자지원 프로그램 등 보건분야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상의 프로그램은 이라크 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의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별 프로그래밍의 실천방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KOICA의 향후 중점사업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KOICA 지원사업이 사업수단별 예산집행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분야별 사업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라크의 개발원조분야 중 특정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전환을 통해 KOICA 사업은 지금까지의 이라크 개발원조가 안고 있던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이라크 정부 및 원조기관과의 정책조율 가능성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6. 나오며

지금까지 주요 공여국과 KOICA의 이라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이라크 개발원조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KOICA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재건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KOICA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침으로써 이라크 정부는 물론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타 원조기관에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지원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를 얼마나 잘 보완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향후 이라크 지원사업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6년 5월 출범된 신정부는 여전히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정파 · 종파간 갈등을 겪고 있고 저항세력과 테러세력의 선동과 테러활동으로 인한 치안부재 상황은 이라크인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외국인 테러로 인해 재건지원 활동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보니 사업성과를 높이는 일이 요원해보이기도 한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러한 이라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부임지인 이라크사무소 근무와 이곳의 KOICA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KOICA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도전성과 수용성이라 생각한다. 수원국 사람들과 그곳의 원조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과 공유 그리고 체화의 과정을 통해 개발원조에 대한 이론과 실천력이 갖추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라크는 도전과 수용을 요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사회 중 한 곳이며, 그런 점에서 이라크사무소에서의 활동은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실제 이라크에서의 활동은 한계가 크다. 치안상황으로 인한 사업의 제한, 정부기능 마비에 따른 수원기관의 소극적인 업무협조, 그로 인한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 부족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이 좋지 못한 동시에 생활환경도 제약이 많다. 어쩌면 이러한 환경 자체가 예상치 못했던 도전과 수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사업 여건이 개선될 때를 대비한 꾸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이라크 지원활동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 현 시기에 무리한 지원을 강행하는 것보다 속도를 조절해가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대신 KOICA만의 국별 · 분야별 프로그래밍을 통해 향후의 사업방향을 잡아가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업지연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 프리즘 조정을 통해 KOICA 사업은 현재의 불안정한 국면에서의 도전과 수용은 물론이고 향후 이라크가 안정국면에 들어설 때 경험하게 될 도전과 수용에도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2006년보다는 2007, 2008년 KOICA의 이라크 지원사업이 더욱 기대되는 까닭이다.

한민족 복지재단 소개

김 용 혁 주임 / 국제팀장

1. 설립 목적

한민족복지재단(회장: 김형석)은 1991년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를 모체로 1997년 2월 3일 외교통상부 등록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민족 화해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내외와 북한의 소외 계층 어린이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에는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특별협의지위'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NGO단체입니다.

2. 재단 연혁

[2006년]

■ 2006. 3. 재단 전북지부 개소식
■ 2006. 3. 태국 치앙마이 주에서 '산캄팽비정규교육센터 지원사업' 개시
■ 2006. 2. 사회복지법인 '말아톤복지재단' 창립 총회 개최

[2005년]

■ 2005. 12. 예멘 사다 지역에서 '사다병원 현대화사업' 개시
■ 2005. 12. 북한 '복토직파기를 사용한 농업협력사업' 개시
■ 2005. 11. 제3회 한국일보 주최 통일문화대상 화해협력부문 수상
■ 2005. 10. 기독교TV(CTS TV)와 공동으로 '북한어린이에게 평화의 분유를' 특집 모금 방송
■ 2005. 10. 파키스탄 지진 피해 긴급구호활동
■ 2005. 9. 미국 뉴올리언즈 카트리나 긴급구호활동
■ 2005. 9. 재단 광주지부 개소식
■ 2005. 6. 수단 카르툼 지역에서 '농업기술학교를 통한 농촌개발사업' 개시
■ 2005. 6. 국내복지사업 '사랑의 말아톤 2' 캠페인 시행

■ 2005. 2.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지역에 '희망의 집 건설사업' 개시

■ 2005. 1. 북한 '복토직파기를 사용한 농업개발사업' 개시

■ 2005. 1.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로 등록

[2004년]

■ 2004. 12 – 2005. 1.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등 3개 지역 쓰나미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팀 파견

■ 2004. 4. 북한 용천열차폭파사고 긴급구호활동

■ 2004. 4. 제8회 정일형 이태영 자유민주상 민주 통일부문 수상

■ 2004. 3. 이라크 바그다드에 재건사업팀 파견

[2003년]

■ 2003. 12. 아프가니스탄 데야혀 지역 '종계장 건립 및 양계 교육을 통한 농촌개발사업' 개시

■ 2003. 12. 이란 대지진 발생지역인 밤(Bam) 시에 긴급구호팀 파견

■ 2003. 8. 아프가니스탄 수로비 지역 '수로건설 사업' 개시

■ 2003. 5.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어린이심장병센터 설립 및 시술(서울대병원과 제휴)

■ 2003. 4. 이라크 의료봉사단 파견 및 '난민돕기 사업' 개시

[2002년]

■ 2002. 12. 중앙일보 및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2003 북한어린이에게도 따뜻한 겨울을' 캠페인 진행

■ 2002. 12. 대한민국 통일부로부터 공식 대북지원 창구로 승인

■ 2002. 10.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회원단체로 공식 등록

■ 2002. 3. 우즈베키스탄 고아원지원 및 아프카니스탄 의료봉사단 파견

[2001년]

■ 2001. 5. 국민일보와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시행

[2000년]

■ 2000. 12.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어린이급식빵공장 준공

■ 2000. 11. 북한 인민학교 학생 집단구충사업 개시(한국건강관리협회와 제휴)

■ 2000. 8. 동아일보와 '북한어린이돕기-평화의 빵' 캠페인 시행

■ 2000. 4. 북한 보건성과 '북한어린이돕기 5대사업' (어린이병원현대화, 어린이심장병센터, 어린이급식사업, 사랑의의료품나누기, 사랑의생필품나누기) 합의

[1991년 ~ 1999년]

■ 1997. 11. 한국 NGO 중 최초로 방북하여 라진-선봉지역에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시행

■ 1999. 9.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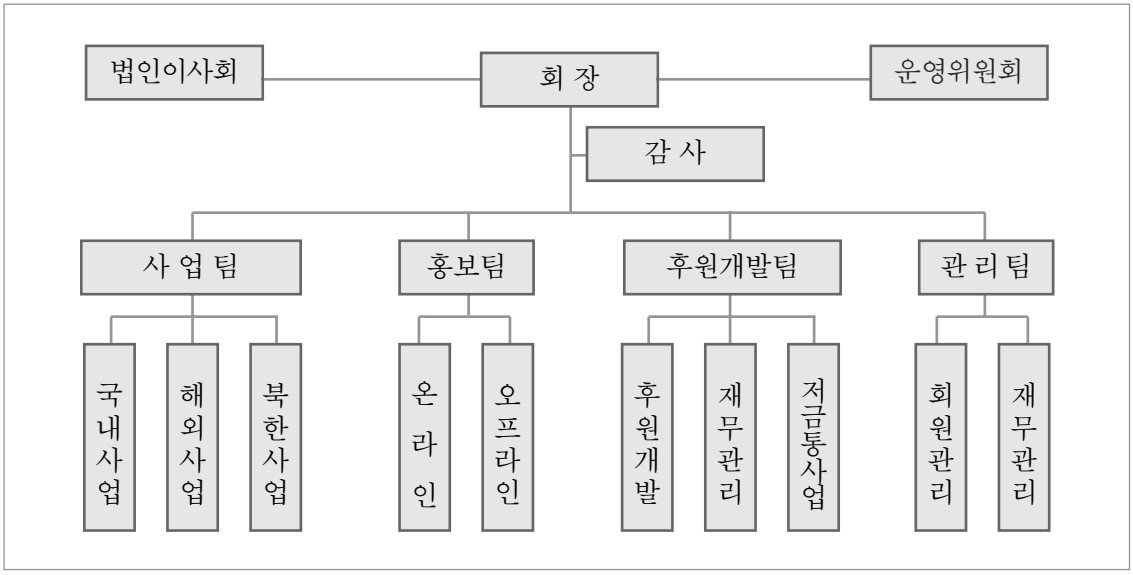
■ 1999. 7. 러시아 연해주 의료봉사단 파견

■ 1998. 4. 통일부로부터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

■ 1997. 2. 외교통상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

■ 1991. 3.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출범

3. 한민족 복지재단의 조직구성



4. 한민족복지재단 주요 사업

가. 북한지원사업

1) 농업협력사업 식량난과 함께 농자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한민족복지재단은 복토직파농법(못자리와 모내기가 필요 없는 농법)을 개발한 농업진흥청 산하 한국농업학교 박광호 교수와 협력하여 북한에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자재를 전수



협동농장 개요

- 위치 :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리 (평양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 크기 : 840만평 (이중 240만평 논 경작)
- 경작물 : 주로 벼농사 (보리, 콩 등 기타 작물도 재배)
- 참여농민 : 북한 주민 6000여명과 남측 농민 관계자 수십여명

하고,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리의 840만평 크기 협동농장에서 남북의 농민이 협력하여 농업사업을 전개해 왔다.

2) 의료지원사업

① 평양의대병원 현대화사업

- 2000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평양의대병원 구내에 의료설비와 기술이전을 통한 어린이심장병센터를 설립하고 8차례에 걸쳐 의료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2차 사업으로 신장센터와 척추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환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시설들을 개보수해 나가고 있다.

② 어린이병원 현대화사업

- 1998년 라진선봉에 소재한 선봉군인민병원의 소아과를 시작으로 평양시 제1인민병원 소아과 병동, 평북도소아병원, 신의주 제1인민병원 소아과 등 13개 도소재지에 있는 낙후된 북한의 어린이병원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병원들을 집중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어린이영양지원사업

① 어린이급식사업

-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은 2000년 8월부터 시작한 급식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2000년 12월 고려당과 협력하여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어린이빵공장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만오천명의 아이들에게 빵을 공급해오고 있다. 또한, 평양 이외 지역에 제2, 제3의 빵공장을 설립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② 분유지원사업

-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분유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콩우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의 분유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4) 일반구호사업

- 본 재단은 극심한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의료품과 생필품나누기 운동을 펼쳐 왔다.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요즘, 본 재단은 북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의류와 학용품 등 각종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용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나. 국내복지사업

1)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본 재단은 장애의 범주 안에 들지만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 복지사업을 위해 전문인 토론회, 부모교육, 연구위원과 준비위원회 결성, 사랑의 말아톤 2 캠

페인 선포 등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2006년 2월 16일 발달장애를 특화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법인 등록에 따른 행정절차와 프로그램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본 재단은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청년이 된 발달장애인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독립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후 본 재단은 공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18세 이상의 젊은 청장년 발달장애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모델과 사업장 환경모델을 연구 개발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준비 중에 있다.

2) 미자립시설 지원사업

① 벧엘장애인농장

- 수족이 자유롭지 못한 중복 장애인들의 자활과 생업을 위해 본 재단은 전라북도 장수 벧엘장애인 농장에 농장 부지와 과수원 개간에 필요한 운영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② 바울장애인훈련원

- 본 재단은 자신도 근육병으로 온 몸이 마비된 상태이지만 다른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정철영 대표의 주택 마련 보조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다. 해외지원사업

- 한민족복지재단은 2006년 6월 현재 14개국에 16개 지부를 가지고 있다.

1) 아프가니스탄

① 교육사업

- 2003년 4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은 아프카니스탄 고등교육부 장관과 6명의대학총장들을 포함한 교육대표자들을 초청하였으며, 양 국가들 간의 국제교류를 진척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본 재단은 아프카니스탄에 국제교육센터를 설립하였으며, OMR카드와 카드리더기, 500대의 컴퓨터들 같은 교육재료와 장비들을 기증하였다. 이 지원으로 2005년 대학시험부터 아프카니스탄의 고등교육부처는 기계로 대학시험을 채점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카불 인근의 대학들의 20명의 선별된 교수들이 본 재단을 통해 매달 미화 50달러씩 장학금을 제공받았다. 또한 본 재단은 2003년 5월부터 카불공대를 포함하여 아프칸 전국의 16개 대학에 컴퓨터 보급사업을 벌여 왔고, 2005년 4월부터 버미얀지역에서 문맹학교를 운영하며, 문맹여성 20여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왔다. 교육혜택이 전무한 칸다하르 외곽지역에서는 8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② 보건사업



– 본 재단은 미국 9.11테러 이후, 의료용품과 의료지원에 대한 아프카니스탄 현지 필요에 부응코자, 2002년부터 매년 의료봉사진을 현지에 파송하였다. 2005년 7월부터는 카불 인근 다쉬케 바르치에서 한방모바일클리닉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6,500명에게 치료혜택을 주었고, 칸다하르지역에서는 2005년 3월부터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약 3,500명의 주민들을 치료하였다. 본 재단 칸다하르 지부의 물리치료센터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칸다하르주정부는 본 재단의 칸다하르지부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06년 5월 힐라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이다. 다음은 칸다하르지부장 백규현지부장이 쓴 글이다.

③ 지역개발사업

– 2002년 이래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역공동체

한민족 칸다하르에 '힐라병원' 문 열다.

글: 백규현 한민족복지재단 아프카니스탄 칸다하르지부장

5월 10일 오전 10시, 칸다하르 시내에서는 1백여 명의 각계 각층인사들이 모여 힐라병원 개원식을가졌다. 힐라병원은 3년 전부터 물리치료센터를 열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백규현 칸다하르 지부장이 칸다하르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진료비 상승과 고비용의 운영비 문제로 많은 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을 연 힐라병원도 이전에 외국 NGO에서 운영하다가 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문을 닫았던 곳이다. 또 병원이 탈레반의 근거지에 자리 잡은 터라 잦은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백규현 지부장 덕분으로 힐라병원은 지방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이고 주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병원에는 한국의사 4명, 필리핀 의사 2명, 아프간 의사 1명과 간호사, 경비, 행정, 청소 요원 등 총 2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3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한 병원은 진료 외에 교육동에서 컴퓨터 교육실, 강의실, 도서관이 있어 직원들의 교육을 돕고, 행정동에는 재정, 행정, 회의, 상담, 의전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병원 진료 과목은 통증 클리닉,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물리치료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 개원을 위해 한국의 여러 후원자들이 의료장비와 의료인 등을 지원했지만, 힐라병원에는 아직도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많아 계속적으로 후원자들을 찾고 있다.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해 왔다.

a. 수로비 수로건설사업

– 본 재단은 2003년 하반기 동안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카불의 수로비지구 테진마을에 수로를 건설하였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농업상황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테진마을은 아편을 재배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재단은 건설이 시작되기 전 마을 주민들과 주민들의 아편재배 중지라는 조건 하에 사업을 실행하기로 동의하였고, 약속한 대로 주민들은 아편밭을 불태우고 공사기간 중에 기꺼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주었다. 현재 건설된 수로와 저수지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b. 데야혀 종계장사업

– 본 재단은 2004년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카불시내 외곽의 데야혀지역에서 종계장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종계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닭을 분양받아 지역 경제와 주민들 개개인의 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이었다. 본 재단은 종계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지역 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종계장을 건설하고, 종계기술을 농부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가난한 농부들에게 병아리들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었다. 현재 종계장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며 지역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

① 교육사업

– 본 재단은 안그렌과 타쉬켄트에 컴퓨터와 어학학교들을 운영해왔다. 특히 재우즈벡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그렌지역에서는 안그렌외국어대학내 한국어학부를 운영해왔다. 게다가 타쉬켄트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수화교육을 위한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과 약품들을 기증하여 왔다. 게다가 본 재단의 이전 대표자인 장기천님의 필명을 딴 한길장학재단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약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왔다.

② 보건사업

– 본 재단은 타쉬켄트에 있는 열방친선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병원 의료진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일반 병원에서 훈련받게 하였다. 열방친선병원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이동병원운영, 고아원 진료, 장애인 진료, 의학교육과 세미나, 내국인 무료진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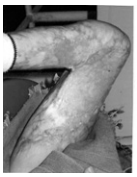
본 재단은 또한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 의료봉사단을 2차례에 걸쳐 2004년과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지역에 파견하였다. 게다가 샤크노자 키르기즈배바(Shakhnoza Kirgizbaeva)라는 화상 휴유증으로 고통받는 7세 아이를 한국에 보내어, 성공적인 수술을 받게 하였다. 다음은 샤크노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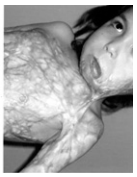
웃음을 되찾은 샤크노자의 이야기



본 재단은 2005년 6월 우즈베키스탄 지부의 요청에 의해 끔찍한 화상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7살 소녀 샤크노자를 치료해 주고자 한국에 초청한 바 있다. 샤크노자의 치료를 위하여 포항 선린병원(이건오 원장)이 전액 무료로 봉사해 주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오고가는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에서 후원해 주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가족처럼 챙겨준 손동아목사의 관심이 샤크노자와 소녀의 어머니 스웨따(37)씨에게 웃음을 되찾아 준 힘이 되었다.

"끔찍하게 망가졌던 제 딸의 몸과 얼굴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를 다시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고쳐주신 의사선생님과 한국인들에게 수십 수백 번 감사합니다."





샤크노자양은 2004년 6월 집에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오빠와 놀다가 화덕에 넘어져 목과 가슴, 다리 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우즈베키스탄 병원에서 2차례의 화상치료와 4차례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그곳의 의료수준이 낮아 상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샤크노자양이 한국에 올 당시에는 오른쪽 다리가 구부러져 허벅지와 장단지가 붙어버린 상태였고, 왼쪽 턱도 가슴에 붙은 채여서 고개를 제대로 돌릴 수 없는 등 심한 지체장애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선린병원에서의 2차례의 성공적인 수술로 샤크노자는 자유롭게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③ 문화사업

- 2004년, 한민족복지재단은 '한-우즈베키스탄 우정의 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게다가 재단 타쉬켄트지부가 2004년 11월 어린이 축제를 열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2명의 우승자들은 2005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한국을 방문한 고가이 나스차양(13)의 편지이다.

세르겔리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고가이 나스차의 편지



그 동안의 염려와 기대를 타쉬켄트에 묻어두고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를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들은 그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김경일 소장님과 낯이 익은 차부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저희는 안내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청소년 미술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희는 참가상으로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통 식당에서의 음식들은 깜짝 놀랄 만큼이나 입에 당기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분은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신 화가 마드모아젤 한이십니다.

한국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이곳에 오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여행하는 동안 한국의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은 해안과 강, 깨끗한 도시, 역사박물관에 가 보았는

데, 특히 한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빌딩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민족복지재단〉 가족 여러분과 여러 화가 선생님들, 그리고 본부에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스리랑카

① 주택사업

- 2005년 3월 이래, 본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동부 쓰나미 피해지역인 어촌마을, 트린코말리에 26채의 희망의 집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들 26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4) 수단

① 교육사업

- 본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2005년 7월부터 수단 카르툼에서 써니닐 농업기술학교를 건설하여 왔다. 본 재단은 이 학교 내 교육이 수단의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가난한 농업가구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예멘

① 보건사업

- 본 재단은 2005년 12월 이래 한국국제협력단 및 국제치과진료협회와 협력하여 예멘 사다병원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 사업을 위하여 본 재단은 병원에 현대 의료장비를 제공하고, 환자 의료기록을 전산화해나가며, 새로운 현대 의료기술을 현지 의료진들에게 전수할 계획이다.

6) 태국

① 교육사업

- 본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2006년 1월부터 태국 치앙마이주 산캄팽비정규교육센터에서 태국 산지족과 빈민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컴퓨터와 영어,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르쳐 직업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후, 5월 8일부터 370명의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 인원은 최대 600명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7) 어린이지원사업

① 꿈나무책가방사업

- 본 재단은 2006년 5월부터 문방구류를 살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해외 극빈층 아이들에게 문방구류가 들어 있는 책가방을 선물해주는 '꿈나무 책가방'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으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때 쓸 공책이나 볼펜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던 극빈층 아이들이 맘껏 공부해 밝은 미래를 꿈꾸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재단의 태국 지부 산칸팸비정규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김민영씨가 쓴 동사업에 관한 글이다.

희망을 담은 책가방 선물세트

글: 김민영 태국지부한국어교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절한 사람들로 이미 유명한 관광지이자, 노후에 살기 좋은 세계 3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 치앙마이지만, 치앙마이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한 골목만 뒤로 들어가면 쓰러질 듯한 판자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로 전체적인 나라경제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 또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학교조차도 필기도구를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마음을 안겨줍니다. 한민족복지재단 태국지부에서는 이렇듯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태국의 산지족과 빈민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산캄팽 비정규 교육센터의 문을 엽니다.

"한참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푸키(Pukky, 8살)는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다. 푸키가 사는 태국의 치앙마이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학교가 있지만, 쓸만한 연필 한 자루 없이 학교를 나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두 달 전부터 학교 가기를 그만뒀다.

11살인 푸키의 언니 역시 돈을 버느라 학교를 못 가기는 마찬가지. 태국 전통 춤을 추는 푸키의 언니는 간간히 있는 공연에 참여해, 공연당 20Baht(500원)를 벌고 있다. 아빠와 언니의 적은 수입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푸키네 다섯 가족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거니와 의사가 꿈이라는 푸키를 학교에 보낼 생각도 못하고 있다."

" 태국 치앙마이 산캄팽군에 사는 9살 소년 엠은 산마혹 국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지금은 형(18살)이 버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언제 학교를 갈 수 없게 될지 모르는 엠은 딱히 공부를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없다며 멋쩍게 웃어 보인다. 아빠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엠은 조금 더 자라면 형처럼 돈을 벌어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 산캄팽 교육센터가 생기면 교육을 받고 싶다며 등록을 희망했다."

② 어린이결연사업

- 본 재단은 2006년 6월부터 해외 빈민층 어린이와 한국인 사이에 후원관계를 연결해 주는 '어린이결연사업'을 실시하였다. 결연을 통해 연결된 해외 어린이는 한국민이 보내는 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의 후원을 받게 된다.

8) 긴급구호

- 본 재단은 지구촌 재난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돕고자 재난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지구촌 곳곳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왔다. 지금까지 북한 룡천열차폭파사고 구호, 아프가니스탄 전쟁구호, 이란 밤지역대지진사고, 이라크 전쟁구호, 파키스탄 대지진구호, 쓰나미사태구호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2006년 5월 인도네시아 반툴지진에도 곧 구호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년 제2호

발 행	2006년 7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마스터-원 TEL.(02)2272-5002(代)